월간

재정포럼 1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1년 12월호 제186호

현안분석
-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 동향과 정책과제: 전세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노영훈
-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명호

정책토론리포트
- 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주요국 조세동향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개정 동향 외

KIP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11.12_vol.186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2012년 경기 하방리스크 단단한 대비를 · 온기운

현안분석
06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 동향과 정책과제: 전세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노영훈
27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명호

정책토론리포트
42 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공공정책포럼
56 지속가능한 한국관광

주요국의 조세동향
62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개정 동향 외

정책흐름
89 2012년 경제정책 방향
102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109 국고채 만기도래 현황 및 관리 방안
110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2 정부 R&D 투자 및 성과 분석 결과

재정통계
116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외

이슈 & 포커스
123 부자증세 이전에 카드소득공제부터 없애자 외

월간 재정포럼 2011년 12월호 통권 제186호·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02-2186-2130·3 **홈페이지** : www.kipf.re.kr

2012년 경기 하방리스크 단단한 대비를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2011년은 국내외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한 해였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일제히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쓴 결과 대부분 국가의 경제는 2009년 초반에 바닥을 치고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100년에 올까말까한 불황이 닥칠 것이라는 일각의 경고도 있었지만 각국의 일사불란한 정책공조로 경기는 의외로 빨리 회복 모멘텀을 찾았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사라지고 미국, 유럽 등 각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표면화하면서 세계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1년 8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가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시키면서 경기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과 산업생산 등 일부 경제지표는 호전되는 조짐도 있으나, 주택가격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위기 후 7,8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씀과 동시에 2008년말 1조 7천억달러 규모의 1차 양적완화 정책을 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10년 11월부터 8개월간 6천억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을 썼다. 경기 불안에 따라 기준금리는 2013년 8월까지 현행 0~0.2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FRB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제로 언제 이를 발동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질 경우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재정위기로 악화일로에 있는 유럽경제

유럽경제는 재정위기로 악화일로에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2010년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국가 부도를 겨우 면하고 있으며, 유럽 경제규모 3, 4위인 이탈리아, 스페인마저 재정적자가 심각해져 유럽중앙은행(ECB)이 2011년 8월부터 1천억유로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이미 ECB의 매입 없이는 이탈리아 국채가 거래되기 어려운 상태다. 국가 신용등급이 잇따라

강등되면서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유럽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은행 신용등급 역시 무더기로 하향조정되고 있다. ECB는 급기야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하는 등 금융완화 쪽으로 선회했다.

영국을 제외한 26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12월 9일 '신재정협약'에 합의했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거나 공공부채가 GDP 대비 60%를 웃돌면 자동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황금률을 각국 헌법과 법률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시적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더해 상시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설립해 5천억유로를 조성하고, 유럽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2천억유로를 제공해 위기 국가를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화벽이 여전히 미흡하다. 2012년 상반기까지 유로권 국가와 은행들에 1조 7천억유로의 채무 상환 만기가 돌아오지만 방화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1조 1,400억유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경제는 2011년 간신히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2년에는 2%대의 성장률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진 복구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와 전년 낮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고와 국내기업들의 해외 이탈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 등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230%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채무가 일본경제의 체질을 약하게 하는 악재가 될 것이다. 일본은행은 현재 0~0.1%로 되어 있는 초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진국 경제의 부진 속에 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 신흥국 경제도 둔화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이 투자나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 위축에 따라 한동안 긴축정책을 펼쳐 왔던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등 다시 금융완화 정책으로 돌아서고 정부는 경기부양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세계경제가 동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도 둔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둔화에 따라 경제정책도 완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도 둔화 조짐 가시화

세계경제가 동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도 둔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2009년에 0.2%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는 6.2%로 크게 상승했으나 2011년에는 4%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2012년 한국경제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하방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한다. 어쩌면 3%대 후반 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들지도 모를 악재들이 많다. 가계부채, 양극화,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 구조적 문제점도 많다.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및 무역흑자의 빠른 감소, 고물가와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관들이 2012년에는 성장률이 3%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성장세 둔화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가 2011년 40만명에서 28만명으로 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0%에서 3.3%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흑자는 2009년 328억달러에서 2010년 282억달러로 축소됐다. 상품수지(419억달러)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흑자가 확대됐으나 서비스 수지(-112억달러)는 적자가 확대됐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150억달러 안팎으로 더 축소될 전망이다. 세계경기 위축 때문이다.

경기둔화에 따라 경제정책도 완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2012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끌어내렸으나 2010년 7월부터 금리를 0.25%포인트씩 5차례 올렸다. 그러나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경기의 하방리스크 등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3.25%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2012년 들어 1분기 성장률이 저조하게 나올 경우 5월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12년 한국경제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하방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한다. 어쩌면 3%대 후반 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들지도 모를 악재들이 많다. 가계부채, 양극화,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 구조적 문제점도 많다.

경제주체들은 2012년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을 염두에 두고 단단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5%로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성장률 급락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기업들도 비상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수출여건이 나빠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 가계가 부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안분석

■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 동향과 정책과제: 전세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 동향과 정책과제:
전세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yhrut@kipf.re.kr)

금융위기 이후 모든 나라들에서 주택시장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Ⅰ. 서 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모든 나라 정부들은 주택시장의 동향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주택시장의 회복이 일반적 경기회복의 신호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과 이에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들 부실자산이 노출되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시작되었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실물부문으로 이어져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각국 정부는 통화금융정책과 재정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게 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모든 나라들에서 주택시장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요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가계부문 소비지출에 미치는 주택의 자산효과(Wealth effect of Housing)이다. 즉, 주택시장가격 하락으로 가계자산의 주요 구성부분인 주택자산 가액이 감소하면 동일한 소득하에서도 소비지출이 위축되어 경기회복이 더디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들은 경기회복의 징후를 고용시장에서의 실업률 감소를 통한 소득증가와 함께 주택시장가격의 반등 및 거래량 회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유럽국가들 중 재정 및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경제 전체가 아니라 가계 · 정부 · 금융 · 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부문별 부채 증가와 그 원인의 차이가 드러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채 축소(deleveraging)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중에 성장률이 얼마나 둔화될지가 판단되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 스페인이나 우리나라처럼 민간 가계부문이 주택대출에 크게 의존하여 주택시장이 호황을 겪었다고 판단되는 나라들에서는 민간부문의 부채 축소가 주택관련 부채 감소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부채 축소 과정(deleveraging process)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 가계부문은 2009년 이후 주택시장가격의 변화를 통해 시장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가 관심 사안이다.

최근 전세가 및 전세자금 대출 증가가 각각 물가 및 가계부채 부실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본고는 2008년 이후 주택시장가격 하락과 일부 지역에서의 소폭 반등, 그리고 지속적인 하향세와 함께 발생한 주택임대시장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임대차 유형인 전세제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9년 이후 주택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이용 가능한 시장지표들을 통해 비교적 장기간의 시계(time horizon)에서 살펴보고,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전세제도의 특성을 재검토한 후, 주택매매 및 임대관련 조세정책 이슈들을 개략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전세계약의 이중적 성격에 초점을 두는 분석을 전개하고자 하며, 여러 차례 발표된 정부의 전월세 주거안정대책 및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그러한 시각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특히 주택매매 및 임대시장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시장상황이 개별 사례 위주의 전월세문제이거나, 통계수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초하여 시장동향을 소개, 분석, 전망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가가 매매가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정도로 상승하면 매매수요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거나, 월별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인용하면서 시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매나 공매자료는 포함하지 않아서 '거래급감' 또는 '거래건수, 절반으로 뚝' 이라고 표현하는 문제들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기사화된 시장상황이 개별 사례 위주의 전월세문제이거나, 통계수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초하여 시장동향을 소개, 분석, 전망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문제에 두고 있는데, 물가를 구성하는 지출항목 중 주택임대차 비용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는 정책 집중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지출목적분류[1]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및 수도 · 광열' 의 170.4(가중치합계 1000) 중에서 수도 · 전기 · 관리비 등을 뺀 집세가중치는 97.5로 10%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 이는 주거비 안정문제가 물가대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정책적 우선 순위의 중요성을 갖고 '선택과 집중' 의 대상으로서 정책당국이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가 발표하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중 수도 · 광열비 등

1)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조사는 우리나라의 대표가구(representative household)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매월 발표하는데, 대표가구의 소비지출(consumption expenditure basket) 내역을 구성하는 지출부문별로도 하위지수 및 변동률을 발표하고 있음. 지출목적별 부문은 가중치합계 1,000 중 주거 및 수도 · 광열(170.4), 식료품 · 비주류음료(140.4), 외식 · 숙박(132.7)의 순서로 가중치가 높음. 자가주거비용 포함지수도 발표함(가중치 1,227.1)

전세시장의 거래정보 위주로 주택 임대차시장의 동향이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분적으로나마 어떻게 월세시장 거래자료들이 포착되는지가 거래량 파악의 관건이다.

을 포함한 주택관련지출(housing)은 41.5%이고 주거부문(shelter)만의 비중은 32%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생활비(cost of living)를 구성하는 항목 중 임차료가 매우 적게 반영된다는 점이다.

Ⅱ.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흐름과 현황

1. 주택 매매 및 임대시장의 지표들에 대한 검토

주택 임대차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지표(market indicator)로서의 월차임과 임대차거래계약 체결 건수와 같은 가격 및 거래량에 대한 체계적 수집에서 출발되어야 하나, 매매시장과 비교할 때 임대시장 통계자료는 매우 부족하고 또 불완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임대주택의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기존 임대계약의 갱신계약인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통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2]. 다만,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읍면동 사무소 등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건수가 집계될 수는 있다. 반면 단독 및 다가구주택 유형에서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지는 월세계약은 중개업소를 통해 행정당국에 신고되는 간접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으나 신고의무가 법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제도적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다. 결국 전세시장의 거래정보 위주로 주택 임대차시장의 동향이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분적으로나마 어떻게 월세시장 거래자료들이 포착되는지가 거래량 파악의 관건이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월세에는 주택 파손 및 월세 지급 불이행에 대한 보험적 성격으로 몇 달치 차임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제공된 계약까지도 보증금월세로 분류되었던 반면, 연간 월세지급 합계액을 훨씬 초과하는 '(넓은 의미의) 보증부월세'나 '반전세'가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월세와 보증부월세 간의 구분도 어려워 거래량 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다.

가격에 대한 시장지표의 경우 다소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는데, 〈부표 2〉를 통해 주택 임대시장의 가격지표를 살펴보자. 동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월세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중 전세가격 등 지수, 그리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중 집세지수를 통해 주택 임대차시장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다[3]. 그러나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특징을 기술

2)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월세 실거래자료 공개건수를 월세 거래량으로 가늠하고 있으나 이 또한 확정일자 기준으로 포착한 것으로 보증금이 어느 정도 포함된 보증부월세로 보아야 하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순수월세나 소액보증금 월세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민간부동산정보업체인 미래에셋부동산연구소/부동산114는 2002년 3월부터 7,125개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매경-미래에셋 월세지수' 시계열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보증부월세를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하여 월세로 환산하여 지수화한 것이고 순수 월세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님.

하는 제Ⅲ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전세와 월세라는 임대 유형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기 서로 다른 유형의 임대차시장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임차조건을 가격화하는 지수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증부월세' 라고 분류되는 임대차 유형은 과거 몇 달치 월세 정도만을 보증금(key money)으로 임대인에게 맡겼던 형태에서부터 최근에는 재계약 시 인상된 전세보증금 차액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반전세' 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임대시장 내에서 전세와 월세 간 구분이 매우 힘들게 변모하고 있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일반가구의 전세 형태 주택점유비중은 53%에서 67%로 크게 증가한 후 2000년까지는 이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5년 53%, 2010년 50%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그림 1]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유상)임차가구 점유 형태 분포변화(198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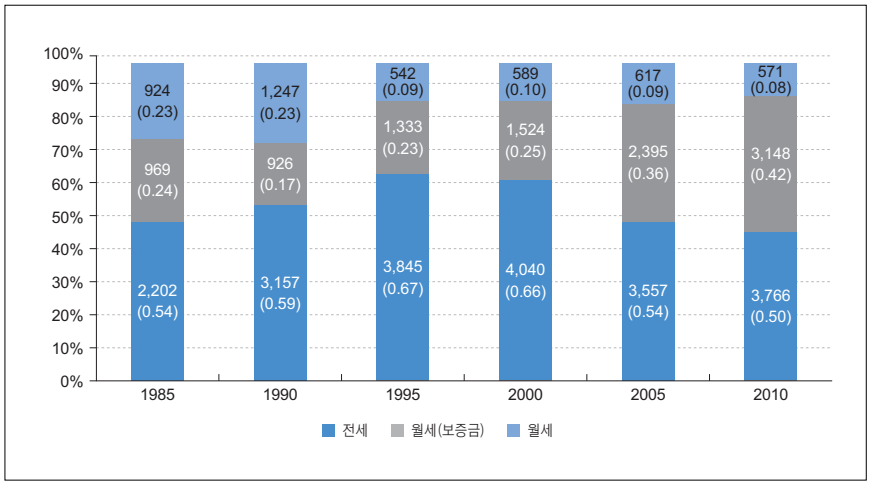

주: 1. '주택' 과 '주택 이외의 거처' 의 합계기준.
2. 월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 와 '사글세' 의 합계기준.
3.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 제외
4. ( )안은 비중, ( )위 숫자는 천가구
자료: 통계청

[그림 1]은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일반가구들을 관찰대상으로 유상임차 형태인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의 3가지 유형의 구성 비중이 센서스의 주기인 매 5년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분류기준이 유지된 1985년 이후의 움직임만 살펴보아도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일반가구의 전세 형태 주택점유비중은 53%에서 67%로 크게 증가한 후 2000년까지는 이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5년 53%, 2010년 50%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보증금 있는 월세와 보증금 없는 월세의 비중은 1985년 대체로 비슷하였다가 그 이후 무보증금 월세가 1990년 22% 정도로 늘었다가 그 이후에는

보증부월세는 1990년 다소 줄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2%를 초과하게 된다. 이는 전세 유형 감소분이 보증부월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측되며 2005년 이후 2010년 사이에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수준으로 급감한 후 정체되는 반면 보증부월세는 1990년 다소 줄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2%를 초과하게 된다. 이는 전세 유형 감소분이 보증부월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측되며 2005년 이후 2010년 사이에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언론을 통해 최근 주택매매시장의 침체현상이 매매가격 하향 안정화와 거래량 감소로 특징지어져 보도되는데 거래량 급감 정도를 가늠해 보자. 주택매매시장의 거래량을 조사한 통계는 〈부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아파트의 경우 최소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사이트의 아파트거래통계와 실거래아파트공개건수이다. 후자는 2006년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도입 이후 유상매매거래 자료 중 검증 부적정 및 미완료 같은 이상 관찰치(outlier), 그리고 분양권 및 입주권거래와 지분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반면 전자는 판결 · 교환 · 증여 · 신탁 · 해지 · 분양권 등 거래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후자는 전자와 비교하여 지역범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6~65% 수준에 불과하여 거래량이 과소집계되는 실정이어서 아파트거래건수만을 파악하는 데에는 전자가 이용가능한 가장 정확한 거래통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 모두 법원경매, 공매, 상속으로 인한 이전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전미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가 매월 연간단위로 조정한 기존 주택거래량(annual rate of existing home sales)이 비정상거래(distressed sales)[4]로 주택차압(foreclosure) 및 은행 허용 깡통주택 거래(short sales) 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인 거래량 집계 방식이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경매나 공매 낙찰건수나 분양권 거래를 포함하면 실재 거래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5], 아파트 거래통계나 실거래가 공개건수는 특정 시점에서의 수치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해당 시계열 내에서의 일관성을 갖는 시간적 변화분을 거래량 변화로서의 시장지표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In U.S. distressed sales account for 30 to 50% of the total annual sales rate of 4.5 to 6.5 million during 2008 to 2010 perod.

5) 법원의 주택관련 경매물량은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각각 지난 1년간(2010.12월~2011.11월) 11,854건, 7,225건, 23,4972건이고 매각률(또는 낙찰률)은 35.5%, 38.0%, 33.9%여서 매각건수는 각각 4,214건, 2,748건, 7,972건에 달함. 따라서 [그림 3]의 서울 아파트 월별거래량 및 [부도 1]의 수도권아파트 거래량에 5~10% 정도는 추가되어야 법원경매 및 공매 등 비정상거래도 포함한 중고아파트 소유권 변동에 따른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2] 서울아파트 전세가 대비 매매가비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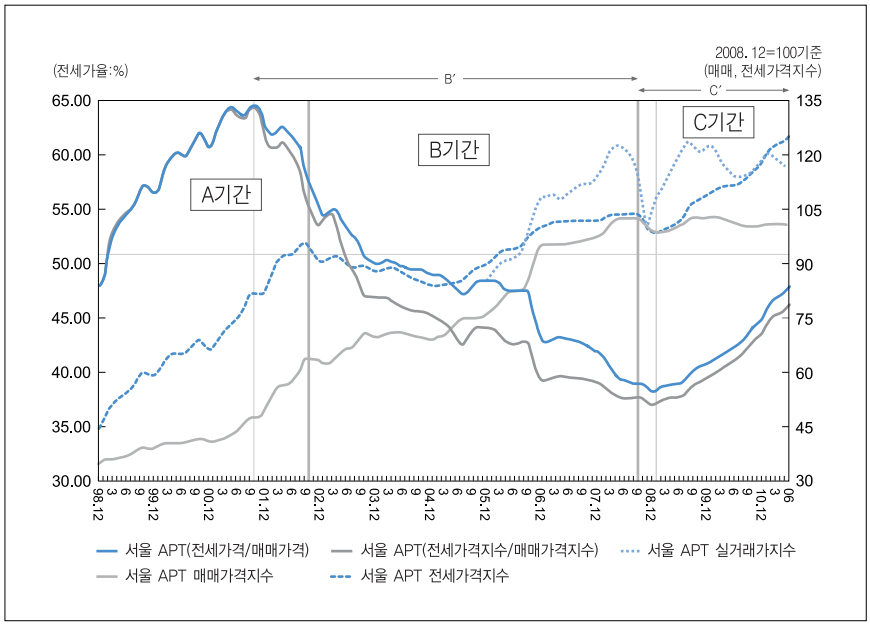

[그림 3] 아파트 KB지수 및 KAB지수와 거래량 비교(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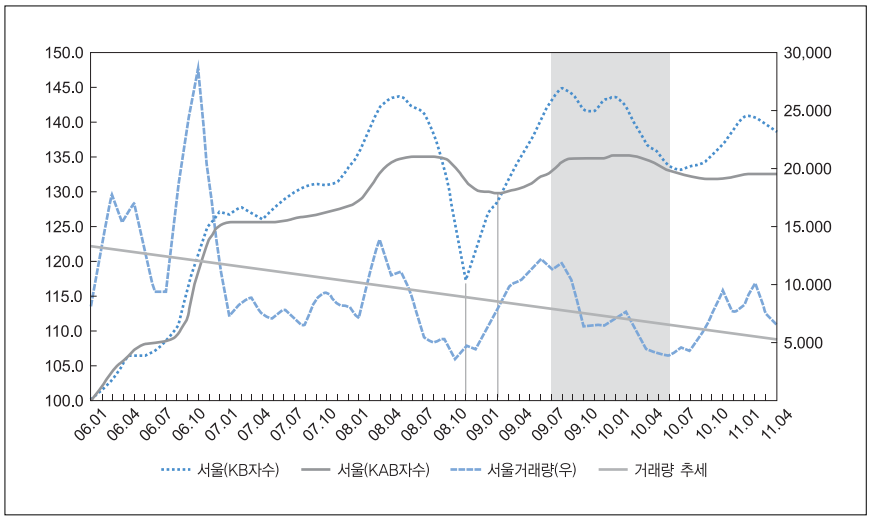

전세가가 완만하게 부침하는 B기간 동안 매매가 상승은 여전히 지속되어 전세가율을 58.7%에서 38.2% 수준으로 장기간에 걸쳐 하락시켰다.

2.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가격변화 동향

가. 매매가 대 전세가 간의 장기적 관계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1년여 이상 지속되는 전세가급등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2]는 13년 가까이 우리나라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 기간적으로 1997년 말의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후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GFC) 이후를 포함하고 있어서 2차례의 해외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들이 반영되어 있다. 2008년 12월을 기준시점으로 국민은행(KB)이 발표한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그리고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뿐만 아니라 2006년 1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집계 · 작성하여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아파트실거래가지수도 포함시켰다[6]. 하부기간(sub-period)별로 나누어보기 위해 구분 시점을 전세가지수가 정점(peak)에 달하는 2002년 9월과 매매가 상승이 멈추는 2008년 3/4분기 말로 잡아 A, B, C 기간으로 나누었다. B′ , C′ 기간은 전세가율이 각각 정점 및 최저점에 달했던 2001년 10월과 2009년 1월로 B기간과 C기간을 앞당긴 소폭 수정구간들이다.

A기간(3년 10개월)은 전세가와 매매가 모두 기간 내내 상승하였고, B기간(6년)은 전세가는 소폭 하락 후 반등하지만(96 → 84 → 104, 연상승률 5% 이내 변동폭)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매매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나 상승률은 A기간에 비해 둔화되었고(17.3% → 8.3%), C기는 매매가가 세계 금융위기 직후 하락 후 회복하여 하향 안정화한 반면 전세가는 급하게 상승중(GFC 직후 최저점 대비 연상승률 9.8%)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대적 변화를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의 큰 흐름을 하부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동 비율은 A기 중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올랐으나 전세가 상승률이 높아서 48%에서 65%로 급등하였던 전반부('01. 10월까지)와 매매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후반부 1년('01. 11월~'02. 9월)으로 구성된다. 동 비율의 장기 하락기간(B′)은 매매가의 장기간 상승기(A+B)와 7년간이 중첩되고 있다. 일견하여 전세가가 완만하게 부침하는 B기간 동안 매매가 상승은 여전히 지속되어 전세가율을 58.7%에서 38.2% 수준으로 장기간에 걸쳐 하락시켰다. 그리고 다시 C기간 중 금융위기 이후에는 매매가가 정체되고 전세가가 급등하여 전세가율을 48% 수준으로 상승시킨다.

6) 미국의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의 반복매매모형(repeated sales method)과 유사하게 실지시장거래가격자료를 대상으로 (동일 주택가정하에) 작성한 KAB의 실거래가지수를 포함한 이유는 기존 KB지수가 갖는 평활화효과(smoothing effect) 때문에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가격조정이 미진했다는 지적을 감안하기 위해서이며, 주요국 주택지수를 비교한 노영훈(2009. 12)를 참고 바람.

정리하면, 이전에도 전세값 급등기(A기: '99~'02. 10)는 있었으나 현재와의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매매가 또한 상승하고 있었고 현재는 매매가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당시 전세값 상승 속도가 더 빨라서(연상승률로 22.2%> 17.3%) 서울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5% 수준까지 급등했었다. 이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세보증금 수준이 평균적으로 3분의 2에 달한다는 것으로 최근 언론기사에서 전세값 폭등의 구체적 사례로 소개되는 개별 아파트단지의 전세가율 수치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론 A기 후반 2001년 10월 이후부터 전세가 상승이 멈춘 2002년 9월 무렵까지의 1년간은 매매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해서 전세가율이 역전하여 59%로 하락한 후 전세가율의 장기 하락기에 돌입한다. 최근 전세급등기(C)의 낮아진 전세가율 48%보다는 현격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2009년 1월 이후 최근 2년 반여(C기 후반) 기간 중의 전세가는 지수 기준으로 25% 정도 상승한 것으로 연율 9.8%에 해당하여 이전 전세가 상승기였던 A기('98. 12~'02. 9)의 연율 17.3%보다 크게 낮으면서 최근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48%도 이전 전세가 상승기의 시작점 수준(48%)이다.

이전에도 전세값 급등기 (A기: '99~'02. 10)는 있었으나 현재와의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매매가 또한 상승하고 있었고 현재는 매매가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나. 주택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정책논의들

1999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세가 지배적인(dominant) 주택임대차 유형이었던 것과 달리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세의 상대적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이 현상은 공식적인 주택금융제도가 미비했던 1990년대 말까지 전세보증금이 갖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적 역할'을 제도금융권도 분담하게 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2자간 관계에서 금융기관을 포함한 3자간 관계로 주택시장이 변모한 데에 기인한다. 주택자산시장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 대출까지도 활성화됨에 따라 주택소유가구는 전세보증금을 주택대출금에 추가적인 차입수단(leverage)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이자율과 주택가격 급등의 환경하에서 신용제약을 덜 받는 주택자산가들은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의 임대료적 성격보다는 낮은 차입비용 매력 때문에 보증금의 소득수익에 관심을 덜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형태가 증가하면서 보증부 월세 및 반전세 등 전월세 혼합형 유형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전세 세입자가구들이 최근 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조건은 순수전세에서부터, 월세 현금흐름만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순수월세, 그리고 그 사이의 혼합형인 보증부월세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세가 급등 과정에서 전세가 상승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재계약하는 반전세가 발생하여 '(넓은 의미의) 보증부월세' 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저금리 환경에서의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 활용 애로와 금융위기 이후 임차가구의 소득 및 저축능력 제약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 인상분(△D)에 대한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도 늘어나는 추세인데[7]이는 세입자가구 입장에서는 임대주와의 전세계약 협상과정에서 전세금 인상분의 월세전환 조건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제 대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세시장과 월세시장의 임대료 조건을 비교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와 보증부월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이창무 · 이상영 · 안건영(2003)은 동 전환율 결정요인을 전세와 월세시장 간 관계에서 실증분석하고 있다.

동 비율은 순수전세에서의 전세보증금과 순수월세에서 매달 지급되는 월차임(또는 연간월차임 합계액) 간의 상대적 비율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조건은 〈표 1〉 및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월세 지불 없이 목돈인 전세보증금과 (실물)주택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맞바꾸어 서로 활용하는 순수전세에서부터, 월세 현금흐름만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순수월세, 그리고 그 사이의 혼합형(hybrid)인 보증부월세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전흐름상의 양 극단에 해당하는 순수월세의 월지급액(monthly rent)과 순수전세의 보관금(deposit) 간의 비율을 계산하여 다양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결합들(combination)을 임대료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로 표현되는 보증부월세는 '동 주택이 만일 순수전세 형태로 계약 체결되었더라면 받았을 순수전세보증금에서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뺀 차액' 을 분모로 사용하고 분자는 연간 월차임 합계액을 보통 사용한다. 구체적 산식은 아래와 같다[8].

전 · 월세전환율= (월세×12개월) /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표 1〉 임대차 유형별 현금흐름 구분

현금흐름 \ 임대유형	순수전세	보증부월세, 반전 (Hybrid)	순수월세
맡겨둔 돈(보증금)	△D	D′, K	×
월세(차임)	×	Rm′	Rm

7) 2011년 경우 7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조 1,270억원으로 6월 말의, 3331억원 대비 8.8% 급증하였는데, 이는 동기간 주택담보 대출 증가율 0.4%의 22배에 달하고, 서민 등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도 7월 증가분이 8,000억원에 육박해서 작년 월평균 대출 증가액 4,000억원의 배에 이르고 있음.

8) 유사하게 '월세이율' 이라는 용어도 사용되는데 월세/(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100으로 계산되어, 연간 수취액이 아닌 한달 기간의 월차임을 분자로 사용하고 백분율로 표시한 차이점이 있고, 보증금을 원금으로 그리고 월차임을 이자로 본 이자율 또는 월세수익률 개념임.

[그림 4] 임대차유형별 현금흐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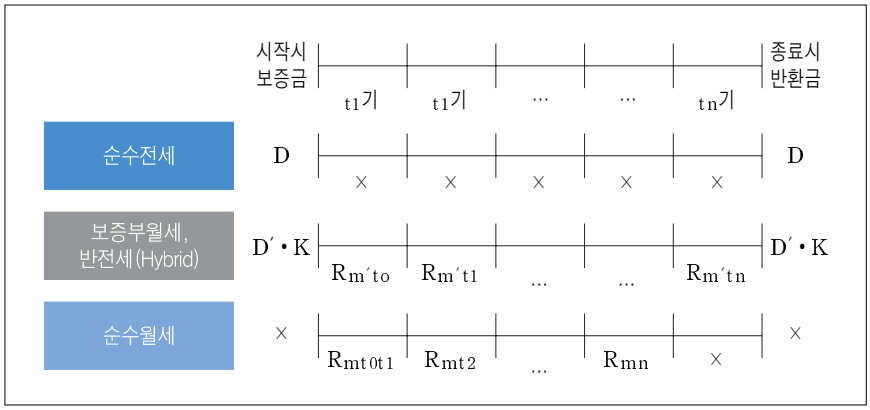

D : 전세보증금
D′·K : 반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R_{m'}$: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부 월세
R_m : 월세
× : 현금흐름 없음
to, t1 … tn : 임대차기간 시작(to) ~ 종료(tn)

최근 전세가격 급등 이후 계약이 갱신되면서 유행하게 된 반전세의 경우 그 월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의 70% 이상에 달하는 경우 전환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전월세 전환율은 순수전세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이외의 순수월세 및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순수전세였을 때의 전세보증금을 가정하여 개별 임대차 계약별로 비율이 계산되는데, 전셋값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월세가 전세보증금에 비해 높아지면 상승한다. 개별 계약들을 수집하여 수도권, 6개 광역시 등의 평균적인 주택 전월세 전환율 움직임을 보면 2003년 이후 대체로 하락 추세에 있고 지방, 광역시, 수도권의 순서로 높은 실정이다. 최근 전세가격 급등 이후 계약이 갱신되면서 유행하게 된 반전세의 경우 그 월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의 70% 이상에 달하는 경우 전환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의철 · 심종원(2005)은 임대인의 관점에서 전세와 보증부월세 간 계약비율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낮을수록 전세계약 비율이 증가하고 예상매매가 상승률이 높거나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보증부월세 대비 전세계약 비율이 감소함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2005년 이전의 단기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9]. 동 연구의 분석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의 임대차 유형이 전세에서 보증부월세 및 월세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의 조짐을 ⅰ) 전월세전환율의 하락, ⅱ) 예상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의 하락, ⅲ)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비율의 상승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시장이 과거의 공

9) 주택자본가 입장에서 두 가지 임대유형이 주는 수익률을, 전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D/P*)과 예상주택가격상승률(*a*)로,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전월세전환율(*r*), 보증부월세의 보증금(*D′*), 예상주택가격상승률(*a*)로 계산한 후 그 상대적 비율에 대한 편미분 부호로 판별한 후 국민은행 및 부동산114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음.

경제위기 과정 중 부동산 미보유 가구가 오히려 재산가치 유지 측면에서 타격을 덜 받는 등 전세보증금 자산의 안전성이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급자 위주 시장에서 수요자인 임차인의 교섭능력 또한 증대되어 변모하였고, 이들 요인 이외에도 금융 및 세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져서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임대유형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임대주 입장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월 차임을 받고자 할 때 0.83~0.94%에 달하는 수도권 월세이율을 적용하고 싶겠지만 이는 연간으로 전세보증금의 10.1 ~11.3%에 달하는 임대수입에 해당하여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예, 연 4%)의 두 배 이상에 달하여 이를 수용할 여력이 있는 임차인은 많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 순기능 때문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전세라는 임대차 유형이 임대주와 임차인 간의 이해상충으로 대폭 월세 유형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상호 협상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는 판단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가격 하락 후 주택관련 자산구성의 차이에 따라 순자산 감소의 정도가 상이했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세계 금융위기 전 · 후인 2006년과 2010년간 가계자산 구성 변화를 연구한 노영훈(2010)에 따르면 전세 세입가구는 순자산액이 오히려 19.9%나 증가한 반면 자가 거주가구는 3.6%, 주택 소유가구는 1.9% 소폭 감소한 반면 월세 세입자가구는 25.2%라는 큰 폭의 순자산액이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미소유가구의 자산총액 중 전월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50.5%에서 58.8%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금액도 55%나 증가하는 등 경제위기 과정 중 부동산 미보유 가구가 오히려 재산가치 유지 측면에서 타격을 덜 받는 등 전세보증금 자산의 안전성이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10]. 동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 분위에 비해 3분위 이상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부채액이 2006년 대비 2010년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 가구 대상 임대보증금 형태의 평균부채액은 29.3% 상승한 반면 3분위에서는 41.8%, 4분위는 30.3%, 5분위는 36.4%나 증가하여 중간 및 고소득계층가구가 전세를 통한 차입(leveraging)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최근 전세가격 급등의 원인을 '자발적 전세선호' 즉, 주택 구입능력이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시장에 잔류하여 주거서비스를 소비하려는 가구가 증가하거나 주택은 소유하되 주거서비스는 임차주택에서 해결하는 '자가점유가구의 감소' 결과로 진단하고 주택 구입수요 진작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정책기조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주택 소유나 점유 의사결정이 주택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주거서비

10) 물론 2006년과 2010년과의 4년간 비교에 있어서 동일 가구를 상대로 재조사한 패널자료가 아니므로 2006년 기준 주택 미소유 전세 세입자들만의 순자산 변화 이외에도 동 기간 중 주택소유 및 점유 형태별로 구분한 가계그룹들 간의 이동성(mobility) 변화도 포함되어 있을 것임.

스수요 및 자산수요를 결정하는 매우 다양한 인구학적(demographic) 및 사회경제학적(socio-economic)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대책들이 계층별로 대상화(targeting) 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령프로파일 상 주택소유비율은 50대에 정점에 달했다가 그 이후 고령화하면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소득 및 소비지출의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의 예측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노영훈(2011)에서도 관찰된다.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50대 세대주 주택소유 비율이 2006년의 84.9%에서 2010년 75%로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11] 외부충격 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전세수요의 주택매매수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애주기 중 초기단계에 있거나 순자산 형성이 적은 가구에게는 주택의 소비를 적정 수준보다 낮게 하여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를 매매수요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미 소형주택 가격은 급등한 실정이다.

50대 세대주 주택소유 비율이 2006년의 84.9%에서 2010년 75%로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부충격 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전세수요의 주택매매수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Ⅲ. 전세제도에 대한 새로운 견해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분석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주거서비스 임대가격으로서만 개념화하여 주택매매시장 대 임대시장 간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 주를 이루었다. 외국에서의 매매가/임대료(Price-to-Rent ratio) 비율 대신 매매가/전세가(또는 그 역수인 전세가율)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이는 전세가 가장 높은 비중의 임대차유형이기도 했지만 월세계약의 월차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자료 제약여건도 한 요인이었다. 예를 들어, 김정호 · 이명재(1988)와 손재영(1998)의 전세가 대 매매가의 관계를 자산시장 재정(asset market arbitrage) 조건에 따라 "매매가가 많이 오르면 (또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전세의 매매가 대비 비율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실증분석 연구들이다. 전자는 횡단면자료[12]만을, 후자는 주택은행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매매가상승률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은 음(-)이 아닌 양(+)의 관계를 보이는 등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이후의 실증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보고되는데 이는 전세가율이 매매가/임대료(Price-to-Rent)에 대한 정확한 대용변수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즉, 주택으로부터의 자본이득에 대한 지속적 기대가 있어야지만 월 임대료의 자본환원가치보

11) 이는 60대 이상 세대주가 2006년 84.3%에서 2010년의 76%로의 감소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감소폭이다. 이들 가구주 연령계층에 속한 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처분했기 때문인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12) 단년도 횡단면자료상의 개별 주택들의 매매가 상승률 또는 그 예상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관건인데, 만일 단순한 횡단면 실증분석 모형을 수행하였다면 '한 시점에서 아파트가격이 고가일수록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게 또는 낮게 관찰되는지'의 의미임.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 특성로서 전세제도와 선분양제도를 들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료의 한 형태라는 측면과 임차자의 임대주에 대한 주택금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 높은 매매가격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데, 전세보증금은 임대료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나라에 고유한 전세제도의 특징들을 감안한 제도경제학적 접근방법론이 2000년대 이후 이론 및 실증연구 논문들에서 나타나는데, 공통된 점은 전세계약의 금융적 측면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최근 Se-Jik Kim and Hyun Song Shin(2010)은 전세제도를 주택임대차계약(housing lease contract)일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와 금전대차가 결합된 계약(joint contract of lease and lending) 형태로 개념화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전세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주택점유사용권을 주는 대신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임차인에게서 받고 계약기간 동안 서로간에 월세와 이자 지급을 자동적으로 상쇄시키기로 – netting-out of rent and interest flows – 묵시적으로 합의한 결합계약으로 개념화하게 되면, 집주인이 사용권을 팔았다가 원래가격으로 되사는 환매조건부 채권계약(repo, repurchase agreement)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전세를 주택관련 레포거래(Housing repo.)로 칭하고 있다. 집주인과 임차인은 각자 월세와 이자를 받으면서 원래 재산을 감시하는 집행비용(monitoring and enforcement cost)의 절약을 통해 중개비용을 낮추고 이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저축을 통한 자본축적, 그리고 효율적인 금융배분을 수행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전세제도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김선웅(2000)과 노영훈(2002)에서도 시도되었다. 김선웅(2000)은 "전세제도는 공공 금융시장에서의 주택금융 공급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1998년 이전의 한국적 경제환경하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민간주택금융 제도로서 임대인이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월세에 비해 전세는 임차인이 위험을 부담하지만, 주거서비스의 가격을 낮게 하는 장점이 있다. 임차인이 상당히 큰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저소득층의 주택소비를 위축시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세권을 담보로 한 전세금 융자제도(전세권 담보대출 제도)를 제안하여 월세주택을 공급하지 않고도 소비자에게 월세와 같은 주거형태를 갖게 하는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영훈(2002)은 2001년 우리나라 주택가격 급등기 초기에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조세정책 방향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의 대출(lending)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 특성(stylized facts)로서 전세제도와 선분양제도를 들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료의 한 형태라는 측면과 임차자의 임대주에 대한 주택금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주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월세처럼 일정기간마다 지불하지 않고 임차기간 시작 시 보증금(deposit)이라는 목돈을 임대주에게 맡기고 임차계약 해지 시에 되돌려 받는 방식의 임대료라는 것이다[13]. 이러한 전세보증금에 시중이자율을 곱하여 (월세로 전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세정당국에서는 세무회계처리하고 있다. (중략) 우리나라의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로 전세 등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택투자에 대한 자본수익률이 주택매매가격 급등기에는 자본이득을 통해서, 그리고 안정기에는 주택전세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보전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원활히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세와 월세 간 임대 유형에 따른 차등과세는 경제적 비효율성 및 형평성 이슈가 수반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Ⅳ. 임대주택시장과 주택관련 조세정책

임대주택사업자는 국세청에의 임대주택등록 여부를 불문하고[14] 임대차계약 유형인 전세 또는 월세냐에 따라 차등적 과세대우를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전세의 경우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국세청고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추계신고와 달리 기장신고하는 경우 3억원 초과 보증금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임대사업부문 발생이자를 공제해 주고 있다. 월세 및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고가주택(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나 2주택 이상 소유자, 그리고 해외 임대주택에 한해 월차임의 연간합계액과 위에서 설명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소득세 과세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대출이자, 재산세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주택 이외의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 등 임대사업자처럼 세무 처리하고 있다.

이는 주택임대로부터의 수입을 월차임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수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면서도 세부담이 임대인의 경제행위 특성에 따라 달라지도록 人稅(personal tax)화한 것으로 '다주택소유자가 어떻게 세를 주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갖게 된다.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인세이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처럼) 인별 차등화 대우를 한 것은 조세정책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전세와 월세 간 임대 유형에 따른

13) 이는 임차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금의 대부에 따른 이자를 담보목적물로 제공받은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으로서 대신하는 것이다. 즉, 임대주와 임차자는 주택과 현금이라는 두 가지 자산을 맞교환하여 각자 상대방에게서 빌린 자산을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면서 사용·수익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주택에 대한 임대료와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이를 상쇄하기로 거래당자가 맺은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4)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므로 주거용 부동산만을 소유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여 과세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됨.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문제의 해법이 달려 있다.

차등과세는 경제적 비효율성 및 형평성 이슈가 수반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주택 소유가구가 추가적으로 1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되는 경우, 그것이 고가주택이라면 전세 형태로 임대할 경우 아무런 임대주택소득세 부담을 지지 않지만 월세 형태의 임대라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15].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는 임대하는 주택으로부터의 월차임과 보증금이 과세대상이 되지만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등과세가 발생한다. 주택 추가구입을 통한 주택자산 증가행위에 있어서 전세 형태로의 임대차를 유인하는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과세는 2년 전월세주택임대 및 상업용부동산과 전세보증금 수취와의 과세 불형평을 문제시하여 2년 후인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세법개정된 사항이다. 월세로 수취한 주택임대소득과 전세보증금으로 수취한 전세로부터의 임대소득과의 소득세 차별문제는 우리나라 세제 및 세정당국이 수십년간 고민하면서 세법을 개정했던 사안이다. 2001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를 폐지하게 되는데, 세제당국이 그 당시 내세운 논리는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 다른 소득(예: 이자 ·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 되고 별도의 간주임대료를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다"는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세처럼 간주임대소득을 과세하려면 임대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용자산의 구입비용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을 때의 이자비용 등 각종 사업자에 대한 필요공제도 허용되어야 한다. 결국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문제의 해법이 달려 있다.

또한 두 번째, 상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세하자는 주장은[16], 우리나라가 주택신축판매 때까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 주택임대용역 및 중고 주택매매는 면세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면세방법론[17]을 택했기 때문에, 상업용부동산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단순비교하여 차별성을 문제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변하여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순기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세제당국은 2011년 세법개정안에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전세보증금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3주택 소유자 중 소형주택을 하나라도 소유한 사람은 2주택 소유자가 되어 전세보증금 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이는 2011년분부터 적용된다.

15) 비과세주택임대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는 '..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라고 기술하여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요건으로 1개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월차임을 금전으로 수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16) 성명재(2009)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상업용부동산 임대차는 전세보증금을 월세 상당액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도 부담하면서 소득세도 부과된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임대차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과세를 주장하는데, 전자는 부동산임대사업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과세이고 다주택소유자의 임대행위는 부가가치세상 사업자과세가 아니라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과세를 시행하려면 감가상각 및 관리비용 등 비용공제문제도 해결했어야 함.

17)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면세방법론은 EU 6차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 예를 들어 상업용, 농업용, 그리고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임대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터키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주거용부동산임대와의 동등대우 원칙을 지켜 VAT를 면세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 이외에도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주거안정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수도권 3호, 지방 1호 → 1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 · 법인 사업자 동일화(임대주택 등록 후 개시일 현재 6억원 이하),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총급여 3,000만 → 5,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으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외에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만을 소유한 가구가 양도한 거주주택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하고, 보유단계 중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종부세특례를 적용받도록 세제지원한 것이다. 과거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임대사업용 주택 구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향후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18]. 한편 개정안 중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는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시 거래가액 노출을 지원하는 취지의 소득공제인데 저소득 전월세자 지원대책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는 판단이며, 임차인에 대한 월세 지급액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별로 없음을 감안할 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용자산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등 필요경비공제에 문제가 있음은 이미 기술하였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전세제도' 의 본질을 임대주택서비스 사용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으로서만 파악한 것에서 기인한다. 전세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대출적 측면을 감안한 새로운 견해에 따른 조세문제를 임차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전세제도를 전세보증금과 (실물)주택을 일정기간 맞바꾸어 서로 사용 수익하고 계약만료일에 각자 원래의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개념으로 보는 틀 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묵시적으로 주고받는 묵시적 월세(rent)와 이자(interest) 흐름은 각자의 소득 성격에 따라 조세문제를 수반한다. 만일 계약기간 중 불편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금액의 월세와 이자를 매기 주고받았다면 임대인은 월세소득을, 그리고 임차인은 이자소득을 수취한 셈이다. 즉,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 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제공한 임차인은 이자상당액을 소득으로 받은 셈이다. 전주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은 이를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전세보증금의 월세 상당액이 지급된다고 해석할 수

대사업자의 사업용자산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등 필요경비공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고유한 '전세제도' 의 본질을 임대주택서비스 사용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으로서만 파악한 것에서 기인한다.

18) 물론 매입임대주택이 면적기준 149㎡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이며 지방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제약은 존재함.

주택시장 구조적 변화의 중요한 내용은 주택 구입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것과 거주를 위한 주거서비스 수요를 임대차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가구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있다. 임차주택으로부터 매기 향유하는 주거서비스 생산흐름에 대해서는 자가점유자(owner-occupier)의 거주주택 귀속임대소득(imputed rental income)도 소득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원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많은 나라에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주택시장 구조적 변화의 중요한 내용은 주택 구입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것과 거주를 위한 주거서비스 수요를 임대차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가구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지만 가까운 장래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 주택에 대한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이 감소된 점,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DTI) 등 주택금융 대출규제가 소득에 연계되어 강화된 점, 향후 경기회복 시 이자율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비용 부담 증가 예상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주택시장 매매가격 조정이 불충분하였다는 특성도 있다. 매매가는 정체된 반면 임대시장에서의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소형 평형의 경우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주택자본에 대한 자산시장 재정조건에 따르면 현재의 '전셋값의 지속적 상승 및 매매가의 약보합세'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적이고 당연한 경제적 현상이다. 주택자산투자의 총투자수익률의 구성요소 중 기대되는 자본이득이 적을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임대소득인 전월세로 이를 보전해야 수익률시장 균형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는 투자목적용 매수 수요는 저하되고 주거서비스를 전월세를 통해 해결하는 현상이 주류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 조정인데,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중소형주택의 전월세가격 급등이 정책당국의 가장 큰 숙제로 대두하고 있다. 저이자율하에서 상승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투자수익이 부진하게 되자 임대주의 요구에 의해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임대 유형 전환 압력이 증가하는 등 주택관련 시장이 저량(stock)에서 유량(flow) 경제로 부분적으로 이전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 가격상한제 도입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임대료규제 정책의

향후 경제적 부작용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주택 및 부동산 자산관련 세제를 거시 금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임대시장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월세 대신 받는 간주임대료로만 보아 과세하겠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임대주에게는 후순위채무이자, 임차인에게는 금융자산으로서 이해하여 가계부채의 건전성 문제와 함께 고려한 후 전세보증금이라는 사적금융의 공적금융으로의 대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정책이슈가 되었다. 특히 노영훈(2011)에 따르면 주택자산의 소유와 주택의 점유 형태별로 가구들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가거주 1주택 소유가구와 무주택 임차가구는 부채상환비율(DSR) 및 총자산 대비 부채 측면에서 재무적 건전성을 보인 반면, 타지주택소유 임차가구나 다주택 소유자가구의 3분의 2는 부채가구였고, 특히 이들 가구 중 하위소득계층은 부채상환비율이 (경상소득 대비) 23%대에 달해 향후 소득 감소나 이자율 상승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저소득 타지주택소유 임차가구의 부채총액은 아직까지는 자산총액보다는 낮았지만 금융자산액보다 높았고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요 자산항목인 (임대주에게 맡긴) 거주주택 전세보증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타지주택소유 임차가구나 다주택 소유자가구의 3분의 2는 부채가구였고, 특히 이들 가구 중 하위소득계층은 부채상환비율이 (경상소득 대비) 23%대에 달해 향후 소득 감소나 이자율 상승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최근의 거시경제 여건하에서 주택관련 조세정책의 큰 방향은 i) 과거 투자수요 억제적 징벌적 중과세제의 정상화, ii) 주택시가에 기초한 취득 및 보유세의 거래부진 및 소득흐름 변화를 감안한 세부담 완화조치(tax relief), iii) 주택관련 부채 축소(deleveraging) 촉진을 지원하는 세제 모색, iv) 전세와 월세 간 차등과세제도 정비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과거 다주택자 및 집 부자(고주택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이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징수 등 징벌적 조세부담은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급히 개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주택정책의 제1차적 목표는 안정된 주거생활의 달성이지 주택소유 촉진이나 다주택 소유 억제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시장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과세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가 전세보증금을 정기예금이자 정도의 월세임대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측면에서만 본 것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을 하였다는 측면은 간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일한 시장가치(capital market value)를 갖는 주택이라면 소유주가 자가거주하는 주택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되어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

을 통한 묵시적 간주임대료 등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용 현황이 다름에도 재산세 부담은 같다. 주택자산 소유자가 취득, 보유, 그리고 처분단계에서 어떻게 이용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차등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택 보유 챗수나 가액에 따라 중과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임대주가 전세보증금을 수취한 경우의 임대소득과세의 애로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재산세 과세 시 주택공시가액 같은 자본시장가격(capital market value)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간 임대가치(annual rental value)로서의 전세보증금 자료를 활용하여 차등화하고, 처분 시에도 임대사업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사업용자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KiPf

<참고문헌>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각 월호.

국토해양부, 『수도권월세가격동향조사』, 각 월호.

김선웅, 「전세제도의 특성과 전세금의 유동화방안」, 『주택금융』, 2000/가을호, 2000, pp. 69~89.

노영훈, 『글로벌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조세재정정책적 함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출간예정), 2011.

_____,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조세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7-09, 2007.

_____,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조세정책방향」, 『재정포럼』2002년 8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 pp. 6-31.

박진우 · 백성준, 「수도권월세가격동향조사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2010. 11. 29.

성명재,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소득세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자료 09-03, 2009. 7.

이창무 · 이상영 · 안건혁, 「아파트 보증부월세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제38권 제1호(통권 126호), 2003, pp. 109~124

정의철 · 심종원, 「아파트 전 · 월세 구성 비율 결정요인 분석」, 『국토연구』 제44권, 2005. 3, pp. 87~9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 복지 향상, 어떻게 이룰 것인가」, 2011. 3. 29 발표자료.

Se-Jik Kim and Hyun Song Shin, "Housing Repo," Working paper, 2010 Dec.

<부록>

〈부표 1〉 부동산(아파트) 거래량 조사통계부분 및 변화내용

구 분[1]	온나라 부동산 통합포털 '아파트' 거래통계		실거래 아파트 공개건수
	토지거래 기준	건축물거래 기준	
통계성격	공식 통계자료(통계청 승인통계)		보도 참고자료
포함대상	과거의 검인자료에 추가하여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자료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자료('06년 이후부터)
작성기준	토지거래(건축물 부속토지 거래) 중 지목이 대지 및 공장용지이고 건축물 주용도가 아파트인 거래를 집계 (필지수)	건축물거래(건물만 거래된 경우 포함) 중 건축물 주용도가 아파트인 거래를 집계 (호수)	아파트 매매거래중 실거래가 검증결과 적정인 건수를 집계 (실거래가 공개건수) ※ 매월 정기공개 외 추후 검증완료된 건을 추가공개하고 있으나 시계열 유지를 위해 공개건수에는 미반영
	매매, 판결, 교환, 증여, 신탁 · 해지, 분양권, 기타 등 7개 거래유형 모두 포함 ※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는 별도 발표하지 않음		
비포함	경매(법원), 공매(자산관리공사, 공공기관 압류재산 공매처분), 상속, 수용 등 비포함		
통계작성누락거래	지목이 대지 및 공장용지 이외인 아파트 거래, 부속토지 거래 없이 아파트만 거래된 경우	현재, 가장 정확한 아파트 거래 통계	공개에 부적합한 매매 거래 (검증결과 부적정 및 검증미완료 건, 지분거래, 분양권 전매 등)
작성주기	매월 1회 (거래 신고일 기준 작성)		
시계열 범위	'98년부터 작성('06년부터 작성 필요성이 적으나 시계열 유지를 위해 계속 작성 중)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06년부터 작성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06년부터 작성

〈부표 2〉 국내 주택임대차 시장가격 통계 비교

	월세가격지수	집세지수(전세, 월세)	월세이율
발표기관 및 명칭	국토해양부(MLTM) 수도권 월세가격동향조사[1)]	통계청(StatKorea) 소비자물가지수	국민은행(KB)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기	월간	월간	월간
작성범위	• 수도권	• 전국	• 전국
주요개념	• 표본주택에서 조사된 보증금과 월세, 전세 가격을 바탕으로 만든 가상의 월세금액(완전월세액) • 기준: '10. 6월=100.0	• 표본대상가구의 가계소비 활동 중 집세로 실제 지불한 금액 • 기준: '05년 평균=100.0	• 월세가격을 전세환산액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해당 지역의 평균월세이율
산식	• 월세금액(완전월세액) =보증금×전월세 전환율*+월세 * 전세월세전환율: 해당 시군구, 주택유형, 규모의 평균 전월세전환율		• 월세이율(%) ={월세가격/(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100]
조사방법	• 표본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 조사원이 방문 면접조사	•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 입력 및 전화 또는 팩스조사
모집단	•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월세가구	•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부분	•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주택
표본수	• 1,886개	• 10,000여개	• 약 3,500여개(중개업소)

주: 1) Survey on Housing Monthly R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monthly by MLTM

[부도 1] 아파트 KB지수 및 KAB지수와 거래량 비교(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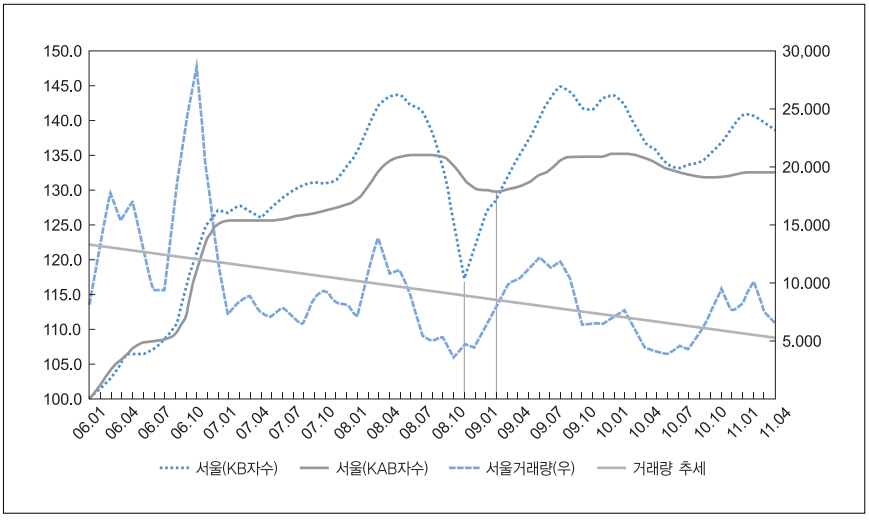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ecpmh@kipf.re.kr)

Ⅰ. 서 론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공정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국세액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체납국세액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 이유는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체납세금에 대한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체납자 및 체납액 문제의 심각성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존재한다. 지방세 체납문제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244개의 지방자치단체[2]가 존재한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재정자립도[3]는 2011년 51.9%로서 지난 2001년(57.6%) 대비 약 5.7%p가 감소하였다. 이는 자신의 재정을 독립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총 155개(광역 7개, 시 34개, 군 80개, 자치구 34개)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약 63.5%나 차지하였다. 이 중 1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재정지표는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자체수입의 주된 요소인 지

지방세 체납문제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태이다.

1) 본고는 지난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방세 체납 3조원 이대로 좋은가?'란 토론회(주최: 국회의원 박대해)에서 주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
2) 2011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16개(특별시 1개, 광역시 6, 도 8개, 특별자치도 1개), 기초자치단체 228개(군 86개, 자치구 69개, 시 73개) 등 총 24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3)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대비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자립의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충당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미정리 체납액은 2009년 결산기준 3조 3,481억원이며, 지방세 부과액 대비 약 6.8%에 달한다.

방세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 결과, 체납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징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며, 제Ⅳ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있다.

Ⅱ.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과 문제점

본장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변화 추이 등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을 살펴보고, 국세 및 다른 국가의 지방세 체납 현황과 비교·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1.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

가. 미정리 체납액 현황[4)]

우리나라 지방세의 미정리 체납액은 아래의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결산기준 3조 3,481억원이며, 지방세 부과액 대비 약 6.8%에 달한다. 2006년 이후의 미정리 체납액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3.2조원대에서 3.4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비중은 대체적으로 6% 후반에서 7%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미정리 체납 건수는 약 4,360만건으로 건당 금액은 약 7만 7천원 정도이다. 2006년 이후의 미정리 체납 건수는 대체적으로 4,300만~5천만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정리 체납 건당 체납액 규모는 6만~8만원 사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본고에서 지방세의 미정리 체납액이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세정연감』의 징수실적상의 미수액을 의미한다. 미수액은 지방세 미징수액 중 불납결손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징수유예된 금액이나 납기미도래분이 존재한다면 그만큼 실제 미정리 체납액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때, 지방세의 경우 징수액을 집계하는 기간이 회계연도 기간(예: 1역년)보다 길기 때문에 미수액 중 납기미도래분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1〉 지방세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추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부과액(억원)		453,509	476,118	497,316	493,712
미정리체납액(억원)		32,634	32,134	34,096	33,481
	비율(%)	7.2	6.7	6.9	6.8
	건수(건)	45,137,144	43,115,889	50,484,494	43,595,711
	건당 금액(천원)	72.3	72.9	67.5	76.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지방세 미정리 체납의 건수와 금액에 대한 세목별 분포를 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도 지방세 미정리 체납의 건수와 금액에 대한 세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Ⅱ-2〉와 같다. 먼저, 지방세 미정리 체납 건수의 세목별 분포를 보면 지방교육세의 체납건수가 전체 체납건수의 40.5%로 가장 높다. 그 다음, 자동차세(19.2%), 주민세(18.9%), 재산세(8.8%) 순으로 체납건수의 비중이 높다. 이때 지방교육세의 체납건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동 세목이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의 부가세(surtax)이기 때문이다. 본세에 해당하는 세목들에서 체납이 발생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동시에 체납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세의 체납건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세목별 분포를 보면, 주민세의 비중이 31.3%로 가장 높고, 자동차세(23.7%), 취득세(16.1%), 재산세(9.7%), 지방교육세(8.7%)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체납금액 비중은 5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지방세의 미정리 체납액은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집중되어 있고, 두 세목의 미정리 체납건수 비중도 38.1%로 매우 높다.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라는 특징을 지닌 것을 감안할 때, 지방세 미정리 체납의 상당부분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이 두 가지 세목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으로 결손처분된 지방세 미징수액도 상당한 규모이다.

〈표 Ⅱ-2〉 2009년도 지방세 미정리 체납 건수와 금액의 세목별 현황

구 분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당금액 (천원)
		비중(%)		비중(%)	
지방세 전체	43,595,711	100	3,348,071	100	77
취득세	271,508	0.62	538,364	16.08	1,983
등록세	25,668	0.06	90,737	2.71	3,535
면허세	911,577	2.09	17,770	0.53	19
지역개발세	16,206	0.04	710	0.02	44
공동시설세	1,648,998	3.78	58,631	1.75	36
지방교육세	17,644,707	40.47	291,515	8.71	17
주민세	8,236,819	18.89	1,047,510	31.29	127
재산세	3,840,799	8.81	323,495	9.66	84
자동차세	8,357,502	19.17	794,334	23.73	95
농업소득세	40	0.00	7	0.00	184
도축세	79	0.00	815	0.02	10,323
담배소비세	12	0.00	1,465	0.04	122,063
종합토지세	228,016	0.52	30,834	0.92	135
주행세	6	0.00	52	0.00	8,664
도시계획세	2,382,747	5.47	138,671	4.14	58
사업소세	31,027	0.07	13,160	0.39	424

주: 1) 2011년 지방세법 전면 개편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되었으며 도축세는 폐지됨.
2) 2010년 세제개편으로 주민세 중 소득할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었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 지방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10.

나. 불납결손액 현황

지방자치단체는 불납결손 처분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4가지 경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5]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5) 이런 경우는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임(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 1항)

당해연도 미징수액 중 불납결손 금액이 가장 많은 세목은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과 마찬가지로 주민세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할 때에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런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세 미징수액 중 불납결손액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Ⅱ-3〉과 같다. 지방세 불납결손액은 2000년 5,576억원에서 2009년 8,554억원으로 9년간 약 1.5배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9년도 지방세 불납결손액 중 74%인 6,330억원은 과년도에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26%인 2,224억원은 현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해연도 미징수액 중 불납결손 금액이 가장 많은 세목은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과 마찬가지로 주민세(69.9%)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취득세(10.3%), 등록세(4.6%), 자동차세(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Ⅱ-3〉 2009년도 지방세 세목별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불납결손	
		금 액	비 중
합 계	소계	8,554	100.0
	현년도	2,224	26.0
	과년도	6,330	74.0
현년도분 불납결손액의 세목별 분포			
주민세		1,554	69.9
취득세		228	10.3
등록세		103	4.6
자동차세		103	4.6
재산세		100	4.5
지방교육세		70	3.2
기타 세목		64	2.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10.

현년도에 발생한 지방세 미징수액 중 그 해에 불납결손 처분된 체납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Ⅱ-4〉와 같다. 최근 4년 동안 특정 연도에 발생한 지방세 미징수액 중에서 대략적으로 12~14%대는 그 해에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징수되지 못한 지방세 중 12~14%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연도에 바로 결손처분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신속하게 체납징수 노력을 펼쳐야 하며, 결손처분에 신중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표 Ⅱ-4〉 현년도분 지방세 미징수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귀속연도	미징수액	불납결손액	비 율
2006	13,769	1,783	12.95
2007	14,282	2,016	14.12
2008	16,296	1,976	12.13
2009	16,028	2,224	13.87

주: 현년도분 미징수액은 현년도분 미수액(미정리 체납액)과 현년도분 결손액을 합한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2.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

가. 지방세 미징수액 과다[6)]

지방세의 미징수액 규모는 2009년 기준 4조 2,035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액(4조 6천억원)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미징수액 규모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 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201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Ⅱ-6〉과 같다. 전체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31개(12.7%)만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이고, 155개(63.5%)는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10개의 시 · 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시 · 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여기서 미징수액이란 미수금(미정리 체납액)과 불납결손액의 합계로서 부과액 중에서 징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표 Ⅱ-5〉 2011년도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 분	합계	구성비	광역 · 시 · 도	시	군	자치구
합 계	244	100	16	73	86	69
10% 미만	10	4.1	-	1	9	-
10~30% 미만	145	59.4	7	33	71	34
30~50% 미만	58	23.8	3	23	6	26
50~70% 미만	26	10.7	5	16	-	5
70~90% 미만	5	2.0	1	-	-	4
90% 이상	-	-	-	-	-	-

출처: http://lofin.mopas.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Jarip_02.jsp (2011년 6월 15일 접속)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비중을 비교하면, 지방세의 미정리 체납액 비중이 국세보다 높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비중을 비교하면, 지방세의 미정리 체납액 비중이 국세보다 높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7]. 구체적으로 본면, 2009년 기준 지방세의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비중은 6.8%인 반면, 국세청 소관 내국세의 동 비중은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8].

우리나라의 지방세 부과액 대비 징수액의 비율인 지방세 징수율은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일본과 비교할 경우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징수율은 2000년 83.9%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9년에는 91.5%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 징수율 수준은 일본의 지방세 징수율 수준(94.8%, 2008년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나. 체납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

2010년 8월 기준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의 담당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Ⅱ-6〉과 같다. 2010년 8월 기준 전국의 지방세 공무원 9,152명 중 체납업무 담당자의 수는 2,173명으로 약 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남도(12.9%), 부산(16.2%), 경기도(18.4%)는 체납징수업무 담당 인력의 비중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체납징수업무에 상대적으로 과소한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21.3%), 울산(21.6%), 전라남도(23.0%), 강원도(23.1%) 등도 전국 평균인 23.7%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67.3%), 전라북도(32.7%), 충청북도(32.5%) 등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인력이 체납징수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7) 일부 학자나 공무원은 국세통계연보상의 체납발생총액과 지방세정연감의 미수액을 비교한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 상의 체납발생총액은 징수액을 차감한 순계 개념이 아니라 징수액도 포함한 총계 개념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앞서의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세정연감의 미수액은 국세통계연보의 미정리체납액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국세청 소관 내국세의 부과액은 징수결정액(169조 6,268억원)을 사용하였다. 국세청이 발행하는 2010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귀속 국세청 소관 미정리 체납액은 4조 1,659억원이다.

미정리 체납건수와 체납징수업무 담당 인력 규모를 동시에 고려할 때,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 공무원의 규모를 볼 때, 지방세 체납사건의 숫자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담당자 1명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미정리 체납건수는 평균 2만건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체납징수업무 담당자가 체납사건 1건당 투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9]이 6분 미만임을 시사한다. 특히 체납담당 인력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경상남도의 경우 지방세 체납담당자 1인당 미정리 체납건수는 7만건을 초과하여 체납사건 1건당 물리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2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 지방세 체납담당자 인력현황 및 체납담당자 1인당 미정리 체납건수

(단위: 명, %, 건, 분)

구분	지방세 공무원 ('10년 8월 현재)			미정리 체납건수 ('09년기준)	체납 담당자당 미정리 체납건수	미정리 체납건당 투입가능 시간
	전체	체납 담당자	체납담당자 비중			
합계	9,152	2,173	23.7	43,595,711	20,062.5	5.98
서울	1,774	377	21.3	5,104,764	13,540.5	8.86
부산	661	107	16.2	3,749,319	35,040.4	3.42
대구	449	127	28.3	2,595,816	20,439.5	5.87
인천	449	119	26.5	2,868,379	24,104.0	4.98
광주	68	20	29.4	1,310,287	65,514.4	1.83
대전	288	92	31.9	1,080,835	11,748.2	10.21
울산	199	43	21.6	895,917	20,835.3	5.76
경기	1,661	306	18.4	12,283,546	40,142.3	2.99
강원	415	96	23.1	1,572,492	16,380.1	7.33
충북	348	113	32.5	1,139,424	10,083.4	11.90
충남	515	139	27.0	2,022,659	14,551.5	8.25
전북	483	158	32.7	1,473,852	9,328.2	12.86
전남	565	130	23.0	1,544,998	11,884.6	10.10
경북	917	273	29.8	2,580,288	9,451.6	12.70
경남	311	40	12.9	2,962,965	74,074.1	1.62
제주	49	33	67.3	410,170	12,429.4	9.65

출처: 지방세 공무원 현황은 홍재형 의원실 질의사항에 대한 지방세 운영과의 답변 자료에서 얻은 것임.

이상과 같이 미정리 체납건수와 체납징수업무 담당 인력 규모를 동시에 고려할 때,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미정리 체납사건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체납된 세

9) 세무공무원의 연간 근무시간을 2,000시간(=주당 40시간×50주)으로 가정하였다.

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보인다.

또한 체납징수업무 담당 인력의 부족 현상은 결손처분 이후의 결손처리된 체납사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느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국세청의 경우 결손처분을 행하더라도 2주마다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전산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6개월마다 재산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체납사건이 체납 징수망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당한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가능성은 아래의 〈표 Ⅱ-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Ⅱ-7〉은 2009년 기준 두 개의 지방자치단치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 불납결손을 처분한 규모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두 자치단체의 불납결손 처분액 중 22% 정도는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하면 체납자는 체납세금 이외에 가산세 · 가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체납 통지는 납세자 권익에도 도움이 된다.

〈표 Ⅱ-7〉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액 현황 사례

(단위: 억원, 건, %)

자치단체	전체 결손 처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 처분		소멸시효 완성 결손 비중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건수 비중
A	60.5	76,442	13.2	17,186	21.8	22.5
B	54.0	104,035	11.8	10,503	21.9	10.1

한편, 체납징수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은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체납징수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여 체납사건이 방치된다면 각종 벌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하면 체납자는 체납세금 이외에 가산세 · 가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 등으로 체납이 된 자에게는 신속하게 체납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납세자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 국세청 등 타 국가기관 및 타 부서와의 정보 공유 미흡

우리나라의 세제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있고, 지방세는 재차 도세와 시 · 군세로 구분된 상태이며 그에 따라 조세징수 업무도 상호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의 연관성이 밀접하여 국세청과의 정보교류가 절실하나, 납세자 정보 보호 차원에서 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에 한계가 있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는 크게 공무원 충원, 인력 재배치, 민간위탁 등의 3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다. 특히, 지방소득세 체납의 경우 국세청이나 일반인이 선압류 후 체납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등 지방세 조세채권을 손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정보교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납세자로부터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세무부서와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예: 건축과, 주택과, 주차관리과) 간에 체납업무 중복 문제 및 한정된 정보교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Ⅲ. 지방세 체납징수의 개선방안

본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특히 체납징수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면 차선책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개선방안은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업무를 통합하여 집행하는 기구를 설립 · 운영하자는 것이다. 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담당 인력의 확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처리해야 하는 지방세 체납건수에 비해 체납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체납징수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단순 체납자인 납세자의 권익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이다. 왜냐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연체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납세를 권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체납징수인력 보강은 궁극적으로 지방세의 징수율 제고를 통해 주민들의 불공평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는 크게 공무원 충원, 인력 재배치, 민간위탁 등의 3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① 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
② 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력재배치를 통해 체납 업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
③ 체납업무 중 일부 업무에 대해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

체납징수업무를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에는 미국식과 일본식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체납업무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위의 3가지 방안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세 체납업무 중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세무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력재배치 방안도 다른 업무(부과,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등)에 투입할 인력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납징수업무를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에는 미국식과 일본식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먼저, 미국식의 민간위탁은 민간회사에 특정 체납세금의 추심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추심능력 · 규정준수 여부 ·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입찰경쟁방식으로 민간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수탁회사에 체납 사실과 관련된 일정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수탁회사는 납세자 소재 파악, 체납액 완납 요청, 완납이 불가능한 경우 분할납부의 제안 등에 한정된 체납징수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식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 내에 콜센터를 두고 민간 체납업체 직원이 그 콜센터에 파견 나와서 납세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자율적인 납세를 권고하는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일부 도도부현에서는 체납징수에 경험이 많은 민간인을 비상근직원으로 채용하여 개별 방문을 통한 자율적인 납부권고, 체납공무원의 압류 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부여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식과 일본식 모두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공권력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업무, 즉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보조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액의 결정 및 징수, 압류, 세금의 면제, 분할납부에 대한 결정 등 징세 공무원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지 않으며, 체납사실의 통보, 재산의 조사, 납부 독려 등 사실행위에 국한하여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모두 체납 징수의 민간위탁이 납세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의 개인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의 체납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 유출 방지 및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민간부문이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체납징수에 대한 법률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세자 정보 보호를 비롯한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규정 등 세무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법규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체납징수 업무 중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단순 사실행위,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에 한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들에 비춰볼 때, 체납징수 업무 중 법률행위 또는 강제적 체납처분이 아닌 조회, 독촉, 방문, 전화, 안내장 송달, 재산조사, 납부 권고 등의 사실행위에 한해서는 지방정부의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행정기관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정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화 모색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업무를 통합하여 집행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은 규모가 작아 전문성 있는 체납징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관할 구역을 벗어난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한 명의 납세자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세금을 체납한 경우 개별 자치단체별로 동일 납세자의 거주지 파악, 소득 · 재산 조회 등의 체납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조사, 압류, 공매와 같은 체납처분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노하우를 축적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을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의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런 통합기구가 설립된다면, 지방세 체납업무에 한정하기 보다는 다른 세외수입 관련 체납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집행하는 기구가 설립되면 앞서 언급한 효과 이외의 장점도 존재한다. 국세청과의 정보교류 및 인적 교류도 보다 수월해져 정보 접근권 강화에 따른 체납업무의 효과성 제고와 담당인력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체납자를 중심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1인 체납계정'을 구축하면 예산 및 행정인력의 절감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복수의 자치단체 또는 동일 관내의 다수 부서의 체납사건(예: 주민세 체납,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에 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체납정리 등의 징수사무를 행하는 사무조합 · 광역연합을 설립한 후 체납사건의 이관통지만으로도 일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결과 보다 효과적인 체납처분을 위하여 복수의 시정촌, 또는 동일한 현 내의 전체 시정촌이 체납정리 등의 징수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조합이나 광역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체납정리 등의 징수사무를 행하는 사무조합 · 광역연합을 설립한 후 체납사건의 이관통지만으로도 일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Ⅳ. 결 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로서 지난 2001년(57.6%) 대비 약 5.7%p가 감소하였고, 2011년 기준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63.5%인 155개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부과액 대비 미정리 체납액 비율은 국세보다 높고, 일본의 지방세 미징수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2009년 기준 지방세 미징수액 규모는 동 연도의 재산세 부과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체납징수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부족 및 징수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다수의 체납 사건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납세자들에게 공평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지연된 체납처분으

지방세 체납 민간위탁 방안 및 통합 징수 방안은 서로 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로 인한 연체금의 누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

이에 본고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개선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제안은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차선책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 두 제안은 서로 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PF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박명호,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세 체납 3조원, 이대로 좋은가?』, 국회의원 박대해 주최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2011.

안종석 외,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정책토론리포트

■ 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 일 시 2011년 11월 23일(수) 14:00~17:00
- 장 소 코엑스 컨벤션 컨퍼런스룸(남) 308호
- 진행순서

14:00~14:20 등록
14:20~14:30 개회사
개회사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4:30~15:30 제1세션(308BC호)
• 사 회 자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Ⅰ-1 생애소득 경로 추정을 통한 횡단면 소득과 생애소득불평등도의 비교분석
• 발 표 자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자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Ⅰ-2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불평등 현황 및 요인분석
• 발 표 자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책임연구원
윤남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원
• 토 론 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30~15:30 제2세션(308A호)
• 사 회 자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Ⅱ-1 한국도시가구의 소비패턴과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 발 표 자 조정아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 토 론 자 민희철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Ⅱ-2 중·고령자의 은퇴와 소비지출간의 관계 분석
• 발 표 자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 론 자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5:30~15:50 중간 휴식

15:45~16:45 제3세션(308BC호)
• 사 회 자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Ⅲ-1 유형별 소득의 분포 변화와 소득 분배
• 발 표 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토 론 자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Ⅲ-2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의 효과 분석
• 발 표 자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자 김주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5:50~16:50 제4세션(308A호)
• 사 회 자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Ⅳ-1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 발 표 자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자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Ⅳ-2 자동차세제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 발 표 자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자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가나다 순)

17:00 폐회

---

* 본 원고는 2011년 11월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코엑스 컨벤션 컨퍼런스룸(남) 308호에서 개최한 「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Ⅰ-1주제 요약

생애소득 경로 추정을 통한 횡단면 소득과 생애 소득 불평등도의 비교분석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소득분포의 연령대별 특성분포를 분석해 봄으로써 생애소득 관점에서 소득계층별 생애소득 흐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흔히 연령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여 소득분배격차를 논의하곤 한다. 연령적 차이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생애주기효과(life-cycle effects)로 인한 교란요인이 존재하여 생애주기의 차이에 의한 부분도 불평등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각 연령대별로 소득백분위수를 추정하고 동일 백분위별로 모든 연령대에 걸쳐 연결하여 각 소득백분위별로 소득경로를 얻어 생애주기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증가하여 중년층(40~50대 전후)으로 이행할수록 소득백분위곡선이 우상향하였다가 50대 중후반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소득층의 소득경로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경로에 비해 소득확장기가 길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상승기가 소득하강기보다 길고, 이와 반대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확장기가 짧다. 이는 1년 단위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보다 생애에 걸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분배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은퇴기 이후의 연령층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분배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므로 노인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토론 요약

노인층 소득불평등 50대 중반부터 시작

류덕현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본 연구 주제의 중요성은 재정패널자료의 정합성 및 연구자료의 축적과 생애소득 불평등도의 분석을 통해 소득재분배 정책의 적합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 소득불평등도와 소득분위별 소득경로의 파악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불평등의 이해가 필요하며, 소득이동성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계층별, 연령대별 이동성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노인층 소득불평등은 장년층(50대 중반)에 이미 시작된 점과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것이다.

세부적인 논평으로, 첫째, 자료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하다. 분석에 앞서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동향조사와의 비교를 보다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표 4〉에서의 90백분위와 95백분위의 최대 소득 연령 추정결과를 보면, 2007년(42세, 41세)과 2008, 2009년(54세, 53세)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표 5〉의 가계동향조사의 결과와 상당히 다르다.

셋째로, 연령대별 소득불평등도의 패턴에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경상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으며, [그림 10]을 보면 경상소득 지니계수가 60대 이후 급증하는 것은 소득하락 추세가 큰 노인층 연령대의 소득변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산소득을 포함할 경우, 어느 정도 완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안을 하자면, 첫째, '생애소득'

보다는 '생애주기별 소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동학적 분석을 도입하여 시기별, 연령대별 소득이동성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 연령대별 소득불평등도의 정책적 시사점이 노인, 청년, 장년복지에 대한 연구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Ⅰ-2주제 요약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현황 및 요인분해

김경아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2010년도 재정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국내 노인 가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가구 특성에 따른 소득현황 및 소득불평등도, 지니변량계수분해를 통해서 각 가구의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든 노인가구 유형(독거노인가구, 부부노인가구, 노인을 포함한 확대가구)에서 다소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은 전체 노인가구의 1/3 수준이며 특히 여성 독거노인가구인 경우는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노인가구는 공·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30%를 차지하므로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완화와 노인가구 집단 내에서 취약노인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과 정부의 현금지원)은 소득불평등을 평등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불평등 완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적이전제도가 확대되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받는 혜택이 증가된다면 공적이전제도는 노인가구의 소득을 평등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노인가구가 지닌 특성과 노인가구별 소득원천의 구성비는 노인가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가구별 특성에 따른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토론 요약

소득원천 따른 불평등 유형 보여준 진전된 분석

이병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노인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노인층은 다른 근로 연령층에 비해 이질적인 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노인가구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주된 소득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주안을 두어 왔는데, 본 연구는 노인가구를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어떠한 소득원천에 의해서 소득불평등이 나타나는지 더욱 진전된 분석을 하고 있다. 주된 분석결과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공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사회보험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적 함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보완적인 제안하면, 첫째로, 노인가구 소득불평등을 소득원천별로

요인분해하기 이전에 가구유형별로 불평등을 요인분해한다면, 주된 정책대상인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소득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언제나 논란이 된다. 퇴직금 · 보험금 등의 기타소득, 부동산 · 주식의 매매차익인 자본이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을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소득과 일시적인 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비교하여 불평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분석결과는 정부지원금의 노인소득 불평등도 개선효과가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단독가구에서 크게 나타난다. 재정패널은 정부지원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전후 시기를 모두 조사하고 있으므로,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소득계층에서 크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면 흥미로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 연구와 다른 분석결과는 사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대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텐데, 그렇다면 취약노인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의 필요성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Ⅱ-1주제 요약

한국 도시가구의 소비패턴과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조정아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10년도에 가구별로 상세한 소비지출 내역을 전국 차원에서 조사한 한국조세연구원의 2010년도 제3차 재정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비패턴과 불평등 현상을 보이는 대상을 특정 대상이 아닌 도시가구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변수 중심적 방법이 아닌 관찰대상 중심적 잠재 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도시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도시가구의 전반적인 소비패턴과 소비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소득상위 10%의 월소비액은 하위 10%의 소비액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상위 10%의 월소득액은 하위 10%의 월소득액에 비해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하위 20% 계층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여성, 노인, 저학력, 무직 또는 낮은 직업지위가 대부분인 반면 상위 20% 계층의 특성은 남성, 중년, 고졸 이상 교육수준, 안정적 직업지위가 대부분이었다.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소비 양상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 결과 도시가구의 소비패턴은 6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1유형(주거비 중심형)과 3유형(보건의료비 중심형)은 저소득, 여성가구주, 노인,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된 반면, 2유형(문화생활 중심형), 5유형(교육비 중심형)은 고소득, 남성가구주, 중년층,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토론 요약

소비패턴 유형 분류한 주요한 연구

민희철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소비패턴의 유형을 분류한 점이 주요하다. 제안을 하자면, 첫째로, 분류의 정책적 목적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소비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에 있어,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 적용을 해 볼 수 있을지 정책적 함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하였다. 즉, 소비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로, 소득 대신 소비에 대해 불평등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경제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소비의 라이프사이클 가설에서 항상소득은 같지만, 횡단면 분석에 따라 연령별로 불평등도는 과장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소비가 스무딩하게 일어난다면 소득 대신 소비로 살펴본다면 그러한 의미를 보는 것이 맞지 않을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가구유형 분류에서 가전가구에 대한 지출부분이다. 내구재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동일한 유형의 가구라도 매년 지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동일한 가구가 그 해에 대한 가전가구 지출인 내구재 지출을 가지고 소비패턴을 분류하는 것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로, 소비패턴 지출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하우징에 대한 지출일 것이다. 논문에서 주거비라는 것은 주거에 따른 부수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겠다. 소비를 가지고 패턴을 나누어 볼 때, 빠져 있는 하우징 서비스는 지출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Ⅱ-2주제 요약

우리나라 중 · 고령자의 은퇴와 소비지출 간의 관계 분석

석상훈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 2-3차 자료를 활용하여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의 변화를 둘러싼 "은퇴-소비 퍼즐"이 우리나라에서도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구주의 은퇴에 따라 중 ·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이 약 14.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지출의 비목별로는 가구주의 은퇴는 교육비와 보건의료비 등 연령 관련 지출과 외식비, 의류 및 신발 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등 취업 관련 지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요약

가구 특성 및 연령별 소비지출 변동 구분 필요

신자은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은퇴-소비 퍼즐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여, 개인이 일생 동안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생애주기가설의 주장과 달리,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 소비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고찰하였다. 특히 인구고령화 단계의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전후 소비지출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재정패널 2

차, 3차 자료를 사용하였고, 임금근로자인 가구주(55~64세)군과 가구주가 무직(60~69세)인 은퇴자군을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은퇴 후 소비감소에 따른 총수요 변화, 소비항상성 추구와 근로자 세대의 연금가입 행태 등이다.

본 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지출의 결정 단위는 가구 또는 개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경우 소비지출 항상성 유지의 분명한 욕구가 있다. 그러나 가구의 경우, 가구 구성 형태, 구성원의 동태적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가 가구 총소비지출의 규모와 항목별 구성비에 영향을 준다. 은퇴 후 소비지출의 감소는 교육비의 감소와 크게 연관될 것이며, 연령에 따른 보건의료비 증가는 은퇴 후 소비지출 항목간의 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본의식주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지출 항목과 가구의 특성 변화 및 연령에 따라 변동되는 소비지출 항목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퇴 후 소비지출 감소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상실로 가용소득이 제한됨에 따른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은퇴 전후 소비지출 항상성 유지는, 근로기간 중 저축으로 형성된 자산이 은퇴 후 가용소득으로 효과적으로 청산되는 것을 전제한다. 은퇴 후 소득 중 연금 및 이전소득은 상실된 근로소득을 부분적으로만 대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은퇴자 세대의 은퇴 시점을 추적하여 은퇴 전의 자산이 소득으로 전환되기까지의 기간, 그리고 은퇴 이후 사망까지의 전 생애 소비지출 변화 추적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개인이 생애 소비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은퇴 시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근로기간과 은퇴 후 사망기간을 고려하여 근로기간중의 소비-저축 규모를 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시점의 불확실성이 크고, 은퇴가 비자발적으로 조기에 발생하게 될 경우 은퇴 후 소비지출 감소는 은퇴의 불확실성에 따른 조정으로서 불가피하다. 따라서, 은퇴 전후의 소비지출 변화는 은퇴 시점이 안정적인 직업군과 그렇지 못한 직업군, 그리고 자발적 은퇴군(가구소득이 충분히 많은 등의 이유로)과 비자발적 은퇴군 사이에 패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1주제 요약

유형별 소득의 분포 변화와 소득 분배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본 연구에서는 개별 소득 유형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지니계수의 분해기법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Cowell(2000, p. 131)이 설명하듯이 Gini계수의 분해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불평등지수 분해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ni계수가 아닌 SCV를 사용하였다.

물론 Shorrocks(1982)처럼 SCV를 분해할 수도 있다. 반면 본 연구는 특정 소득 유형이 변할 때 소득분배에 주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소득 유형별로 분해하는 방법은 정태적인 분석이므로 주어진 소득불평등이 어디에서 야기되는가를 알려 준다면 본 연구는 특정 유형의 소득이 변동하는 경우에 소득불평등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려 준다.

수식에 따르면 특정 소득이 변하는 경우에 SCV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기존의 소득 분포(분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소득의 변화로 평균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정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값이 음수로 나타난다(A).

둘째는, 특정소득의 변화와 기존 소득과의 관계에

따라 SCV가 변한다. 기존 고소득층의 특정 소득 증가가 높을수록 양수의 값을 가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B).

마지막은 특정소득 변화의 SCV로, 소득 변화의 분산이 클수록 SCV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C). 이는 특정소득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소득이 주는 SCV를 계산할 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득불평등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이 제공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재정패널'은 소득세 자료가 일부 포함된 자료이므로 소득자료가 다른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유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이자, 배당 및 임대소득) 및 이전소득(민간 및 사회보험)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자료의 연도는 2008년도 및 2009년도이며, 모름/무응답 및 matching이 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4,646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67%를 초과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의 편차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근로소득의 편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2009년도의 소득분배가 미약하지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ini계수를 보면 그 값이 2008년에는 0.4213에서 2009년에는 0.4228로 증가하고 있다. SCV는 2008년에는 0.6868에서 2009년에는 0.9141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 유형별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09년의 노동소득 변화가 전체적으로 소득분배를 0.243 정도 악화시켰다. 노동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비노동소득)이 소득분배를 개선(-0.0395)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 대비 2009년의 소득분배 악화는 대부분 노동소득에서 파생하고 있다. 또한 노동소득의 변화와 다른 소득의 변화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업소득의 변화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지만(0.095), 노동소득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었다. 반면 금융소득과 이전소득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소득유형별 분해

	dscv	A	B	C
노동소득	0.2431	-0.0827	-0.0359	0.3617
- 비노동	-0.0395	-0.0048	-0.2266	0.1919
사업소득	0.0952	-0.0224	-0.0230	0.1406
- 비사업	0.1084	-0.0688	-0.2546	0.4318
금융소득	-0.0049	-0.0135	-0.0167	0.0253
- 비금융	0.2085	-0.0736	-0.1626	0.4447
이전소득	-0.0354	0.0324	-0.1004	0.0455
- 비이전	0.2390	-0.1144	-0.0800	0.4334

토론 요약

SCV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 영향 분석

황수경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통상 소득분배 분해에 사용되는 지니계수나 MLD를 사용하는 대신, 변이제곱계수(SCV)를 이용하여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변화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Shorrocks의 정태적 분해를 동태적인 변화에 적용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득분해된 결과의 각 항목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분해된 세 가지 항목의 의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재정패널 자료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과대표집되어 있는데, 가중치를 이용하여 보정을 했어도 〈표 2〉에서 보듯이 여전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본의 대표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계조사와 비교하는 경우 가계조사에서 1인가구가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재정패널 조사에서도 1인가구를 제외하고 비교해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표 3〉과 〈표 4〉에서 표의 수치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치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5〉와 관련하여 소득분배지수의 변화를 지수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SCV에서의 변화(d=.23)는 다른 지수(지니계수, MLD)의 변화에 비해 거의 100배가 크다. 통상 SCV의 변화가 진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 의문점이 있다.

〈표 6〉에서는 각 소득유형별로 분해한 것이 아니라,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 등 짝을 지어 분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변화분의 합이 총변화(d=.23)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2008년, 2009년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나, 금융위기 등 경기적인 요인이 이 시기의 노동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시적인 변화를 분석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2주제 요약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의 효과 분석

송헌재 /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미시적 모의실험과 회귀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지니는 직·간접 효과, 즉 세수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세 경감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의 도입 목적에 비추어 동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일몰 시점 도래에 따른 동 제도의 폐지 방침에 대한 조세저항과 한국납세자연맹 등이 주장한 세부담의 형평성·불공평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1.4조원의 근로소득세 세수를 감소시켰으나, 과표양성화를 통해 사업소득세 세수가 2.3조원 증대되어, 총체적으로는 9천억원 정도의 세수 순증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 동 제도는 사업소득세의 과표양성화를 통해 0.23%p의 소득재분배 확대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서는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가 0.19%p만큼 축소되어, 전체적으로는 0.04%p의 순증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세 경감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급여액이 약 4억원 수준에 근접하는 초고소득층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세 경감 효과가 계속 확대됨으로써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부 고소득 급여 구간에서는 세경감 혜택이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관점에서 동 제도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주된 도입 목적이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과표양성화에 있었던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 요약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시 소득재분배 긍정 효과

김주영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의 동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하고 이 제도의 일몰 시점이 도래할 때 공과에 대한 과학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효과를 세수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세 경감 효과로 나누고 있다. 세수효과에서는 9천억원 정도의 세수순증 효과가 있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에서는 소폭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다. 소득세 경감 효과에서는 고소득 구간까지 근로소득세 경감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결론적으로 과표양성의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폐지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일단 양성화된 과표는 이 제도를 폐지를 하더라도 축소하거나 숨기기 어려운 비가역성이 있으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음(-)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나타내므로 폐지시 오히려 소득재분배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주된 목적이 세원확충이었는데 일몰 시점에 와서의 폐지 여부의 핵심 쟁점은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재분배로 부차적인 효과가 핵심 쟁점이 된 것이 다소 아이러니하다. 이는 세원확충의 경우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데 비해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자들이 주장하는 고소득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음의 효과는 직관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다. 직관적 측면으로 접근하자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저소득층에는 소득공제에 따른 상대적 혜택이 줄어든다.

(1) 근로소득자의 40%, 자영업자의 45%가 면세점 이하이다. 따라서 이들 저소득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p. 11의 [그림 3]에서 보면 거의 소득재분배의 혜택 효과가 없다. 1~3분위에서 작지만 소득공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

(2) 저소득층의 면세점 이상일지라도 상당한 비율의 카드소비를 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에게 더 쉬울지는 미지수이다.

(3) 특히, 방세나 가스비와 전기료 같은 공과금은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들은 신용카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이런 지출항목의 비중이 큰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소득의 더 큰 비중으로 카드소비를 하여야 공제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재미있는 부분은 p. 16의 (5)식으로부터의 소득감면을 위한 조건 중에서 $f'(w) < 0.2$ 이다. 신용카드로 쓰는 한계소비성향이 0.2 미만이면 소득공제액이 줄어들고 식(4)에서 최종판단을 해야 하지만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결국 이 숫자 0.2가 면세점 위의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저소득층의 신용카드 한계소비성향이 얼마나 높은지 특

히 고소득층에 비해 어떤지 분석해 본다면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결국 저소득층은 방세 등을 빼고 시작해야 하니까 고소득층보다 이 전체 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한계소비성향이 낮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2010년부터 그 비율을 25%로 올린 것은 더욱 소득 역진적일 수 있다.

p. 20의 〈표 8〉의 추정모델 3을 이용하여 소득세 경감이 최고에 이르는 급여수준을 계산해 보니 약 1억 5천만원이 나왔다. [그림 6]은 추정모델 4를 이용하여 제시한 것인데 4억원 정도가 피크를 이루는 급여수준으로 보인다. 1억 5천만원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급여이므로 저자들의 주장을 여전히 뒷받침하지만 차수에 따라서 최고점 급여구간이 민감할 수 있으니 총급여 변수의 차수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림에서 신뢰구간 밴드 처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확인 및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inverse mill's ratio 값을 추정변수에 추가한 것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에 따른 표본 선택성의 문제 때문인데, 그 다음 단계로 총급여에 따른 소득세 경감효과 추정을 할 때는 종속변수가 0일 때를 고려하여 Tobit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한 것 같다. 확인이 필요하다.
2)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한계세율이 바뀌면 바로 위 소득 수준의 개인은 집중적으로 더 사용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특정 소득수준의 사람들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현재 과세표준은 4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한계세율이 지나치게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것이 특정 소득분위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3) 추정을 위한 설명변수로 p. 17에서 제시된 변수 중에 〈표 8〉 결과표에서 보면 월평균 소비지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변수를 향후 추가하게 된다면 그냥 소비지출보다는 월세 여부를 구분하여 따로 변수항을 추가하면 좋겠다. 그 이유는 월세는 상당히 큰 지출이면서도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는 지출항목이기 때문이다.
4) 만일 반드시 존속을 시켜야 한다면 차선책을 구해야 할 때가 있다. 몇 차례에 걸쳐 연장이 되면서 계수값들이 변하였다. 만일 연장해야만 한다면 계수값의 변화와 관련하여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과거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5) 본 연구에는 관련 문헌연구가 없는데 외국의 비슷한 사례 분석 연구를 첨가시키면 좋겠다.

Ⅳ-1주제 요약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선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이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을 분석하고,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의 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해 봄으로써 제도 발전의 근간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조세재정패널 2,3차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 단위의 정책 집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가구 내 여성의 지위(선호)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 의사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평균 근로장려금은 77.9만원(2차), 79.4만원(3차)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장려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경제활동참가 확률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인해 가구 내 개인인 여성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서 노동참가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존의 논의 및 예상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결과였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내 여성은 경제활동참가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시도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발생 후의 충분한 성별 자료가 누적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토론 요약

가구 단위 노동공급모형 고려 필요

이정민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는 재정패널 2차, 3차 자료에서의 적은 표본수로 인한 자료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2차 조사의 경우, 근로장려금 정보가 부재하여 산정조건에 따라 계산하였고,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 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가 하나밖에 없었다. 종속변수가 경제활동참가 여부인데 설명변수에 맞벌이 더미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표본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에 적어도 한 명은 근로소득이 있다. 근로장려금의 크기는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변수들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수는 근로장려금과 경제활동참가 양자 모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통제된 변수는 18세 미만 아동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이는 누락변수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연령과 교육수준은 경제활동참가 회귀식에서 빠져 있다. 연령과 교육수준 변수를 구간형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정당성이 없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가구 단위 정책이므로 가구 단위의 노동공급모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급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 정도로 적다. 미국의 경우 20% 수준이다. 정확한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대규모 행정자료의 이용이 요구된다.

Ⅳ-2주제 요약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김승래 /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임병인 /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미 많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동차 관련 세제 기준을 CO_2 배출량이나 연비 등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기량(cc) 중심의 현행 자동차세제를 연비 또는 CO_2 배출량 등 친환경세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한국조세연구원의 2010년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에 따르면 첫째, 연비 및 CO_2 배출량 기준 개편방안은 모두 현행 자동차세제보다 부담이 더 커지고,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현행 자동차세의 변화율인 0.26%보다 더 커서 소득분배에는 다소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둘째, 연비 기준과 CO_2 배출량 기준 모두 중분류(7단계)의 세율구간의 개편방안이 세부담 증가 정도와 지니계수 변화율이 가장 낮아 소득분배 측면에서 더 유리한 개편임을 보여준다.

셋째, 연비 기준 개편방안의 지니계수는 미미하지만 CO_2 배출량 기준 개편 방안의 지니계수에 비해 더 커 연비 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이 CO_2 배출량 기준에 비하여 소득분배에 더욱 부정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향후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은 CO_2 배출량 기준의 7단계 세율구간으로의 개편이 형평성과 세부담 측면에서 검토 대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토론 요약

CO_2 배출량 기준 과세 바람직

이 영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본 연구는 배기량(cc) 중심의 현행 자동차세제를 연비 또는 CO_2 배출량 등 친환경세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가지 개편방안은 모두 현행 자동차세제보다 부담이 더 커지고,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현행 자동차세의 변화율인 0.26%보다 더 커서 소득분배에는 다소 부정적이다.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중분류(7단계)의 세율구간의 개편방안이 세부담 증가 정도와 지니계수 변화율이 가장 낮아 소득분배 측면에서 더 유리하며, 연비 기준 개편방안의 지니계수는 미미하지만 CO_2 배출량 기준 개편 방안의 지니계수에 비해 더 커 연비 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이 CO_2 배출량 기준에 비하여 소득분배에 더욱 부정적이다. 이에 저자는 CO_2 배출량 기준의 세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시의적절한 주제로 분석방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제시된 정책방안도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큰 이견이 있기 어려운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의견은 주로 데이터나 세부적인 것에 대한 것이다. [그림 1]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모든 자동차 모형에 대해서 산포도를 그린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주로 판매되는 1,000~2,000cc의 자동차를 보면 배기량과 연비, 배기량과 CO_2 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2〉에서 연료소비세를 1회만 과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Bonus-Malus System을 사용하여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하였다고 하였는데, 왜 전체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인지, 설계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1,000~ 2,000cc와 같이 많이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서 더 높은 가중치를 주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CO_2 배출량이 2008년 8월부터 표시되어서 기존 차량에 대한 누적자료가 없다고 하였는데, 실증분석에서 어떻게 CO_2 배출량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2쪽 하단에서 2년 단위로 세금구조를 변경하여 가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너무 자주 바꾸는 것보다 4년 뒤의 세금구조를 미리 제안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에서 현행 세율을 cc당 세액보다 평균 세금액수를 적는 것이 독자가 보기에 더 편할 것이다. 〈표 4〉와 [그림 4] 아래 표가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와 20쪽에서 기타소득은 가구 외부에서 받은 생활비, 학비가 아니라 비정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표 9〉에서 지니계수가 통계청의 발표치에 비하여 너무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재정패널의 대표성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로, 만약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over-sampling 했다면 가중치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10〉에서 평균 자동차 보유대수가 1.8로 너무 크게 나타난 점과 1분위의 자동차 평균 배기량 398cc는 너무 낮게 나타난 점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하다. CO_2 배출량 기준 과세가 바람직한 것은 미미한 소득재분배 효과보다는 공해배출량에 직접 과세하는 것으로 보다 큰 공해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KIPF

공공정책포럼

■ 제23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한국관광

제23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지속가능한 한국관광
- 일　　시　　2011년 11월 16일(수)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12F)
- 진행순서

07:30~08:00　조찬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08:05~08:45　주제 발표
이　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08:45~09:25　자유 토론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1년 11월 16일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12F)에서 「지속가능한 한국관광」을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23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야 함. 선진국에는 관광에 많은 인력이 고용되어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관광업이 저개발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지속가능한 한국관광' 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한국의 본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말씀을 기대함.

주제발표 요약

지속가능한 한국관광

이 참/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을 표현하기 위해 "Touch Korea"란 주제로 해외 이미지 광고를 27개 정도 제작했음. 한국에 오면 그 자체로 '영감(inspiration)'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주 돌하르방의 코를 만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 스키와 패션에 대한 홍보 등으로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관광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매력 그 자체라고 생각함. 문화, 자연, 역사, 음식, 의술, 패션 등의 매력을 좀 더 상품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만 하면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되는 것임. 그러나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임.

관광산업은 어떤 산업보다 지역균형발전 등의 시너지 효과가 우수함.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139개국 중 32위로, 관광경쟁력이 약한 이유는 무엇보다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다는 것인데, 국민 스스로 관광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임.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 외래관광객 유치현황을 보면 매년 백만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목표보다 50만명이 많은 880만명을 유치했고, 올해는 천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작년부터 구제역, 연평도 사건, 대지진 등 여러 가지 관광 악재로 인해 유치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으로 올해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음.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호재도 활용하였음.

천만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천만명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내년부터는 부가가치 형성에 노력할 것임. 이를 위해 우선은 관광공사의 기업 내부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라는 역할에서 종합서비스 제공자(total service provider)로서 서비스 업무 강화에 역량을 집중함.

관광의 철학으로 3관5림을 만들었음. 3관이라는 관심, 관찰, 관계라는 고객에 관한 마음과 5림이라는 떨림(creation), 끌림(attraction), 어울림(harmony), 울림(resonance), 몸부림(movement)의 에너지가 관광에서는 필요하다고 정하고, 이들 철학이 공유되도록 신축중인 산청의 동의보감 테마파크에 5림 센터를 만들고 있음.

그리고 기업문화로서 개개인의 창의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고, 공정한 분위기,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국의 매력을 한국의 내면적인 "에너지"로 봐서 자연과 어울림의 철학을 표현하기 위해 '기', '흥', '정'

을 마케팅의 요소로 보여주려고 함.

기업의 인센티브 관광처럼 고부가가치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을 하고 있음. 바오젠그룹이라는 중국 업체는 우수 세일즈피플들을 1년에 한번씩 6일 동안 외국에 보내주고 있음. 대부분의 타 기업이 해외에서 보상관광으로 회의를 3~4일 하고 관광을 하루 이틀 하는 반면에, 바오젠그룹은 회의는 3~4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관광과 쇼핑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국가 및 호주, 유럽의 국가에서도 이 기업의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 2009년에 이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해서 1만명이 방한을 했고, 여론조사 결과 이 중 2천여 명이 다른 어느 곳보다 한국이 좋았다는 평을 받았음. 특히 제주도가 여러 가지 숙박이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매력을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 이 그룹의 유치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체 등에도 홍보하고 있음. 그러나 큰 문제는 중국인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선입관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해 모든 관광객은 고객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공사 내부에서부터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리고 공사 앞의 안내소를 무인안내시스템으로 바꾸고, 지하에 있는 T2마당으로 방문하도록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음. 이 무인안내시스템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해,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 안내 등을 통해 식당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했음. 각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원, 대사관, 관공서에서 많은 주문을 하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한국의 명소 및 숙박, 음식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부가가치 개발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헬스케어 센터를 설치해 비디오 상담 등의 의료관광과 MICE(컨벤션) 등의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음.

그러나 관광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임. 보통 대도시의 경우는 10만개 이상의 객실이 있는 반면에 서울시에는 숙박시설이 2만 3천여 개에 불과함. 관광에 국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무엇보다 조 단위의 '관광인프라펀드'를 만들어야 함. 왜냐하면 서울에 최소 5만개의 객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9조원이 필요함. 펀드를 이용해 기존 건물 중에 좋은 자리에 위치하면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건물을 인수해서 비즈니스호텔로 만드는 등과 같은 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펀드의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음.

두 번째는 관광분야에서 창업 붐을 만들 필요가 있음.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관광벤처를 활성화해야 함. 관광 아이디어는 많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만 갖추면 되도록 지원할 수 있음.

세 번째로 관광 강대국이 되도록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관광문화 정착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많은 지원을 부탁함.

마지막으로 관광공사에서는 리프레시 휴가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연차휴가는 12일 정도지만 실질적 휴가는 4일 정도밖에 안 됨. 휴가를 통해 발상의 전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 한 곳에 머물면서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휴가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 위한 휴가를 만들도록 해야 함.

■ 자유 토론

권흠삼/한국석유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서울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세계적인 대회, 즉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우 해외 언론인들이 경주에 숙박시설을 마련하고는 대구-경주 간 길이 막혀서 취재를 못한 경우가 있었음. 또한 여수엑스포나 평창 동계올림픽 등도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에 숙박시설이 모자란다고 해서 무한정 만들지도 못할 것이고, 근교에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 한국관광공사가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함.

이 참/발표자

숙박시설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전국적으로 호텔 객실이 7만개밖에 없는데, 일본의 경우는 93만개의 객실이 있으며 내국인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음. 일본은 이렇게 많은 객실을 일본 내국민들이 관광을 함으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국내 근로인구 2천만명이 하루만 1박을 한다고 해도 2천만개의 수요가 나오게 됨. 즉,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나오므로 이런 맥락에서 2주 휴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금 4일의 휴가보다 10일이 길어지므로 1박하는 숙박의 수요가 생길 것임. 또한 특정한 모델,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옥' 호텔을 만들어 평생 한 번이라도 한국에 와서 묵어야 할 정도인 최고급 호텔 모델을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음. 여수나 평창 같은 경우는 호텔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마카오, 필리핀, 말레이시아처럼 수익 중심의 오픈 카지노 리조트나, 테마파크,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할 것임. 현재 도박을 위해 불법이나 해외원정에 57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중 절반만이라도 한국 내에서 쓸 수 있게 하면 대형 리조트 5개가 운영될 수 있음.

조원동/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이참 사장이 설명한 오픈 카지노에 대한 편익은 잘 알지만 감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은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의 혈통을 가진 이참 사장이 적격이므로 앞으로도 활발히 목소리를 크게 내 주시기를 바람.

이 참/발표자

새만금, 시화호 지역 등에 수익성 있게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관광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의 규모를 키워야 함. 즉, 외국인을 많이 오게 해서 국내의 시장을 형성해 키우게 하는 것이 방법일 것임. 가까운 중국의 경우 중국 내의 관광인구가 1년에 20억명에 달함. 중국 내 관광이나 한국까지 오는 관광이나 거리와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를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음. 단지 문제는 언어 불편이나 인프라 부족이므로 이를 해결한다면 우리의 시장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함. 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이나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작업을 진행중임.

팽정광/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관광에 대한 조사에서, 서울보다는 지방을 좀 다녀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크루즈열차인 '해랑'을 도입해 시작했음. 비록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숙박이 따로 필요 없어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문제는 저가의 기념품만 있어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기념품이나 특별한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관광과 쇼핑, 문화가 결합해야 하는데 고품격 열차여행에서 접할 수 있는 기념품들은 관광공사가 좀 해결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임.

이 참/발표자

기념품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정말 멋있고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가격임. 이들은 최소한 작은 것도 1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관광지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은 2~3천원 상당이며 조금만 비싸면 거의 팔리지 않는 상황임. 그러므로 결론은 관광벤처붐을 만들어 젊은이들의 참여와 지방에서도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가게, 지역의 특색 있는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관광물품 등 판매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이 문제임. 품격이 있고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어야 팔리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라도 고급물건이 팔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배용수/한국공항공사 부사장

항공기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불편한 점이 좌식으로 된 음식점이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많고, 특히 단체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임. 강원도의 경우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대만 송산공항과 연계해 관광객들이 오지만, 숙박시설이 없어서 하루 정도 원주나 주변에서 보내고 바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함. 중국과 관련해서는 비자발급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도로의 안내 표지판이 한글과 영어만 병기하도록 도로법에 되어 있어, 도로표지판도 필요에 따라 제3, 제4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가 힘써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 참/발표자

관광공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저는 통 크게 해보자고 제안하고 있음. 관광을 위해서는 15일 정도 무비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공항이나 도로의 표지판은 아날로그에서 스크린을 이용해 디지털화하면 국제규격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도 고객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충족시킬 수 있음. 관광공사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임.

박정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버켓리스트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제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하자는 이참 사장만큼 리더

십을 가진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올해 마지막 포럼에는 공공정책포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특히 민간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줄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을 모실 예정임. KDF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1-23

요 약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고용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버핏룰(Buffett Rule)을 제시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존 부자증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 버핏룰은 지난 8월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슈퍼부자에 대한 감세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짐

■ 포르투갈 정부는 '2012 예산안(Law Proposal 90/2011)'을 2011년 10월 17일에 의회에 제출함
- 이번 2012 예산안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 축소 및 세율인상, 간접세 세율인상, 가산세 규정 강화 등 주로 세수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 사항이 포함됨

■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2011년 10월 19일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부가세(surtax)(안)의 부과를 승인하였음

1. 미국 버핏룰과 관련된 논의

■ 오바마 대통령이 고용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5대 원칙 중 하나로 버핏룰(Buffett Rule)을 제시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존 부자증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강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1)]
- 재정수입 확충을 목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통해 감세법 폐지(최고세율 인상)와 고소득층의 항목별 공제한도 설정 등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혜택 감소와 세율인상을 제안해 왔음
- 버핏룰이라 불리는 이유는 지난 8월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슈퍼부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을 중단하라(Stop Coddling the Super-Rich)'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에 기인함

1) 야당인 공화당(Republican)은 고소득층의 증세를 통한 조세수입 확충 방안과 버핏룰에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음
-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상, 항목별 공제에 대한 한도설정, $1,000,000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는 등의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음
-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버핏룰에 대해서도 계급투쟁(class warfare)으로 묘사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

■ (워런 버핏의 컬럼) 2011년 8월 15일에 워런 버핏(Warren Buffett)[2]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컬럼에서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는 초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이들 회사에서 종사하는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세율보다 낮은 것을 지적하며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함

• 배당과 자본이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1,000,000 이상[3]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인상하고, 과세소득이 $10,000,000 이상[4]인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 (버핏룰)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9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고용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방안(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5]의 5가지 과세원칙[6] 중 다섯 번째 원칙으로 버핏룰(Buffett Rule)의 준수를 제시함

• 여기서 '버핏룰'이란 연소득이 $1,000,000 이상인 자가 중산층 가구(middle-class families)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오바마 행정부는 버핏룰이라는 대원칙만 제시하고 버핏룰이 어떠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음

– 버핏룰과 관련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경제회의(National Economic Council) 의장인 Gene Sperling은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버핏룰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있음

– Gen Sperling은 모든 고소득층이 중산층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버핏룰은 공평성 차원에서 연간 1백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소득 가구가 중산층보다 세금을 적게 내지 않도록 그들이 받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함[7]

• 단, '고용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지난 2월 발표한 예산안의 자본이득과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 방안을 포함시킴

– 장기자본이득과 배당에 대한 세율을 소득이 10%, 15%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납세자는 현행 0%의 세율을 10%까지 인상하고, 소득이 25%, 28%, 33%, 35%의 누진세율 구간에 있는 납세자는 현행 15%의 세율을 20%까지 인상함

– 전문투자자 등의 파트너십 이자수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2001년도 및 2003년도 감세법을 일부 폐지하여 누진세율을 현행 33%와 35%에서 36%와 39.6%로 인상함

– 유산세 세율을 35%에서 45%로 인상함

– 미국 일자리법 개정안에서 고소득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항목별공제 금액을 28%로 제한함

■ (고소득자에게 부가세 부과) 2011년 10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레이드(Harry Reid)는 오바마 행정

2) Warren E. Buffett, "Stop Coddling the Super-Rich," The New York Times, 2011.8.15
3) 워런 버핏의 컬럼에 따르면 2009년 연소득이 $1,000,000 이상인 가구는 236,883임
4) 워런 버핏의 컬럼에 따르면 2009년 연소득이 $10,000,000 이상인 가구는 8,274임
5) 조세동향 2011-20(2011.10.7) 참조
6) 재정적자 감소, 세율인하,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조세혜택의 폐지, 고용증대와 버핏룰(Buffett Rule) 준수의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함
7) 미국 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blog/2011/09/21/buffett-rule-facts-and-fictions

부가 발표한 일자리법 개정안에 연소득 $1,000,000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5.6%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부부합산(joint filers)의 경우 연소득 $1,000,000 이상 그리고 단일신고(single taxpayers)의 경우 연소득 $500,000 이상인 경우 부가세가 적용됨
- 이번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와 사전 합의를 거친 내용이며, 오바마 행정부도 본 방안에 동의함

■ 최근 미국에서 버핏룰과 관련된 논의나 분석에서 자주 인용하는 통계수치 중 미국 국세청에서 고소득자 상위 400명의 개인소득세를 분석한 자료 중 일부를 소개함[8)]

- 전체 납세자의 조정후총소득 금액(Adjusted Gross Incomes, 이하 AGI) 중 400명의 AGI 비중은 1992년 0.52%였으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면서 2006년 1.31%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400명의 AGI 중 자본이득 비중은 1992년 36.08%, 1999년 72.97%까지 증가하였으며 2004년 56.86%로 감소한 후 2006년 62.75%까지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400명의 AGI 중 낮은 세율 적용대상 자본이득[9)]의 비중은 1992년 32.97%, 1999년 70.25%까지 증가하였음.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2006년 64.19%로 조사되어 1992년과 비교해 그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400명의 평균 실효세율은 1992년 26.38%였으며 2003년 20% 미만으로 감소한 후 2006년 17.17%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 400명의 평균 실효세율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도수가 많은 실효세율 구간은 1992~1996년 25~30%, 1997~2000년, 2002년 20~25%, 2001년, 2003~2006년 15~20%로 조사되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표 1〉 미국의 최고소득자 400명의 개인소득세 분석 자료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납세자의 AGI 중 400명의 AGI의 비중	0.52	0.50	0.47	0.49	0.66	0.75	0.82	0.91	1.09	0.85	0.69	0.85	1.02	1.15	1.31
400명의 AGI 중 자본이득의 비중	36.08	48.01	52.26	44.10	63.40	66.76	72.91	72.97	71.83	66.20	61.57	60.59	56.86	58.37	62.75
400인의 AGI 중 낮은세율 적용대상 자본이득의 비중	32.97	42.61	50.65	40.51	58.85	62.98	70.25	67.55	64.01	56.89	55.30	61.08	62.92	59.99	64.19
400인의 평균 실효세율	26.38	29.35	28.57	29.93	27.81	24.16	22.02	22.23	22.29	22.85	22.88	19.53	18.16	18.23	17.17

자료: 미국 국세청(IRS), 통계자료실, The 400 Individual Incom Tax Returns Reporting the Highest Adjusted Gross Incomes Each Year, 1992~2006, http://www.irs.gov/pub/irs-soi/06intop400.pdf

8) 매년 소득세 신고서 중 조정된 총소득이 가장 높은 400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매년 동일인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9) 자본이득(capital gain) 중에서 자산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기자본이득(또는 손실)은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10%, 15%, 25%, 28%, 33%, 35%의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장기자본이득(또는 손실)은 1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됨

〈표 2〉 미국의 최고소득자 400명의 실효세율 (effective tax rate) 분포도

(단위: 명)

실효세율	과세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 이상 10% 미만	6	9	9	7	3	7	7	7	11	19	10	24	27	23	31
10% 이상 15% 미만	10	5	4	5	7	10	31	31	29	30	34	75	112	121	113
15% 이상 20% 미만	17	15	16	13	24	70	109	104	96	108	86	116	103	111	125
20% 이상 25% 미만	62	50	55	32	61	141	146	133	141	94	110	53	34	39	34
25% 이상 30% 미만	234	147	156	148	180	67	28	27	36	22	38	52	51	47	50
30% 이상 35% 미만	71	77	64	85	57	42	27	34	35	44	60	80	73	59	47
35% 이상	–	97	96	110	68	63	52	64	52	83	62	–	–	–	–

주: 1. 실효세율은 납세자가 실제 부담한 세액을 조정후총소득금액(AGI)으로 나눠서 계산된 수치를 의미함
2. 위 표는 실효세율을 7개의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해당된 인원 수를 표시함

자료: 미국 국세청(IRS), 통계자료실, The 40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Reporting the Highest Adjusted Gross Incomes Each Year, 1992~2006, http://www.irs.gov/pub/irs-soi/06intop400.pdf

〈표 3〉 소득 5분위별 세전소득의 비중 (pre-tax income share)

(단위: 명)

과세연도	하위 20%	하위 20~40%	40~60%	상위 20~40%	상위 20%	합계	상위 10%	상위 5%	상위 1%
1979	5.8	11.1	15.8	22.0	45.5	100.0	30.5	20.7	9.3
1980	5.7	11.0	15.7	22.1	45.8	100.0	30.6	20.7	9.1
1985	4.8	10.1	15.2	21.9	48.6	100.0	33.4	23.4	11.5
1990	4.6	10.0	15.1	21.6	49.5	100.0	34.4	24.3	12.1
1995	4.6	9.7	14.9	21.3	50.2	100.0	35.2	25.1	12.5
2000	4.0	8.6	13.5	19.6	54.8	100.0	40.6	30.7	17.8
2005	4.0	8.5	13.4	19.7	55.1	100.0	40.9	31.1	18.1
2006	3.9	8.3	13.2	19.5	55.7	100.0	41.7	31.9	18.8
2007	4.0	8.4	13.1	19.3	55.9	100.0	42.0	32.3	19.4

주: 위 표는 세전소득에 따라 전체 납세자를 5분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세전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미국 의회예산처(CBO), Average Federal Tax Rates and Income, by Income Category (1979~2007), http://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collections.cfm?collect=13

• 미국 의회예산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위 20% 계급의 세전소득[10]이 전체 세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 45.5%에서 2007년 55.9%로 증가하였음

– 특히 상위 1% 계급의 세전소득 비중이 1979년 9.3%에서 2007년 19.4%로 10%p 이상 증가함

2. 포르투갈 2012 예산안 의회 제출

■ 포르투갈 정부는 '2012 예산안(Law Proposal 90/2011)'을 2011년 10월 17일에 의회에 제출함

• 이번 2012 예산안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 축소 및 세율인상, 간접세 세율인상, 가산세 규정 강화 등 주로 세수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 사항이 포함됨

가. 법인세 분야

■ 12,500유로 이하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던 12.5%의 법인세 경감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과세표준 전체에 대

10) 여기서 세전소득이란 세전 현금수입(pretax cash income)과 그 외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을 합한 금액임. 세전 현금수입은 임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실현된 자본이득, 현금이체, 퇴직금,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등의 세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타 소득은 식료품 금액지원, 주택마련보조금과 에너지보조금 등과 같이 현물로 받는 혜택을 의미함.

해 25%의 일반세율이 적용됨

■ State surcharge의 과세구간이 변경되고 세율이 인상됨
- 현행 규정상 포르투갈 법인은 2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로 2.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state surcharge가 부과됨
- 2012 예산안에 따르면 state surcharge의 과세구간 및 세율이 변경되어 1.5백만~10백만유로의 소득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이 적용되고 10백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방침임
- 이는 2012 및 2013 회계연도에 한해 적용될 예정임

■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당해 회계연도 과세표준의 100%에서 75%로 인하된 반면,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한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현행 규정상 포르투갈 법인은 결손금 발생시 이후 회계연도 과세표준의 100%를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결손금 발생연도로부터 4년까지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허용됨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현행 100%였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75%로 인하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로부터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한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더불어 3개년도 연속 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법인에 요구됐던 재무제표 감사 요건이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폐지됨

■ 납세자가 보다 유리한 조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으로 비거주자에게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급시, 당해 지급액의 손금산입이 금지됨
- 비거주자에 대한 자금지급 행위가 유리한 조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임을 납세자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금지됨
  - 납세자가 당해 지급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 단, 납세자와 유리한 조세제도를 적용받는 자 또는 납세자와 법무대리인, 수탁자, 중개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음
- 또한 유리한 조세제도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포르투갈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21.5%에서 30%로 인상됨

■ 피지배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이하 CFC) 제도의 적용범위가 변경됨
- CFC 제도란 저세율 국가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익을 장기 유보하는 방식으로 거주지국의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의제하는 제도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i) 외국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내 지분참여자(resident participator) 또는 ii) 국내 지분참여자들이 자본을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자본을 10% 이상 보유하는 국내 지분참여자에 대해 CFC 제도가 적용됨
- 이번 예산안을 통해 내국법인이 법정대리인, 수탁자 또는 중개인을 통해 간접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도 CFC 제도가 적용됨
- 반면, CFC 적용대상 외국법인이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CFC 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됨

– 외국법인이 합리적 사유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 외국법인이 농업, 상업, 공업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개인소득세 분야

■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연대세(solidarity tax)가 부과되고, 일부 자본이득 및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됨

• 연 과세소득이 153,300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2.5%의 연대세가 새롭게 부과될 예정임

• 주식 및 증권의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적용되는 세율이 20%에서 21.5%로 인상됨

• 포르투갈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포르투갈 내에서 실현한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5%에서 16.5%로 인상됨

• 일반 개인소득세율 및 과세구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됨[11)]

■ 특정 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기한이 연장됨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category B(사업소득), category F(임대소득) 및 category G(자본소득)로부터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한도가 축소, 변경 또는 신설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점심식대비 공제(lunch allowance)의 공제한도가 하루당 6.41유로에서 5.55유로로 인하됨

• 건강보험료 프리미엄(health insurance premium)의 소득공제가 30%에서 10%로 축소됨

• 건강유지비(health expense)의 세액공제가 발생비용의 30%에서 10%로 축소되며, 금액 한도가 신설되어 총공제금액이 838.44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 주택자금대출로 인한 이자비용(housing loans expenses)의 세액공제가 발생비용의 30%에서 15%로 축소됨

– 현행 규정상 공제금액 한도인 591유로는 동일하게 유지됨

• 위자료의 세액공제는 지급액의 20%로 현행 규정이 유지되나, 공제 금액한도가 총 1,048.05유로에서 (수령자 1인당) 월 419.22유로로 변경됨

•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 세액공제는 2017년까지 점차 축소되어 2018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임

• 개인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5%를 한도로 개인소득세, 부동산세(real estate tax) 및 유통세(circulation tax)상 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새롭게 부여될 예정임

– 이 규정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며, 세부 내용은 향후 발표될 예정임

■ 각 과세구간별 세액공제 한도가 인하됨

• 현행 규정상 각 과세구간별로 설정되어 있는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각종 세액공제(건강유지비, 교육훈련비, 보육비, 위자료 세액공제 등)를 적용받을 수 있음

11) 포르투갈의 개인소득세율은 "〈표 4〉 포르투갈의 과세구간별 세율 및 세액공제 한도"를 참고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각 과세구간별 세액공제 한도가 아래 표와 같이 축소됨

〈표 4〉 포르투갈의 과세구간별 세율 및 세액공제 한도

과세구간	과세표준(유로)	세율(%)	세액공제 한도(유로)	
			2011년(현행)	2012년(예산안)
1	~4,898	11.5%	한도 없음	한도 없음
2	4,898~7,410	14%	〃	〃
3	7,410~18,375	24.5%	〃	1,250
4	18,375~42,259	35.5%	〃	1,200
5	42,259~61,244	38%	〃	1,150
6	61,244~66,045	41.5%	〃	1,100
7	66,045~153,300	43.5%	Min[과세소득×1.666%, 1,100유로]	0
8	153,300~	46.5%	1,100	0

자료: "State Budget 2012 Portugal", Price WaterhouseCoopers, October 2011

– 일정 한도 이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되던 과세구간 7 및 8에 대해 세액공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전액 허용되던 과세구간 3~6에 대해 1,100~1,250유로의 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됨

다. 간접세 분야

■ 생수, 유제품 음료 및 디저트, 탄산음료 등 현재 부가가치세 경감세율(6%) 적용대상인 일부 재화 및 용역이 중간세율(13%) 또는 표준세율(23%) 적용대상으로 전환됨

■ 전기 소비에 대한 소비세(excise duties)가 신설됨
• 최종 소비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생산자(producer), 매매업자(trader), 자가생산자(self-producer) 및 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 소비량 MWh당 0~1유로의 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임

■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주체(entities)에 적용되는 부동산세(real estate tax, RET) 및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RETT)의 세율이 각각 인상됨
• 포르투갈은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해 부동산 평가액을 바탕으로 매년 RET가 부과되며, 양도시에는 RETT가 부과됨
•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주체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 RET 및 RETT가 부과됨
• 이번 2012 예산안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주체에 대한 RET 세율은 5%에서 7.5%로 인상되었으며, RETT 세율은 8%에서 10%로 인상됨

■ 도시지역 부동산에 대한 RET의 최저 및 최고세율이 각각 0.1%씩 인상됨
• 신부동산법(new real estate code)에 따라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RET 세율은 현행 0.2~0.4%에서 0.3~0.5%로 인상되었으며
• 아직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RET 세율은 0.4~0.7%에서 0.5~0.8%로 인상됨

라. 기타

■ 가산세 한도가 인상되고 새로운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는 등 가산세 규정이 보다 엄격해짐
• 고의적 과실 및 부주의에 의한 과실에 대한 가산세 한도액이 각각 인상됨
– 고의적 과실에 대한 가산세 한도액은 현행 110,000유로에서 165,000유로로 인상되었으며
– 부주의에 의한 과실에 대한 가산세 한도액은 현행

30,000유로에서 45,000유로로 인상됨

- 이전가격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및 CFC 제도에 따른 요구자료의 지연 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됨

3. 프랑스 하원의 부가세(surtax) 승인

■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2011년 10월 19일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부가세(surtax)(안)의 부과를 승인하였음

- 부가세(안)는 현재 프랑스 상원(Senate)에 상정되었으며, 상원은 2011년 12월 20일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부가세는 2011년 과세연도(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됨

■ 부가세는 소득세의 최고구간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의 구간에 대해서 3%나 4%의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임

- 부가세율은 250,000유로부터 500,000유로 미만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3%가 부가되고, 500,000유로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4%를 부가함.

〈표 5〉 2011년 과세연도의 소득세율 구간

과세소득 구간 (euro)	소득세율(%)	부가세율(%)	총세율(%)
0~5,963	0	–	0
5,963~11,896	5.5	–	5.5
11,896~26,420	14	–	14
26,420~70,830	30	–	30
70,830~250,000	41	–	41
250,000~500,000	41	3	44
500,000 이상	41	4	45

동향 11-24

요 약

■ 금융위기 이후 유럽 7개국, 북미 2개국, 아시아 3개국(호주 포함) 등 12개국의 소득세 개정 동향을 정리한바, 다음과 같음

국가명	주요 소득세 개정 사항	비고
프랑스	• 일부 최고세율 구간에 한시적 추가세율 적용 – 25만~50만유로: 3%; 50만유로 초과: 4%	'11년도에 한해 적용
이탈리아	• 일부 최고세율 구간에 한시적 추가세율 적용 – 30만유로 초과: 3% • 국회의원 ·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한시적 추가세율 적용	'11~'13년에 한해 적용
스페인	• 최고세율 구간 신설 – 12만~17.5만유로: 44%; 17.5만유로 초과: 45%	기존 최고세율 41%
영국	• 최고세율 구간 신설: 15만파운드 초과 50%	과세구간 일부 조정
독일	• 세율 변동 없음	
그리스	• 누진구조(5단계 → 9단계 → 8단계) 확대, 최고세율 구간 신설(10만유로 초과: 40% → 45%), 면세점 인하	
네덜란드	• 세율 변동 없음	
미국	• 과세소득 구간 연장으로 인한 감세	물가연동제
캐나다	• 과세소득 구간 확대로 인한 감세	물가연동제
일본	• 세율체계 변동 없음	
중국	• 누진구조(9단계 → 7단계) 축소	세율변동 없음
호주	• 과세소득 구간 확대 및 중간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	

1. 프랑스

가. 재정상황

■ 재정수지는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총부채 규모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표 1〉 2008~2012년 프랑스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e[1]	2011p[2]	2012p[2]
재정수지	-3.4	-7.6	-7.1	-5.8	-4.9
총부채	68.3	79.0	82.4	84.8	86.6

주: 1) 추정치(estimate)
2) 예측치(projection)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나. 소득세제 개정현황

■ 프랑스의 소득세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소득세 과세구간에 걸친 0%에서 41%까지의 누진세율구조임
- 최고세율인 41%는 70,830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적용함
- 5,963유로에 미달하는 과세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하여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2011년 10월 19일에 25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가세(surtax)의 추가징수를 승인함
- 부가세는 소득세의 최고구간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의 구간에 대해서 3%나 4%의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임
  - 부가세율은 25만유로부터 50만유로 미만까지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3%가 부가되고, 50만유로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4%가 부가됨
- 부가세의 도입 목적은 고소득 납세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시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함임
- 현재, 부가세(안)는 현재 프랑스 상원(Senate)에 상정되었으며, 상원은 2011년 12월 20일에 도입을 결정할 예정임
- 부가세는 2011년 과세연도(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됨

〈표 2〉 2011년 프랑스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소득세율	부가세율	총세율
0~5,963	0	-	0
5,963~11,896	5.5	-	5.5
11,896~26,420	14	-	14
26,420~70,830	30	-	30
70,830~250,000	41	-	41
250,000~500,000	41	3	44
500,000 초과	41	4	45

■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장기보유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이 확대되고, 공제율이 인하됨
- 장기보유공제: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자본이득의 일정비율을 자본이득에서 공제함
- 개정된 공제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됨

〈표 3〉 프랑스 장기보유공제율 개정내역

보유기간	장기보유공제율	
	개정 전	개정 후
0~5년	없음	없음
6~15년	(보유연수-5)×10%	(보유연수 -5)×2%
16~17년	100%	20%+(보유연수-15)×2%
18~24년	100%	24%+(보유연수-17)×4%
25~30년	100%	52%+(보유연수-24)×8%

2. 이탈리아

가. 재정상황

■ 재정수지는 2009년에 -5.3%로 하락한 이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2008년 이후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짐

〈표 4〉 2008~2012년 이탈리아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2.7	-5.3	-4.5	-4.1	-3.2
총부채	106.3	116.1	119.0	120.6	120.3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나. 소득세제 개정현황

■ 이탈리아의 소득세율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소득세 과세구간에 걸친 23%에서 43%까지의 누진세율구조임

• 최고세율인 43%는 75,000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적용함

■ 이탈리아 의회는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하여 2011년 9월 14일에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가세(surtax)의 추가징수 및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인상 등을 포함한 긴축패키지(law decree 138/2011)를 승인하였음

■ 30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현행 과세구간의 세율에 3%p의 세율이 추가됨

• 국회의원의 경우, 9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현행 과세구간의 세율에 10%p의 세율이 추가되고, 15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현행 과세구간의 세율에 20%p의 세율이 추가됨

– 다만, 인상된 추가세율은 2011년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 공공부문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9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현행 과세구간의 세율에 5%p의 세율이 추가되고, 15만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현행 과세구간의 세율에 10%p의 세율이 추가됨

• 이 조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부담을 가중한 후 재정이 균형을 이루는 2013년 이후에는 원래의 세율로 환원될 예정임

〈표 5〉 2011년 이탈리아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소득세율	부가세율	총세율
0~15,000	23	-	23
15,001~28,000	27	-	27
28,001~55,000	38	-	38
55,001~75,000	41	-	41
75,001~300,000	43	-	43
300,001 이상	43	3	46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12.5%에서 20%로 인상된 단일세율을 적용함

• 내국법인이 이탈리아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12.5%에서 20%로 인상됨

– 인상된 세율은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조세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채권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12.5%에서 20%로 인상됨

– 다만, 이에 해당되는 채권에는 이탈리아, EU 및 이탈리아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 제외됨

– 인상된 세율은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3. 스페인

가. 재정상황

■ 스페인의 재정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1)]

• 재정수지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악화되는 추세임

• 재정수지 악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부문에 지원을 확대하면서 부채가 증가함

〈표 6〉 2008~2012년 스페인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4.2	-11.1	-9.2	-6.2	-5.1
총부채	39.8	53.3	60.1	67.5	69.7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나. 소득세율 체계

■ 스페인은 2011년 44%와 45%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함

• 2011년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12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44%의 세율로 과세하고 17.5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45%의 세율로 과세함

〈표 7〉 스페인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유로)

세율	과세소득 구간	
	2010년	2011년
24%	0~17,707.20	0~17,707.20
28%	17,707.21~33,007.20	17,707.21~33,007.20
37%	33,007.21~53,407.20	33,007.21~53,407.20
43%	53,407.21~	53,407.21~120,000.20
44%	해당사항 없음	120,000.21~175,000.20
45%	해당사항 없음	175,000.21~

자료: IBFD, http://www.ibfd.org

다. 기타

■ 2009년부터 부유세를 폐지하였으나 2011년 9월 부유세 부활을 위한 법을 시행한 결과 70만유로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0.2~2.5%의 세율로 부유세를 과세함[2)]

1)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 146

2) IBFD, http://www.ibfd.org

• 1991년 부유세가 도입된 이후 2008년부터 폐지되었으나, 긴축재정을 위해 세입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써 2011년 9월부터 재도입된 것임
- 폐지의 내용은 2008년 4월 18일 경기부양을 위한 패키지에 포함되었고, 부유세 폐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폐지 당시 부유세의 납세의무는 개인납세자로 60만유로를 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초과자산에 0.2~2.5%의 세율로 부과되었음
• 2011년과 2012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함

4. 영국

가. 재정상황

■ 재정수지는 2011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재정적자 규모 감축을 위해 세제혜택 축소, 세입확대, 공공지출 삭감,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다양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표 8〉 2008~2012년 영국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4.9	-10.3	-10.2	-8.5	-7.0
총부채	52.0	68.3	77.1	82.9	86.5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나. 소득세율 체계

■ 영국은 2009~2010 과세연도까지 최고세율이 40%이었으나, 2010~2011 과세연도부터 1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이 신설됨
• 이는 노동당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영국 국세청은 2010-2011 과세연도에 총납세자의 약 0.9%(27.5만명)가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이들의 납부세액이 총납부세액의 약 25.7%(41.4억파운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함[3)]
•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면서 기본세율 구간은 34,800파운드에서 37,400파운드로 상향조정됨
- 단, 2011~2012 과세연도부터 기본세율 구간이 다시 35,000파운드로 하향조정됨

〈표 9〉 영국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파운드)

세 율	과세소득 구간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기본세율(20%)	0~34,800	0~37,400	0~37a400	0~35,000
높은세율(40%)	34,800~	37,401~	37,401~150,000	35,001~150,000
추가세율(50%)	N/A	N/A	150,000~	a000~

자료: 영국 국세청(HMRC).

다. 기타

■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나 부유세와 같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 세제조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임

3) HMRC, "Income Tax Liabilities Statistics", 28 April 2011

5. 독일

가. 재정상황

■ 독일은 2011년부터 재정수지와 총부채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유럽국가 중 비교적 재정상황이 안정적인 독일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중임

〈표 10〉 2008~2012년 독일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1	-3.0	-3.3	-1.9	-1.1
총부채	66.3	73.4	83.2	82.3	81.0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나. 소득세율 체계

■ 독일의 소득세율 체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됨

• 2008~2010년의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 반영을 위해 매년 과세소득 구간이 소폭 인상되고, 2009 과세연도부터 최저세율이 15%에서 14%로 인하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표 11〉 독일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유로, %)

구분	2008년		2009년		2010~2011년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독신자	0~7,664	0	0~7,834	0	0~8,004	0
	7,665~52,151	15~42	7,835~52,551	14~42	8,005~52,881	14~42
	52,152~250,000	42	52,552~250,400	42	52,882~250,730	42
	250,001~	45	250,401~	45	250,731~	45
부부합산	0~15,329	0	0~15,669	0	0~16,009	0
	15,330~104,303	15~42	15,670~150,103	14~42	16,010~105,763	14~42
	104,304~500,000	42	150,104~500,800	42	105,764~501,460	42
	500,001~	45	500,801~	45	501,461~	45

자료: KPMG, "Germany Taxation of International Executives", 2009 (2008~2010년 세율)IBFD(2011년 세율)

다. 기타

■ 일부 정당, 고소득자 및 납세자연대에서 1997년에 폐지된 부유세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함

• 독일은 1992년부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하여 개인 1%, 법인 0.6%의 세율을 적용한 부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그러나 부유세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가 공평하지 못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1997년 1월 1일 부유세를 폐지함

• 2009년 이후 독일의 일부 정당, 고소득자 및 납세자연대에서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독일 정부의 재원확충 도모를 위해 소득세 인상 대신 부유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된 바 없음

6. 그리스

가. 재정상황[4)]

■ 그리스는 재정악화로 2010년 5월과 2011년 7월 IMF와 EU로부터 각각 1,100억유로와 1,09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강도 높은 긴축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음

〈표 12〉 2008~2010년 그리스의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
재정수지	-9.8	-15.4	-10.5
국가부채	110.7	127.1	142.8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KIPF 재정동향-제2권 제3호(통권 제7호)』, 2011년 8월, p. 29.

나. 소득세율 체계

■ 2008~2009년 그리스의 소득세는 5개 과세소득 구간에 대해 15~40%의 누진세율 체제로 운영됨

■ 세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과세소득 구간이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확장되고 최고세율 구간과 최고세율이 인상됨

- 2009년까지는 75,000유로 이상 소득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100,000유로 이상 소득에 대해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함
- 새로운 과세소득 구간의 적용으로 중위소득자와 상위소득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교적 소득이 낮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형평성이 제고됨

■ 2011년부터는 전년 대비 면세점이 인하되고 과세소득 구간이 8개 구간으로 축소되었으며 소득세율이 변경됨

- 그리스 의회는 소득세율 및 일부 소득공제 한도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Law 4024/2011)을 2011년 10월 25일에 승인함
- 2010년 기준 12,000유로였던 면세점이 5,000유로로 인하되고, 대부분의 과세소득 구간에서 소득세율이 인상됨
- 세수확충을 위한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소득세율의 개정은 2011년 발생소득에 대해 소급적용됨

〈표 13〉 그리스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GDP 대비, %)

2008~2009년			2010년		2011년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2008	2009				
0~10,500[1)]	0	0	0~12,000[1)]	0	0~5,000	0
10,501~12,000	15	15	12,001~16,000	18	5,001~12,000	10
12,001~30,000	27	25	16,001~22,000	24	12,001~16,000	18
30,001~75,000	37	35	22,001~26,000	26	16,001~26,000	25
75,001~	40	40	26,001~32,000	32	26,001~40,000	35
-	-	-	32,001~40,000	36	40,001~60,000	38
-	-	-	40,001~60,000	38	60,001~100,000	40
-	-	-	60,001~100,000	40	100,001	45
-	-	-	100,001~	45	-	-

주: 1) 2008~2009년에는 연간 총소득 중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자는 12,000유로까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소득세율의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연금소득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동일한 면세점(12,000유로)이 적용되어 소득원천에 대한 과세형평이 개선됨

자료: 그리스 투자청(http://www.investingreece.gov.gr) (2008~2009년 세율)KPMG, "Greece Taxation of International Executives", 2010 (2010년 세율); IBFD (2011년 세율)

4) 한국조세연구원, "KIPF 재정동향 – 제2권 제3호(통권 제7호)", 2011년 8월

다. 기타

■ 그리스는 긴축정책의 일환으로서 연대세(solidarity tax) 및 재산세(property tax)를 부과할 예정임[5)]

-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1~5%의 연대세가 부과될 예정임
-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1m²당 평균 4유로의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임

7. 네덜란드

가. 재정상황

■ 재정수지는 2009년에 −5.4%로 하락한 이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2008년 이후 총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나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총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음

〈표 14〉 2008~2012년 네덜란드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6	−5.4	−5.2	−3.8	−2.7
총부채	58.2	60.8	63.7	65.6	66.5

자료: Fiscal Monitor 2011 April

나. 소득세제 개정현황

■ 네덜란드의 소득세율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소득세 과세구간에 걸친 33%에서 52%까지의 누진세율구조임

- 최고세율인 52%는 55,694유로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 적용함

〈표 15〉 2011년 네덜란드의 소득세율 체계

(단위: 유로, %)

과세소득 구간	세율
0~18,628	33.00
18,628~33,436	41.95
33,436~55,694	42.00
55,694 이상	52.00

■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 정부의 총부채 규모가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재정적자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수 확대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8. 미국

가. 재정상황

■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됨[6)]

- 금융위기 이전 2000년대 초반 주식시장 붕괴 및 9·11테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수지가 악화됨

〈표 16〉 2008~2012년 미국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6.5	−12.7	−10.3	−9.9	−7.8
총부채	71.2	84.5	91.2	98.3	102.3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5) 자세한 내용은 『주요국의 조세동향 11-21호(2011. 10)』를 참고

6)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 30.

나. 소득세율 체계

■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율의 변동은 없었으며, 물가인상에 따라 매년 과세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함

• 미국은 매년 물가인상 조정에 따라 과세구간을 변경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과세소득 구간이 상향 조정됨

• 현행 소득세율은 2001년과 2003년 감세법의 적용으로 낮아졌으며, 감세법이 2012년까지 연장 적용될 예정임

– 2001년 조지부시 대통령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10%의 저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상위 4개의 세율을 낮춤

☞ 기존 15%, 28%, 31%, 36%와 39.6%의 5개 세율 구간이 10%, 15%, 25%, 28%, 33%와 35%의 6개 세율 구간으로 개정됨

– 2003년에 2001년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자본이득과 배당에 15% 낮은 세율을 일시적으로 부과함

– 2001년과 2003년 실시한 감세정책을 2012년까지 연장하였음

•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예산안 및 미국의 경제성장 및 재정적자 감축방안에서 고소득층에 적용하던 감세정책을 폐지하고 33%와 35%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함

– 2001년도 및 2003년도 감세법이 폐지되면 33%와 35%의 세율이 36%와 39.6%로 환원될 것임

〈표 17〉 미국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미국달러)

세율[1]	과세소득 구간[1]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	0~8,025	0~8,350	0~8,375	0~8,500
15%	8,026~32,550	8,351~33,950	8,376~34,000	8,501~34,500
25%	32,551~78,850	33,951~82,250	34,001~82,400	34,501~83,600
28%	78,851~164,550	82,251~171,550	82,401~171,850	83,601~174,400
33%	164,551~357,700	171,551~372,950	171,851~373,650	174,401~379,150
35%	357,701~	372,951~	373,651~	379,151~

주: 1) 세율은 장기자본이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세의 세율이며, 과세소득 구간은 단일신고를 기준으로 함.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단일신고(single),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ied widow or widower), 부부개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와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과세소득 구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자료: 미국 국세청(IRS) 및 위키피디아(wikipedia)

다. 기타

■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방안(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의 5가지 과세원칙 중 하나로 버핏룰(Buffett Rule)의 준수를 제시함

• 관련 내용은 조세동향 2011-23(2011. 11. 18) 참조

■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버핏룰이라는 대원칙만 제시하고 어떠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9. 캐나다

가. 재정상황

■ 캐나다는 현재 주요 7개국(G-7) 중에서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향후 2년간 G-7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됨

• 캐나다는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 및 연금의 구조적 개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흑자재정 및 G7 중 가장 낮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기록함[7)]

- 연방정부는 2015~2016년 재정수지를 42억달러로 집계하며 재정흑자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표 18〉 2008~2012년 캐나다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1	-4.9	-5.6	-3.9	-2.6
총부채	71.1	83.3	83.9	82.7	81.6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나. 소득세율 체계

■ 캐나다는 금융위기 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세율의 변동은 없었으며, 물가인상에 따라 매년 과세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

- 캐나다는 2000년 17%, 25%, 29%의 3개 세율구간을 두고 있었으나 2001년 16%, 22%, 26%, 29%의 4개 세율구간으로 개정함
- 2005년부터 16%의 낮은 세율을 15%로 낮춘 이후 2011년까지 15%, 22%, 26%, 29%의 세율을 유지함

〈표 19〉 캐나다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캐나다달러)

세율	과세표준 구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	0~37,885	0~40,726	0~40,970	0~41,544
22%	37,886~75,769	40,727~81,452	40,971~81,941	41,545~83,088
26%	75,770~123,184	81,453~126,264	81,942~127,021	83,089~128,800
29%	123,185~	126,265~	127,022~	128,801~

자료: 캐나다 국세청(CRA), http://www.cra-arc.gc.ca/tx/ndvdls/fq/txrts-py-eng.html

10. 일본

가. 재정상황

■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부채규모도 증가됨

- 일본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하여 2011년, 2012년 재정수지 전망이 악화됨
- 경제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부채규모 전망에 의하면 2012년까지 증가폭이 15%p를 상회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짐

〈표 20〉 2008~2012년 일본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4.2	-10.3	-9.6	-10.5	-9.1
총부채	195.0	216.3	220.4	233.2	236.7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나. 소득세율 체계

■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율 체계를 변경

7)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 46.

하지 않았음

• 가장 최근에 소득세율의 개정으로는 2007년 개정이 있었고, 당시 세율구간을 4단계에서 6단계로 변경시킴

〈표 21〉 일본의 소득세율 체계

과세소득 구간	세 율
195만엔 이하	5%
195만엔 초과~330만엔 이하	10%
330만엔 초과~695만엔 이하	20%
695만엔 초과~900만엔 이하	23%
900만엔 초과~1,800만엔 이하	33%
1,800만엔 초과	40%

자료: 일본 국세청

다. 기타

■ 일본의 부유세는 1950년에 도입되었다가 1953년에 폐지된 상태임

• 1949년 샤프에 의해서 부유세 도입이 권고됨

– 부유세는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함

– 당시 최고세율이 85%였는데, 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부유세가 권고됨

• 이에 따라 195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55%로 하는 동시에 0.5%에서 3%의 누진세율로 부유세가 도입됨

• 부유세는 1953년에 폐지되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65%로 인상됨

– 부유세의 세수총액이 높지 않고 자산의 포괄적인 파악 등 세무집행의 문제가 발생함

11. 중국

가. 재정상황

■ 중국은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확장 경제정책을 하고 있는 결과이며, 중국의 재정 상태는 중국의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건전한 편임[8)]

〈표 22〉 2008~2012년 중국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8	2009	2010e	2011p	2012p
재정수지	-0.4	-3.1	-2.6	-1.6	-0.7
총부채	17.0	17.7	17.0	16.5	15.7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나. 소득세율 체계

■ 중국의 현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체계는 9단계이며 2011년 9월부터 7단계로 축소됨

• 중국은 근로소득, 개인사업소득 등 소득별로 적용되는 소득세율 체계가 다름

8) 한 · 중 경제포럼, 2010년 12월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 23〉 중국의 근로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위안)

~2011. 8			2011. 9		
단계	월 과세소득	세율	단계	월 과세소득	세율
1	500 이하	5%	1	1,500 이하	3%
2	500 초과 2,000까지	10%	2	1,500 초과 4,500까지	10%
3	2,000 초과 5,000까지	15%	3	4,500 초과 9,000까지	20%
4	5,000 초과 20,000까지	20%	4	9,000 초과 35,000까지	25%
5	20,000 초과 40,000까지	25%	5	35,000 초과 55,000까지	30%
6	40,000 초과 60,000까지	30%	6	55,000 초과 80,000까지	35%
7	60,000 초과 80,000까지	35%	7	80,000 초과	45%
8	80,000 초과 100,000까지	40%			
9	100,000 초과	45%			

자료: 조세동향 11-15, 2011. 7

■ 2011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 납세자 및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고소득자는 더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12. 호주

가. 재정상황

■ 호주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재정흑자를 유지해 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08-2009 회계연도부터 재정흑자 달성에 실패하였지만, OECD 국가들 중 재정이 양호한 편임[9)]

나. 소득세율 체계

■ 호주의 소득세율 체계에 대한 개정은 매년 있음

• 2008년부터 2010년의 소득세율 체계는 5단계의 세율체계를 유지하되, 과세구간 및 세율에 있어서 조금씩 개정이 있었음

• 2009년 개정 및 2010년의 개정이 모두 감세조치였음

- 2009년의 개정은 각 단계별 과세구간을 확대시키는 감세조치였음
- 2010년의 개정도 일부 과세구간을 확대시키고 중·상위층의 소득세율을 낮추는(40%에서 38%로 인하) 감세조치였음
- 2011년의 개정도 일부 과세구간을 확대시키고 중·상위층의 소득세율을 낮추는(38%에서 37%로 인하) 감세조치였음

〈표 24〉 호주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

(단위: 호주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과세소득 구간	세율
0~6,000	0%	0~6,000	0%	0~6,000	0%	0~6,000	0%
6,001~30,000	15%	6,001~34,000	15%	6,001~35,000	15%	6,001~37,000	15%
30,001~75,000	30%	34,001~80,000	30%	35,001~80,000	30%	37,001~80,000	30%
75,001~150,000	40%	80,001~180,000	40%	80,001~180,000	38%	80,001~180,000	37%
150,001~	45%	180,001~	45%	180,001~	45%	180,001~	45%

자료: OECD Statistics

다. 기타

■ 2011년 7월 1일부터 홍수와 사이클론에 대한 재건부담금이 부과됨

• 과세소득에 추가하여 과세되면, 일정 과세소득 이상의 납세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5만~10만호주달러의 과세소득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0.5%를 추가과세함
- 10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을 가진 납세자

9)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최근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시사점』, 2011. 8, p. 130.

에게는 1%를 추가과세함

- 홍수와 사이클론에 대한 재건부담금은 2011년 과세연도(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동향 11-25

요 약

■ 금융위기 이후 유럽 8개국, 북미 1개국, 아시아 3개국(호주 포함) 등 12개국의 부가가치세 개정 동향을 정리한바, 다음과 같음

국가명	주요 소득세 개정 사항	비고
프랑스	• 금융위기 전후 세율 변동 없음	
이탈리아	• 2011년 9월 17일부터 부가가치세율 인상(20% → 21%)	경감세율 변동 없음
스페인	• 2010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 인상(16% → 18%)	경감세율도 인상
포르투갈	• 금융위기 이후 부가가치세율 두 차례 인상(20% → 21% → 23%)	중간세율과 경감세율도 인상됨
영국	• 금융위기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17.5% → 15% → 17.5%) 한 후 2011년부터 다시 인상(17.5% → 20%)	
스위스	•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율 인상(7.6% → 8%)	특별세율 및 경감세율도 인상
그리스	• 2010~2011년 동안 세 차례 세율 인상이 단행	경감세율 적용 대상 재화 · 용역 범위 축소
네덜란드	• 금융위기 전후 세율 변동 없음	
캐나다	•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부가가치세율은 변동 없이 5%로 유지	
일본	• 세율 인상의 논의는 있으나, 2008년 이후 변동 없음	증세논의 있음
중국	• 2009년 소비형부가가치세로 전환된 후 세율 변동 없음	감세논의 있음
호주	• 2000년 이후 세율 변동 없음	

1. 프랑스

■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세율과 경감세율의 복수세율체제를 도입하고 있음
- 경감세율은 두 개의 세율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초적 필수품에 대해서는 5.5%를 적용하고, 도서, 문화 등에 대해서는 2.1%를 적용함

■ 일반세율은 2000년 4월 1일 이후 19.6%로 계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경감세율은 1991년 7월 29일 이후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됨
- 일반세율의 적용대상 : 법에서 정한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5.5% 경감세율 적용대상 : 기초적 필수품으로 물, 의약품, 장애인 보조구, 호텔 등 숙박시설의 공급 등임
- 2.1% 경감세율 적용대상 : 사회보호법상 의약품, 적격한 도서, 특정한 문화공연의 공급

2.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의 복수세율체제로 이루어짐
- 경감세율은 두 개의 세율이 운영되고 있는데,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고, 특정 농산물, 신문 등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함

■ 일반세율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2011년 9월 17일 이후부터 종전 20%에서 1%가 인상된 21%를 적용하나 경감세율은 종전 세율을 계속 적용함
- 일반세율의 적용대상 : 법에서 정한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10% 경감세율 적용대상 : 살아 있는 가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 4% 경감세율 적용대상 : 우유, 버터 등 특정 농산물, 축산물, 신문 등

〈표 1〉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 분	~1997. 9. 30	1997. 10. 1~ 2011. 9. 16(변경 전)	2011. 9. 17~ (변경 후)
표준세율	19	20	21
경감세율	10	10	10
	4	4	4

3. 스페인

■ 스페인의 부가가치세(VAT)는 일반세율, 경감세율과 초경감세율(super-reduced rate)의 세율체제를 도입하고 있음
- 경감세율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음식(food), 주거(dwellings), 교통수단(transport), 관광(tourism) 등에 적용됨
- 초경감세율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식음료, 약물, 건설업과 신문 등 생활 필수품(basic necessities)에 적용됨

■ 2010년 7월 1일부터 표준세율을 2% 인상(16% → 18%)하고 경감세율을 1% 인상(7% → 8%)함
-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방안 중 하나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던 16%의 표준세율을 18%로 인상하고, 7%의 경감세율을 8%로 인상함
- 초경감세율은 4%로 변동 없이 유지됨

〈표 2〉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 분	2010. 6. 30까지 (변경 전)	2010. 7. 1부터 (변경 후)
표준세율	16	18
경감세율	7	8
초경감세율	4	4

자료: IBFD, http://online.ibfd.org/kbase/

4. 포르투갈

■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VAT)는 표준세율(standard rate),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과 경감세율(reduced rate)로 구성됨

• 경감세율은 생활필수품(basic necessities)에 적용됨

■ 재정결손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현행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p 인상(21% → 23%), 중간세율은 1%p 인상(12% → 13%)되고 경감세율은 1%p 인상(5% → 6%)되었음

• 2005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6.8%에 달하자 그 해 부가가치세율을 2%p 인상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 재정적자가 GDP의 3.9%와 2.6%로 감소하여 2008년 부가가치세율을 1%p 인하(21% → 20%)함[1)]

• 표준세율[2)]은 1986년 16%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재정적자 규모에 따라 17%, 19%, 20%, 21%, 23%의 세율로 계속 조정됨

〈표 3〉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8. 6. 30	2008. 7. 1 ~ 2010. 6. 30	2010. 7. 1 ~ 2010. 12. 31	2011. 1. 1~
표준세율	21	20	21	23
중간세율	12	12	13	13
경감세율	5	5	6	6

자료: IBFD, http://online.ibfd.org/kbase/

■ 포르투갈 행정부가 2011년 10월 17일 의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서 일부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함

• 즉, 생수, 유제품 음료 및 디저트, 탄산음료 등 현재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대상인 일부 재화 및 용역이 중간세율 또는 표준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될 것임[3)]

1) 조세동향 포르투갈 추가 긴축계획 의회 제출, 2010. 7. 13 참조

2) 참고로 1986년 이후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율 변동은 다음과 같음

기 간	세율(%)
1986. 1. 1 ~ 1988. 1. 30	16
1988. 1. 31 ~ 1992. 3. 23	17
1992. 3. 24 ~ 1994. 12. 31	16
1995. 1. 1 ~ 2002. 6. 4	17
2002. 6. 5 ~ 2005. 6. 30	19
2005. 7. 1 ~ 2008. 6. 30	21
2008. 7. 1 ~ 2010. 6. 30	20
2010.7. 1 ~ 2010. 12. 31	21
2011. 1. 1 ~	23

3) 조세동향 포르투갈 2012 예산안 의회 제출, 2011. 11. 18 참조

5. 영국

■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세율과 경감세율의 복수세율 체제를 도입하고 있음
- 경감세율은 국산 연료 또는 전력의 공급, 노인용 이동보조장비 설치 등 법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됨

■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17.5% → 15% → 17.5%)한 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이를 다시 인상(17.5% → 20%)함
- 2008년 12월 1일 이전 부가가치세율은 17.5%였음
- 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2008년 12월 1일부터 표준세율을 15%로 인하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이를 다시 17.5%로 회복시킴
-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11년 1월 4일부터 표준세율을 다시 20%로 인상함
- 경감세율(5%)은 1997년 이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표 4〉 영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 분	~2008. 11. 31	2008. 12. 1 ~ 2009. 12. 31	2010. 1. 1 ~ 2011. 1. 3	2011. 1. 4
표준세율	17.5	15	17.5	20
경감세율	5	5	5	5

6. 스위스

■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특별세율 및 경감세율로 이루어짐
- 특별세율은 숙박 서비스에 적용되며, 경감세율은 음식료, 농산물, 의료품, 신문, 잡지, 도서, 일부 문화서비스 등에 적용됨

■ 스위스는 공공지출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함
- 표준세율(7.6% → 8%), 특별세율(3.6% → 3.8%), 경감세율(2.4% → 2.5%) 모두 인상됨
-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8%는 유럽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표 5〉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 분	~2010. 12. 31 (변경 전)	2011. 1. 1~2017. 12. 31 (변경 후)
표준세율	7.6	8
특별세율	3.6	3.8
경감세율	2.4	2.5

7. 그리스

■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 및 특별경감세율로 이루어짐
- 경감세율은 유제품, 육류, 커피, 대중교통, 공연 등 법에 열거된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되며, 특별경감세율은 특정 도서, 신문 및 잡지, 숙박서비스 등에 적용됨

■ 그리스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수차례 개정함

- 2010년 3월과 7월에 각각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단행된 후, 2011년 1월 1일에 한차례 더 세율 인상이 단행됨
- 금융위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세율 인상폭은 표준세율 4%(19% → 23%), 경감세율은 4%(9% → 13%), 특별경감세율 2%(4.5% → 6.5%)로 인상폭이 매우 큼

〈표 6〉 그리스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단위: %)

구 분	~2010. 3. 14	2010. 3. 15 ~ 2010. 6. 30	2010. 7. 1 ~ 2010. 12. 31	2011. 1. 1~
표준세율	19	21	23	23
경감세율	9	10	11	13
특별경감세율	4.5	5	5.5	6.5

■ 경감세율에 적용되던 일부 재화 및 용역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율적용 대상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짐
- 2011년 9월 1일부터 일부 음식료에 대해 13%의 경감세율 대신 23%의 표준세율이 부과됨
  - 주스, 탄산수, 탄산음료 및 기타 생수를 제외한 무알콜 음료
  - 레스토랑 서비스 및 케이터링 서비스

8.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 경감세율 및 특별세율로 이루어짐
- 경감세율은 6%로 농산물, 의약품 등 기초적인 생필품에 대해서 적용되고, 특별세율은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농산품에 대해서 5.1%를 적용함

■ 일반세율은 2001년 1월 1일 이후 19%로 변동 없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경감세율, 특별세율도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됨
- 일반세율의 적용대상 : 법에서 정한 경감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
- 6% 경감세율 적용대상 : 농산품, 의약품, 물, 도서, 가스, 유류, 목재 등 재화와 도서의 대여, 특정 품목의 수선, 숙박시설의 제공 등과 같은 용역의 공급
- 5.1% 특별세율 적용대상 : 농업, 어업, 목재업, 원예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그 생산품

9. 캐나다

■ 캐나다의 부가가치세는 GST(Goods and Service Tax)와 주정부의 PST(Provincial Sales Tax)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7월 1일 이후 일부 주에서 GST와 PST를 통합한 HST(Harmonized Sales Tax)를 도입함
- 2010년 7월 1일부터 연방세와 주세의 통합세 체계인 HST 체계의 도입에 찬성한 참여지역과 GST와 PST의 별도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참여지역으로 구분됨
- HST의 세율은 주별로 5%, 12%, 13%, 15%임

■ 캐나다는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 연방세율의 변동 없이 5%의 세율이 유지됨
- 2006년 7월 1일 7%의 부가가치세율을 6%로 인하한 후 2008년 1월 1일부터 6%의 세율을 5%로 인하한 것임

10. 일본

■ 일본의 소비세율은 단일세율로,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변동은 없었음
- 소비세율은 4%이나, 소비세액의 25%가 지방소비세로서 부과되므로 지방소비세율을 감안하면 그 부담률은 5%가 됨
- 1997년 3월 31일까지의 세율은 3%였으나, 이후 4%로 인상되면서 현재까지 세율의 변동은 없음

– 4%로 인상될 때 지방소비세가 창설되어 1997년 4월 1일부터 세부담률이 5%가 됨

■ 일본은 최근에 지속적인 소비세율 인상의 논의가 있었음
- OECD는 2011년 4월 21일에 "대일심사보고서(対日審査報告書)"를 발표하면서 소비세율을 20% 정도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상황은 공적채무 잔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채무 잔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소비세 인상을 요구함
- IMF는 2011년 6월 1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소비세율은 현재의 5%에서 15%로 단계적인 인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함

–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하여 소비세의 인상이 가장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서술함
- 2011년 12월 5일 노다 총리는 '사회보장 개혁 본부' 회의에서 소비세의 단계적 인상을 언급함

– 2013년 10월에서 2014년 4월까지 소비세를 8% 수준으로 인상한 뒤, 2015년 4월까지 10%로 올리는 '2단계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정부 여당의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고 및 야당도 반대하는 입장임

11. 중국

■ 중국의 증치세는 2009년 1월부터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의 증치세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항목이기는 하지만, 용역부문은 증치세가 아닌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과세노무'는 증치세의 대상이 되는데 '과세노무'는 가공 · 수리 · 수선 용역 등 공업적 용역을 말함

– 영업세는 증치세가 부과되는 용역 외의 용역과 재화 중 유형자산을 제외한 무형자산과 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9년 1월 이전에 증치세는 생산형 부가가치세였음

■ 중국의 증치세율은 기본세율, 저세율로 이루어졌고 2009년 1월 이후 기간에 변동은 없었음
- 기본세율은 17%이며, 저세율은 13%임

– 다만, 재화나 과세용역을 판매하는 소규모납세자에 대하여는 3%의 징수율을 적용함
- 저세율은 양식, 식용식물유,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과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 및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품에 대하여 적용됨

■ 중국의 영업세는 원칙적으로 3%와 5%의 두 가지 세율을 적용함

- 교통 · 운송업, 건축업, 우편 · 전기 · 통신업, 문화 · 체육업은 3%의 세율을 적용하고, 금융 · 보험업, 서비스업,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는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오락업은 5~20%의 세율을 적용함

■ 상하이에 한정하여 증치세와 영업세를 통합하고 현재의 증치세율 외에도 11%와 6%의 증치세율을 도입하여 감세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2011년 1월 원자바오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임
- 상하이에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 영업세와 증치세를 통합하고, 소형 및 초소형기업의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치세와 영업세가 적용되는 기업을 축소하여 감세를 하고자 하고 있음

12. 호주

■ 호주의 소비세율은 단일세율로,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변동은 없었음

- 소비세율은 10%이며, 2000년 7월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세율의 변동은 없음

정책흐름

- 2012년 경제정책 방향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 국고채 만기도래 현황 및 관리 방안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 R&D 투자 및 성과 분석 결과

2012년 경제정책 방향

–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

* 본 자료는 2011년 12월 1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Ⅰ.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지속

-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

  * 세율 인하, 규제개혁, 공공기관과 노사관계 선진화, 녹색성장, 공생 발전, 경제영토 확장, 저출산 · 100세 시대 대책 등

◇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고용도 회복되고 있으나 체감경기 개선이 미흡하고 글로벌 재정위기로 장 · 단기 위험요인이 부각

1 (위기극복)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시장안정 조치 등을 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

* 재정확대 규모: '08~'10년간 66.7조원 ('08년 GDP 대비 6.5%)
* '08. 10~'09. 2월간 기준금리 총 325bp 인하, 원화유동성 공급 27.9조원 확대

- 그 결과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회복하고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

  * 성장률('09 → '10년, %): 韓 0.3 → 6.2, 美 △3.5 → 3.0, 獨 △5.1 → 3.6, 日 △6.3 → 4.0

- 다만, 최근 유로존 등 해외여건 악화로 성장둔화 지속 우려

2 (일자리 만들기)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단기 고용대책과 함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대책 추진

- 고용위축을 최소화하였고 '10년 이후 민간부문과 상용직을 중심으로 큰 폭의 고용회복세 지속

  * 취업자증감(만명, 전년동기비): ('08)14.5 ('09)△7.2 ('10)32.3 ('11. 1~10)40.7

- 그러나, 청년 · 임시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체감 고용사정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

3 (서민생활 안정)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등 친서민정책을 추진하고 일하는 복지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 가계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득 5분위배율 축소, 중산층 비중 확대('07년 63.9% → '10년 64.2%) 등 소득분배 지표가 다소 개선

  * 소득 5분위배율(3/4분기): ('07)5.52 ('08)5.45 ('09)5.48 ('10)5.23 ('11)5.19

  – 다만, 물가 · 전월세 상승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 지속

- 중소기업 적합업종 · 품목 선정, 동반성장지수 발

표 등 동반 성장과 공생발전 노력을 강화

– 대 · 중소기업, 수출 · 내수, 정규직 · 비정규직 간 격차는 여전한 상황

*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10년): (대기업)174 (중소기업)60 (수출기업)161 (내수기업)72

4 (경제체질 개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가계 · 기업 · 외환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 외환보유고 증가, 신용등급 상승, 재정적자 감소 등 대내외 경제지표의 건전성이 위기 이전보다 크게 향상

* 외환보유고(억달러): ('07)2,622 → ('11. 11)3,086, 단기외채(%): ('07)48.1 → ('11. 9)35.1

신용등급: (Fitch)A+ stable → positive('11. 11), (Moody's)A2 → A1('10. 4)

재정수지(GDP 대비, %): ('08)△1.5 ('09)△4.1 ('10)△1.1 ('11e)△0.8

– 규제개선 노력에 힘입어 국가경쟁력('08년 31위 → '11년 22위, IMD)

• 기업경영환경('08년 23위 → '11년 8위, WB) 개선

•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남아 있고 높은 대외의존도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는 과제

5 (대외협력과 미래대비) G20 정상회의, FTA 확대로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미래위험에도 대비

•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한–EU, 한–미 FTA를 체결 · 비준하여 경제영토 확장

•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재해 · 재난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의 기틀 마련

• 에너지 자주개발률이 크게 상승하고 UAE 원전수주 등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구축

* 자주개발률('07 → '10년, %): (석유.가스) 4.2 → 10.8, (6대 광물) 18.5 → 27.0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10년) 등 원조국으로 전환

• 서비스업 · 녹색산업 등이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저출산 · 고령화, 기후변화가 빠르게 현재화되고 있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Ⅱ. 향후 경제여건과 전망

1. 대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은 높은 수준의 변동성 지속

◇ 국제유가는 올해와 엇비슷한 수준에서 횡보

1 (세계경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이 3년 만에 재정위기를 맞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선진국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민간부문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책여력 제약으로 경기회복세 둔화

– 미국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주택 · 고용 부진과 저금리 · 재정악화로 정책대응 여력도 약화

– 유로지역은 국가채무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재정긴축 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

– 일본경제는 대지진 복구수요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나 엔화강세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중국 · 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선진국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동반 둔화 우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011년		2012년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4.0	3.8	4.0	3.4
미 국	1.5	1.7	1.8	2.0
유 로	1.6	1.6	1.1	0.2
일 본	△0.5	△0.3	2.3	2.0
중 국	9.5	9.3	9.0	8.5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11. 9월), OECD Economic Outlook('11. 11월)

** 세계경제 성장률은 구매력평가(PPP) 환율기준

2 (국제금융시장) 유럽 재정위기 양상에 따라 등락이 거듭되는 등 높은 변동성 지속

- 그리스 채무불이행 현실화와 함께 이탈리아 · 스페인 등의 재정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공조 노력의 가시화가 관건
-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될 소지

유럽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

주요국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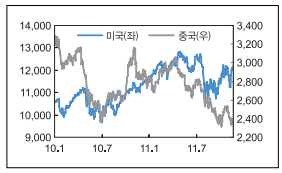

3 (국제 원자재가격) 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겠으나 중동정세 변화, 기상이변 등 공급측면의 불확실성 상존

- 국제유가는 선진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美 달러화 강세, 리비아 원유공급 재개 등 하락요인이 있으나
  - 신흥국 수요의 꾸준한 증가, 이란 등 중동정세 불안과 산유국의 전략적 공급조절 등 상승요인으로 인해 횡보 가능성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기관 (전망시점)	유종	'11년	'12년				
			1/4	2/4	3/4	4/4	연간
에경연('11. 10월)	Dubai	105.1	100.6	101.4	101.9	103.3	101.8

- 국제 곡물가격은 기상여건 호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수요가 함께 늘어 가격 변동은 미미할 전망

  * 곡물재고(백만톤, USDA, '11. 11월): ('10.下~'11.上)462.2 ('11.下~'12.上)458.3

2. 국내 경제여건

4 (고용 · 소득) 서비스업 · 상용직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 전환

* 제조업/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1. 6)11.8/43.6 (7)4.0/41.0 (8)△2.8/57.2 (9)△4.8/43.4 (10)△5.5/55.5

-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개선되고 실업률도 3% 내외로 안정되고 있으나 체감 고용사정은 어려운 상황
  - 맞벌이 가구와 자발적 시간제 근로가 늘어나는 취업패턴의 변화 흐름
-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5분위배율이 낮아지는 등 소득분배는 다소 개선

산업별 취업자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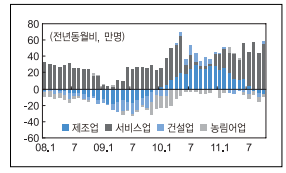

소득 5분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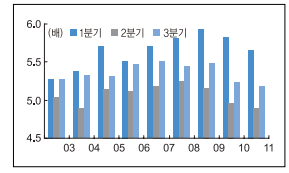

2 (내수 · 수출) 선진국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심리 불안 등으로 내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모습

* GDP(전년동기비, %): ('10. 3/4)4.4 (4/4)4.7 ('11. 1/4)4.2 (2/4)3.4 (3/4)3.5

-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건설투자 부진도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위축으로 설비투자는 크게 부진
- 수출은 중국 · 아세안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EU 지역은 감소세로 전환
- 경기동행 · 선행지수 하락, 재고 · 출하 순환의 경기둔화 국면 이동 등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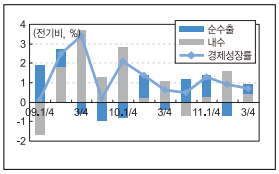

경기동행 · 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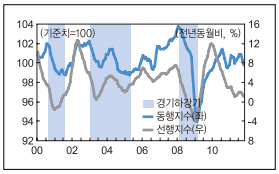

3 (물가 · 부동산)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지역별 편차와 구조 변화가 진행

- 유가상승세 둔화, 기상여건 개선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등 공급측 물가상승 요인은 완화
  - 다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
-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지방 간 차별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다소 둔화

  * 주택매매가격(전월비, %): ('11. 6)0.5 (7)0.4 (8)0.5 (9)0.5 (10)0.4 (11)0.4

  주택전세가격(전월비, %): ('11.6)0.7 (7)0.8 (8)1.1 (9)1.4 (10)0.9 (11)0.5

  - 1~2인 가구와 월세가구 비중의 지속적 상승으로 주택시장 구조 변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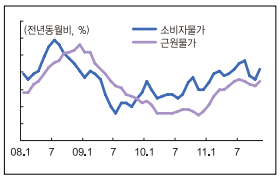

기대인플레이션과 개인서비스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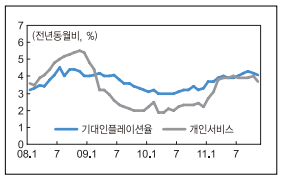

4 (금융시장) 주가 · 환율이 대외불안 요인 부침과 각국의 정책 대응 추이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는 모습

-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금융시장 흐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증폭

3. 2012년 경제전망

1 (고용) 경기회복세 둔화, 기저효과, 취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이 맞물려 취업자는 28만명 증가

- 고용률은 금년보다 0.1%p 개선된 59.1%, 실업률은 금년과 동일한 3.5% 예상

2 (성장) 세계경제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올해보다 낮은 3.7% 성장

  * 성장기여도 전망(%p): ('11년)내수 1.9, 순수출 1.9 → ('12년) 내수 2.9, 순수출 0.8

- 민간소비는 물가상승세 둔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3.1% 증가
-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세 둔화,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증가율이 3.3%로 크게 낮아질 전망
- 건설투자는 SOC 예산 감소 등으로 토목건설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주택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9% 증가

3 (물가)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수요압력도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는 3.2% 상승

4 (경상수지)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가

겠으나 올해보다 흑자폭이 줄어 연간 160억달러 흑자

•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연간 7.4% 증가하고 수입은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연간 8.4% 증가

2012년 경제전망

	2011년	2012년
• 취업자 증감	40만명	28만명
• 경제성장률	3.8%	3.7%
• 소비자물가	4.0%	3.2%
• 경상수지	250억불	160억불

참고 주요국의 최근 경제정책 동향

■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에 대응하여 미국 등 선진국은 유동성 확대 등 경기부양 노력 지속

•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그간의 긴축기조를 완화

1 (미국) 유동성 확대 등 경기부양 노력 지속

• 연준은 제로금리 수준을 '13년 중반까지 유지('11. 8월)하기로 하고 장기국채 비중을 늘리는 'Operation Twist' 실시('11. 9월)

– 글로벌 자금경색 완화 등을 위해 연준은 5개 중앙은행(ECB, BOJ 등)과 달러 스와프금리 인하(100 → 50bp) 등 공조에 합의(11. 30일)

• 美 행정부도 경기부양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이견 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감면 등 4,4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9. 8일)하였으나 공화당 반대로 부결(10. 11일)

2 (유럽) 경기부양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강화

•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 하고 있으며 재정위기국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정책 실시

* 커버드본드 직매입 재개(10월), 기준금리 50bp 인하(11~12월) 등

• 재정위기 해법과 관련하여 정책공조 노력이 지속* 되고 있으나 국내 반발 등으로 재정개혁 이행에 차질

*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 손실부담 비율 상향 등 종합대책 마련

(EU 정상회의, 10월), 재정규율 강화 등에 합의(獨佛 정상회의, 12월) 등

3 (일본) 대규모 추경*, 유동성 공급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엔화강세 완화 노력** 지속

* '11. 5월(4조엔), 7월(2조엔)에 2차례 추경예산을 집행한 데 이어 10월에 12조엔 규모의 3차 추경예산 승인

** 외환시장 개입,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1천억달러) 등

4 (신흥국) 선진국 경기둔화, 인플레이션 완화 등에 따라 그간의 긴축기조를 완화하여 기준금리 · 지급준비율 인하 등 시행

* 브라질은 '11.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bp 인하(12.5 → 11.0%)

*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11. 30일, 21.5 → 21.0%)

참고 2012년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정부

– KDI 공동으로 전문가(276명, 교수 · 연구원 · 기업인) 및 일반 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11. 23일~30일)

① 대내외 위험요인: 경제전문가들은 대외 위험요인

으로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을 선택(복수응답)

대외 위협요인

	국제금융 시장 불안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중국의 경착륙	국제원자재 가격불안
전문가	64.5%	27.2%	6.2%	2.2%

대내 위협요인

	고용불안	가계부채 경착륙	양극화현상	내수침체
전문가	42.0%	30.4%	30.4%	28.6%

② 2012년 중점과제: 일반국민은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 전문가는 「경제 ·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로 응답 (복수 응답)

	거시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강화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재정 건전성 강화	경제 · 사회 통합	미래 위험 대비	성장 기반 확충
일반국민	25.8%	8.9%	17.1%	17.5%	3.2%	9.9%	8.6%	2.0%
전문가	9.4%	8.3%	23.2%	12.7%	4.0%	27.2%	2.9%	8.3%

③ 일자리 창출 정책: 일반국민은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전문가는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으로 응답

	창업 활성화	기업투자 촉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직업 훈련	서비스 산업 육성
일반국민	8.7%	11.0%	15.7%	14.2%	16.7%	16.9%	10.9%
전문가	12.0%	24.3%	2.9%	20.7%	4.7%	13.0%	20.3%

④ 민생안정 정책: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생계비 부담 경감」, 「일자리창출 및 고용불안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

	생계비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복지전달 체계 효율화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생활안전 제고
일반국민	28.0%	26.8%	12.5%	17.6%	7.8%	7.2%
전문가	21.0%	61.2%	4.7%	12.0%	0.7%	0.0%

⑤ 경제 · 사회통합 정책: 일반국민은 「소득격차 완화」, 전문가는 「공정경쟁 및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응답

	소득격차 완화	공정경쟁 및 균등한 기회	사회적 약자 보호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세대간 갈등 해소	나눔 · 기부문화 확산
일반국민	31.0%	18.8%	13.7%	22.0%	6.5%	7.7%
전문가	29.3%	34.1%	4.3%	19.6%	8.7%	2.9%

Ⅲ. 2012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2012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토대로 공생발전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

1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경제의 체질 강화와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

-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상황별 대응방안을 지속 점검하고 가계 · 기업 · 금융 · 외환 · 공공부문의 체질을 강화
- 국내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업 · 중소기업 · 자영업 등 내수활력을 제고
- FTA 활용 극대화,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등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 준비
- 보육 · 녹색성장 등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가속

화하고 나눔 문화와 사회적 책임 등 사회자본 확충

2 경기여건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에 역점

- 수급안정, 경쟁촉진으로 생활물가 안정에 최대한 노력
-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시스템을 고용친화형으로 개편
- 교육 · 주거 · 의료 등 생계비를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
- 일하는 복지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맞춤형 복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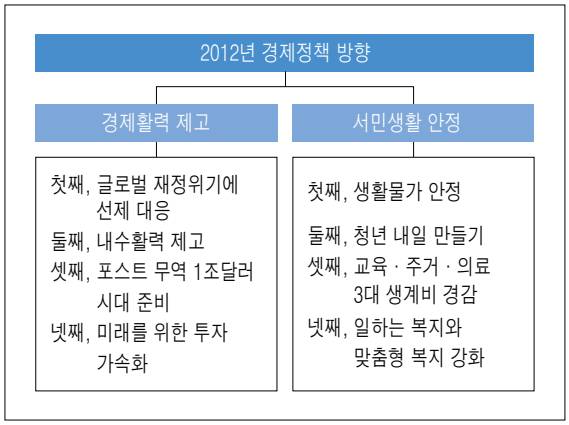

Ⅳ. 2012년 중점 추진과제

1 경제활력 제고

◇ 우리 경제가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부문별 취약요인 보완

-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서비스업 등 내수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기반을 확대

◇ 보육 · 녹색성장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서민 자산 형성 지원,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지속성장의 토대 강화

(1)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

1 (재정위기 대응)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

- 재정은 상반기 중 60% 내외를 집행하고 주요 사업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며 공기업 선투자를 유도
- 비상경제대책회의 ·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상황별 대응방안(contingency plan) 지속 점검
- 조기경보시스템의 예측력을 개선하고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체계화하여 경제 · 금융 리스크 등 거시건전성 점검을 강화

2 (부문별 취약요인 보완) 대외충격 발생시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여 사전에 시정

- (가계)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기 ·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16년말까지 30% 목표)하는 등 연착륙 유도
  -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는 등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직불형 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검토
  -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 한은 출자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하고 필요시 커버드본드 법제화 검토
- (기업)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Fast Track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신 · 기보 보증제도 개선
- (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

화하고 금융회사 임원 보수의 투명성을 제고

- (외환)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 투자자별 외국인 증권투자 계정을 주식 · 채권 등 투자대상별로 세분화

- (공공) '13년 중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규율 · 공기업 채무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 복지 등 非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경기조정재정수지 도입, 공공기관의 사업별 구분회계 · 반기별 결산 공시 등

(2) 내수활력 제고

1 (투자여건 개선)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하여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 강화

- 지난 10년간의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진단하여 인센티브 강화*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방안' 마련

  *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되었던 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국내기업으로 확대, 기존 지원방식 개선 등 검토('12, 上)

-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감면기간을 연장(4 → 5년)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투자유인 확대

  *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율 상향 조정(4 → 5%), BTL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병행

- 협동조합 설립 허용범위 확대, 공공발주사업 참여기준 완화*, 남해안 관광투자기반 확충 등 투자환경 개선

  * 3~10년간 시공실적 평가 →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완화

2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제 · 행정서비스 등 지원 강화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일몰기한 연장('12년말 → '15년말)
- 현지사업 철수 · 이전, 국내 통관, 국내 공장입지 선정 등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KOTRA에서 원스톱 지원

3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광 · 사업서비스 등 유망업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세제 · 인력 등 지원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쟁력 강화

- 보금자리지구 등 호텔부지 공급,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 전환 지원, 관련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확충
- 외국인전용 면세점 확대, 부가세환급 개선*, 외국교육기관 설립 심사절차 효율화 등으로 외국 관광객 · 교육기관 유치 확대

  * (현행) 출국항 내 보세구역에 국한 → (개선) 시내에도 환급창구 허용

- 방송광고 허용을 확대하고(먹는샘물 · 조제분유 등) 법률 · 회계 등 전문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서비스 선진화 유도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내 조세감면대상 확대*, 해외진출 금융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의 지원인프라 확충

  * (현행) 관광 · 물류 · R&D업 → (개선) 고용과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 추가

- R&D 투자, 통계 구축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4 (중소기업 · 자영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 자영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과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

을 마련하고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 도입 등 유망 중소기업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융합업종 창업규제 개선, 교육 · 컨설팅 민간참여 확대 등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지원

(3)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 준비

1 (FTA 활용기반 강화) FTA 체결을 확대하고 활용기반을 확충하여 FTA 효과를 극대화

- 협상 중인 FTA(터키 · 콜롬비아 등)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WTO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 노력에도 적극 참여
- 지역 FTA 활용센터를 확충하고 FTA 통합무역정보 ·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FTA 활용 인프라 개선

2 (FTA 취약부문 경쟁력 제고) 농어업 등 취약부문의 직접적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병행 · 추진

- 농어업 투자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
  * 농어업 인프라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생산기반시설 정비, 가축 품종 개량, 종묘 · 종자산업 육성 강화 등
-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약사간 M&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검토

3 (신흥시장 개척 지원)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위험부담을 완화하여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유도

-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마케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동물류센터 등 설립 지원
  * 코트라 해외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 개소): ('11년)111 → ('12년)119
  * 신흥시장 공동물류센터(개소): ('11년) 17 → ('12년) 20
- 아프리카 ·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11년 787달러 → '12년 862억달러)하여 해당지역 진출 리스크 완화

4 (중소기업 수출역량 확충) 금융 · 마케팅 등 수출애로 요인을 해소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선진국에 비해 우리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브랜드,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 한류 등을 활용한 후광마케팅 전개
  * 자가 브랜드 발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원, 한류 박람회 개최 등 추진
-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확대('11년 4. 2조원 → '12년 5.2조원)하고 대 · 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확산*
  * 대 · 중소기업 공동 해외마케팅 지원, 원부자재 공동구매 추진, 동반진출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각종 지원사업시 우대 등

(4) 미래를 위한 투자 가속화

1 (녹색성장 촉진) 신재생 에너지 사용, 해외진출 지원 등 녹색 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기후변화 등에 사전 대비

- '12년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바이오디젤 혼합사용제를 차질없이 시행
- 풍력발전 설치 규제 개선 검토, RPS 이행비용 전기요금 총괄 원가 반영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 수출금융 지원 · EDCF와의 연계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12년말까지 4대강 사업 완료
- 기후변화 대비와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공공부문 시차 출퇴근제 확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15년)을 위해 대상업체 범위, 거래소 지정 · 설치, 무상할당비율 설정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

2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 재정지원을 확대('11년 3.4 → '12년 3.9조원) 하고 생태계발전형 10대 프로젝트별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 공생발전형 SW 생태계를 구축*하고 SW 뱅크 설립 · 「IT 미래 비전 2020」 수립 등으로 IT/SW 산업 경쟁력 강화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공공 SI 시장 참여 제한 등

- R&D 예산의 50% 이상을 기초 · 원천분야에 투자하고 R&D 관리규정 등을 정비하여 창의적 연구풍토 조성

3 (미래변화에 선제 대비) 저출산 · 고령화, 자원확보 경쟁 등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 0~5세 보육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5세아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3~4세아에게도 연차별 확대

    * ('11년) 소득하위 70%, 월 17.7만원 → ('12년) 전 계층, 월 20만원

  - 0~2세아에 대한 보육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 자녀돌봄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퇴직 · 연금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등 저출산 · 100세 시대에 적극 대응
-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여 식량 등 미래 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

4 (서민 자산형성 지원) 서민 ·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예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개인 등, 10년 이상 적립, 소득공제 · 펀드 관련 보수 · 수수료 최소화 등 혜택 부여

5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금결제 우수기업의 인센티브를 확충

- 중소기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근절
- 공정거래 ·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확산시키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협약제도를 내실화*

  * 단가 조정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협약 평가기준 개선

6 (사회자본 확충)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신뢰와 배려에 토대를 둔 건강한 경제 · 사회기반 조성

- 자원봉사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기부연금신탁 등 다양한 기부 수단을 도입하는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수수료 비교공시 등으로 금융권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취약 지역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회공헌을 강화
- 고액체납자 공개범위 확대, 역외탈세 방지, 면세유 유통과정 투명화 등으로 세원 투명성 제고

7 (글로벌 위상 제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을 계기로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ODA 확대와 병행하여 민관협력 활성화, 선진국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MENA 지역 등에 대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확대
- G20 차원의 정책공조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고 '12년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협력 주도

2 서민생활 안정

◇ 생활물가 안정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서민생필품에 대한 수급안정과 경쟁촉진 노력 강화
◇ 청년창업 활성화 · 고졸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예산 확대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강화
◇ 교육 · 주거 · 의료 등 생계비를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

(1) 생활물가 안정

1 (생필품 가격안정) 안정적 생산여건 조성, 경쟁촉진 등을 통해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안정 유도

- 농산물 생산 예측기능 강화, 비축 · 계약재배물량 확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농축산물 수급기반 마련
- 가공식품의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하고 중소슈퍼의 공동 구매 · 도매물류를 활성화하는 등 경쟁을 촉진
- 한-미/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수입품목의 유통실태를 점검하여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가격 반영 유도
- 알뜰 주유소 운영과 공공기관 석유제품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시장을 분리하여 휴대폰 가격인하 유도

2 (서비스 요금 안정) 공공요금 안정기조 유지, 가격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요금 안정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여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
- 행정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하고 이동통신 맞춤형 요금제 하한 구간의 인하를 유도하여 가계통신비 경감
- 외식가격 지불액 표시기준을 정비하고 옥외가격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

3 (시장감시 강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제수단을 도입하고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여건 조성

- 불공정행위 과징금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가격인하 유도
  * (예시) 가격인하를 통해 위반행위 시정시 과징금을 경감하되 담합 등이 재적발될 경우 과징금 중과
- 한국판 'Consumer Reports'를 온라인으로 발간하여 상품간 비교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활동 지원 강화
- 담합 등 기업 위법행위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송지원 확대

4 (주택시장 정상화) 수요여건을 감안하여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 보금자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12년 15만호 수준)하고 민간자본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강구*
  * 민간사업자(SPC)가 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방안 등 검토
-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
  -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11. 12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
  -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2년간 부과 중지하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해제

(2) 청년 내일 만들기

1 (청년일자리와 열린고용사회 만들기) 청년창업 활성화 · 채용규모 확대, 능력에 기반한 열린 고용사회 구축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충

-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학적립금의 학내벤처기업 투자, 창업실패시 선별적 융자상환금조정제 도입 등 청년층 일자리 개척 지원
-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를 크게 늘리고(1만명 → 1.4만명), 중소기업 청년인턴(3.2만명 → 4만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제(1만명 → 1.2만명) 확대 시행
- 열린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고졸자 비중을 늘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고졸자 참여 확대**

  *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 ('11년) 3.4 → ('12년 목표) 20 – '12년 시행성과를 토대로 향후 5년 이내에 40%까지 확대 추진

  ** 청년인턴 고졸자 비중('11 → '12년, %): (중소기업) 37.5 → 50, (공공기관) 4 → 20

- 공공기관 입사 후 대학진학시 학비 지원, 고졸자도 승진 · 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일대우를 받도록 열린 승진제 정착 등 능력개발 지원
- 고졸취업자 대상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확대(500명 → 1,000명), 사내대학 · 재직자 특별전형시 직장내 경력 학점인정 등 선취업 후진학 체계 구축

2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고용인프라 강화) 일자리 예산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친화적 경제시스템 구축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연장 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확대(54만명 → 56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안정 노력 강화
- 50세 이상 새일터적응지원사업 신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공공기관 육아 휴직 대체충원제 개선 등 베이비부머 · 고령층 ·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지원시 고용우수기업 우대 등 고용유인 강화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노동시장 악화시 고용 유지지원금 확대, 취약계층 직업훈련 강화 등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
- 공공기관 직무성과급 · 유연근무제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화 등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교대제 개편 촉진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 유망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실용인재 양성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현장실습 훈련수당 세액공제 요건 완화, 직업 훈련용 시설 기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3) 교육 · 주거 · 의료 3대 생계비 경감

1 (교육) 대학등록금 · 자녀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

- 국가장학금(1.5조원) · 대학 자체노력(0.75조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 대학재정의 투명성 제고
-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수준과 대상자를 확충

2 (주거) 주거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서민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 전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대학생용 전세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11년 1천만호 → '12년 1만호)

  * 총급여요건 3천만원 → 5천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요건 폐지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시 장기 · 저리 ·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

  *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구입시 지원하되 12년중 일정한도 내에서 공급 (2,500만원 이하 서민층은 기 공급중)

** (지원기간)'11년말 → '12년말, (금리)4.7% → 4.2%, (지원대상)연소득 4천만원 → 5천만원 이하

3 (의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 축소

- 전 · 월세 상승이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 · 월세 가구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아동),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치매 · 중풍 노인 등), 출산진료비 지원금 인상(임산부) 등 추진

(4)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 강화

1 (일하는 복지 확충)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

-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 소득기준을 차상위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강화
-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과 지원액을 늘리고 탈수급자에 대한 이행급여를 확대하는 등 근로능력자의 탈수급을 촉진
- 영세사업장 ·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의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 우수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유도하고 탈수급률 등이 높은 우수 자활센터에 대해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

2 (맞춤형 복지 확대)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 가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추진

- 기초수급자 선정시 사용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휴폐업 등을 지원사유로 추가하여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
- 고령층의 기초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농지 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
- 주민센터를 통한 고용 · 복지 연계통합서비스 제공 검토, 유사 복지제도 통합 · 조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현
- 1~2인 가구 급증 등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 · 기초 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정책을 재검토

참고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

구분	주요내용
아동여성	• 5세아 누리과정 도입(전계층에 보육료 등 지원, 3~4세아는 연차별 도입) •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 확대 • 어린이집 정보공개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확충(1만명 → 1.3만명) • 자녀돌봄 서비스 품질 제고 (교육과정 개발, 사업체 등록제 등) •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 •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15천원 → 5천원) • 임신 · 출산진료비 지원확대(40만원 → 50만원)
청년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현장실습 훈련수당 세액공제 요건 완화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국고지원 3천억원 → 1.5조원) • 청년전용 창업자금(2천억원) 신설 • 대학적립금을 활용한 학내벤처기업 투자 유도 • 공공기관 신규채용(1만명 → 1.4만명) 및 고졸자 비중 확대 (3.4% → 20%) • 청년인턴 확대(공공기관 1만명 → 1.2만명, 중소기업 3.2만명 → 4만명) • 청년인턴 고졸자 채용비중 확대(공공기관: 4% → 20%, 중소기업: 37.5% → 50%)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서민 주거지원 강화 –

* 본 자료는 2011년 12월 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부과 중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과도한 시장규제 철폐

◈ 대학생 전세임대 1만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임대 1.5만호 등 저소득 ·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연소득 4천만원 → 5천만원 이하), 금리인하(4.7% → 4.2%) 등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전세수요도 완화

◈ 지방 아파트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하고, 장기 미사용 공공시설용지를 실수요에 맞게 용도 변경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 P-CBO 추가발행, 공모형 PF 정상화 등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12.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주택 구매심리 위축,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주택 · 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도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 전월세시장의 경우, 내년 초 봄 이사철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 특히, 이번 대책은 시장 전문가, 관련업계, 대학생 등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와 쪽방 · 재건축 단지 · 대학가 등 다양한 현장 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다.

대책 주요내용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주택건설 ·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월세가구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하였다.

자료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Ⅰ. 주택 · 건설시장 동향 및 평가

1. 주택 · 건설시장 동향

■ 건설투자가 '10.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감소

• SOC 투자 감소 등으로 공공부문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간부문도 어려운 상황

GDP 및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전년동기 대비, %)

구분	'08년	'09년	'10년	'10년				'11년		
				1/4	2/4	3/4	4/4	1/4	2/4	3/4
GDP	2.3	0.3	6.2	8.5	7.5	4.4	4.7	4.2	3.4	3.5
건설수주	△7.6	5.0	△18.7	△1.6	△6.7	△3.6	△40.2	△12.8	△3.3	0.9
건설투자	△2.8	3.4	△1.4	4.3	△2.3	△3.1	△2.9	△11.9	△6.8	△4.6

(GDP · 건설투자 : 韓銀, 불변가격/건설수주 : 통계청, 경상가격)

■ 주택시장은 지표상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침체 지속

• 주택가격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구매심리가 위축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주택거래량은 크게 위축되었던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고 있으나 저가 · 소형 위주로 거래

• 지방광역시의 경우, 장기침체 이후 '09.하반기부터 가격 · 거래량이 동반상승하고 있으나, 최근 다소 둔화 추세

주택 매매가격(전월비) 및 아파트거래량 (3년동월 평균비) 증감률(%)

구 분		'10년	'11.1~10	'11.6	7월	8월	9월	10월	11월
건설수주	수도권	△1.7	0.7	0.0	△0.1	0.0	0.0	0.0	△0.1
	지방광역시	6.4	13.5	1.2	1.1	1.1	1.1	0.9	1.0
아파트거래	수도권	△30.0	10.1	△13.8	△11.9	12.0	16.2	25.5	-
	지방광역시	20.3	20.4	35.4	22.5	11.0	14.6	1.2	-

*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매매가(전주비, %) : (10.24)△0.10 → (11. 21) △0.39 → (11.28)△0.44

• 주택건설은 다세대 · 연립 ·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중심 증가세이나, 아파트 건설 인허가 비중은 지속 감소

* 건설인허가 : ('09) 38.2만호(아파트비중 78%) → ('10)38.7 (72%) → ('11 .1~10)35.9(58%)

• 신규 분양시장은 부산 · 세종시 등 지방에서는 다소 활발하나, 수도권은 분양률이 저조하며 미분양('11. 10월 2.7만호) 적체도 지속

■ 전세가격은 9월말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 불안요인 상존

* 수도권 전세가격(전월비, %) : (9월)1.6 → (10월)0.9 → (11월)0.1

* 지방광역시(전월비, %) : (9월)1.1 → (10월)0.9 → (11월)1.0

2. 평가 및 전망

■ 건설투자 · 수주 감소 등으로 건설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 감소하는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주택공급기반도 약화

구 분	건설업					全산업
	'08년	'09년	'10년	'11.1/4	'11.2/4	'11.2/4
매출액 증가율(%)	19.6	7.7	3.6	1.3	△2.8	13.1
매출액영업이익률(%)	5.8	5.2	5.0	3.8	2.3	5.5

(연도별 자료: 대한건설협회 / 분기별 자료: 한은)

*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사 중 24개사 구조조정 중(워크아웃 · 신청15, 법정관리9)

• 원도급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하도급 · 자재 · 장비 · 엔지니어링 업체 · 건설근로자 등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전문공제조합 대지급금(억원) : ('08)5641 → ('09)994 → ('10)1,600 → ('11p)2,390

*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수주('09년 6조 → '10년 4조), 건설감리 수주(2.0조 → 0.9조)

– 삼안('10년 수주 2위) 워크아웃, 청석(22위) 사실상 폐업 등

• 주택업계는 PF 자금조달 곤란 ·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추진 애로

* 수도권의 경우 업체보유 택지는 많으나 신규사업 기피

■ 주택거래 위축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주거이동 제약과 가계 운용에 애로 발생

• 전셋값이 상승하여 전월세 거주비중이 높은 대학생 등 20~30대의 주거비 부담 가중

* 임차가구 비율 : 20대 84.3%, 30대 59.5%(전체평균 43.2%)

* 서울지역 대학의 지방출신 학생비율은 45%이나, 기숙사 수용률은 8.9%에 불과('10)

■ 향후에도 세계경제 불확실성,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주택 · 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

•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사 부실화가 지속될 경우 내수경기와 고용 위축, 금융 부실화 등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 ('09) 0.6%p → ('10) △0.3%p

■ 주택 · 건설시장 정상화와 내수경기 진작 등을 위한 대책 마련과 내년 봄 이사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Ⅱ. 향후 대응방향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원활한 주택거래 · 공급기반 마련

• 건설업계 구조조정 지원과 경영정상화 방안도 적극 강구

◇ 실수요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가구 및 저소득 대학생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

• 도시 내 소형 ·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

Ⅲ.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1.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부동산시장 과열('02~'07)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 시장상황을 고려시 이러한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폭 정비 필요

1 분양가상한제('07 재도입) 폐지 지속 추진

•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법 개정(국회 계류중)을 지속 추진하되,우선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비현실적인 규제를 제거

* 진입도로 등 설치비를 택지가산비 인정, 추가선택품목 확대 등 기조치(11. 14)

** 택지가산비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등 추가시행 검토

2 투기과열지구 해제('02 재도입, 강남3구 지정)

•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거래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

*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청산시(7~9년)까지 금지되어 사실상 거래제한

** 전매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3~5년(다른 지역 1~3년)

※ 투기지역(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 적용)은 현행 유지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12년중 정부안 마련 · 국회 제출)

* 중과세율 : 3주택자 이상(60%세율, '05년 시행), 2주택자(50%세율, '07년 시행)

☞ 현재는 '12년말까지 취득 · 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

4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06 도입, 초과이익의 10~50%)을 2년간 부과 중지

* 개발부담금도 부동산 경기상황을 감안, '98년 등 2차례 부과를 중지한 사례 있음

5 청약제도가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

• 비수도권의 경우, 시 · 군 단위로 제한된 청약가능 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당첨은 당해 시 · 군 거주자 우선)

• 미분양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 순차분양을 1~2순위 동시분양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당첨은 1순위 우선)

2.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1 택지지구 등의 장기간 미사용용지* 또는 대도시 주변 개발가능지(GB해제지 포함)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 추진

*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 · 관공서 부지 등으로 계획되었으나, 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져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용지

** 주민편의시설, 업무시설,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비즈니스호텔 등

⇒ 국토부, 교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실태조사 등을 거쳐 추진방안 마련

2 토지거래 및 택지확보 관련 애로 완화

•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

* '08년 이후 6차에 걸쳐 완화('08년 전 국토의 20.5% → 현재 3.2%)

• 과거('08) 후분양(40%이상 공정시 주택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

* 남양주 별내, 파주 운정 등 8개 필지 536천㎡

3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

• 내년 중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11년 500억원)하고, 향후에도 수요를 보아가며 지속 확대 추진

3.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1 PF 사업 정상화 및 부실 PF 조기정리 추진

•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조건 조정* 등 추진방안 마련(필요시 특별법 제정)

* 사업계획 변경,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 대한주택보증에서 PF 대출보증을 지속 시행('12년 1.5조원)하고, 사업성 있는 중소업체 사업 위주 지원

•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하여 최대한 정상화 추진

* PF 정상화뱅크를 통해 금년 6월 19개 사업장 1.2조원 규모

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2차 부실채권 매입(최대 1.5조원) 추진 예정

–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증가 등 수요 발생시 내년에 제2차 PF 정상화뱅크 설립 추진

•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 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정상화 추진

* PF사업장(31개, 1.3조원)에 대한 입찰 결과, 유효경쟁이 성립한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2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잔여 21개는 '12년 재입찰 추진

2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 건설사 P-CBO 추가발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

* '10. 12월 이후 4차례 총 1.1조원을 발행했으며, 발행수요 등을 보아가며 2조원 규모 내에서 추가발행

•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 유도('11년말 → '12년말)

*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운영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2/3(117개사) 이상의 동의 필요

3 최저가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지역 ·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확대시행*을 2년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 당초 '12. 1월부터 300억원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 예정

* 현재 국토부 등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구성('11. 10) · 운영중

Ⅳ.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1.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주택기금) 지원 확대

•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지원기간을 '12년말까지 연장하여 1조원 추가지원

• 금리인하(4.7% → 4.2%) 및 지원대상을 확대(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 5천만원 이하)하여 내집 마련 부담 완화

* 대출한도(호당 2억원), 대상주택(전용면적 85㎡ 및 6억원 이하, 투기지역 제외)은 현행 유지

*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지원금리 : 연 4.0%

2 「근로자 · 서민 주택구입자금」(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연 5.2%, 호당 1억원 한도, 85㎡ 및 3억원 이하 주택

2.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1 저소득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5만호 공급('11년 1.3만호)

•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 확대(1천호 → 3천호)

2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 폐지

* 현행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①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②총급여 3천만원 이하**, ③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④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임차인

** 총급여 요건 완화(3천만원 → 5천만원 이하)는 '11년 세법개정안으로 기발표(9. 7.)

3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저리(2~4%) 전세자금 지원

3.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1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내년 중 1만호 공급('11년 1천호)

• LH 등이 대학가 주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을 전세 · 보증부월세 등으로 임차하여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재임대

*내년 신학기에 맞춰 '12. 1월부터 공급 개시

- 지원대상 지역도 확대(도지역 소재시 : 대학소재 시·군 → 도 전체)

2 대학기숙사 확충 등을 위해 자금 및 택지 지원

- 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 건설시 주택기금에서 저리(연 2%) 자금 지원
-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 등을 용도변경하여 기숙사 부지로 활용 추진
-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시 주택기금에서 저리(연 2%) 자금 지원

4.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1 보금자리주택(연 15만호)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하여 임대물량 확대 공급

2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 연장('11년말 → '12년말)

3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자금·택지 지원

-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 연장('11년말 → '12년말)

  * 지원 한도 : 호당 7,000만원~9,000만원

-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용지도 수요 등을 보아가며 임대주택 용지로 적극 활용
- 택지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추진
  -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임대주택 건설·공급

  *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 도입(임대주택법 개정)

◈ 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수요변화에 부응한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및 정책방향도 마련('12.1/4분기)

Ⅴ. 추진 계획

1.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1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	'12.2	국토부
• 투기과열지구 해제	주택정책심의위 심의	'11.12	국토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소득세법 개정	'12	재정부
•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12.2	국토부
•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규칙 개정	'12.2	국토부
2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 장기 미사용용지 활용	실태조사 및 용도변경 등	'11.12~	국토부 등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2.2	국토부
• 후분양 공급택지 선분양 허용	지침 통보	'11.12	국토부
•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예산확보 및 집행	'12.1~	국토부
3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공모형 PF 정상화	사업조정위원회 신설	'12.1	국토부 등
• 대주보 PF 대출보증	–	지속추진	국토부
• 부실 PF 정상화	부실채권 매입,민간사업자 유치 등	지속 추진	금융위
• P-CBO 추가발행	금융위 지침 통보 등	'12.1~	금융위
•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 연장 유도	대주단 협의·결정	'11.12	금융위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11.12	재정부

2.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기관
1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12.1~	국토부
• 근로자 · 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12.1~	국토부
2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12.1~	국토부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세법 개정	'12	재정부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12.1~	국토부
3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12.2	국토부
• 대학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택법시행령 개정	'11.12~	국토부 등
• 국유지 등 활용	실태조사 및 용도변경 등	'12.1~	국토부 등
• 대학가 노후하숙 등 개량 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12.1~,	국토부
4 중소형 · 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 보금자리지구 내 분양주택 용지를 10년임대 등으로 전환	지구계획 등 변경 보금자리법시행령 개정	'12.1~,	국토부
• 도시 중소형주택 저리(2%) 건설자금 지원 연장	기금운용계획 변경	'12.2	국토부
• 5년 임대주택 저리(2%) 건설자금 지원연장	기금운용계획 변경	'12.1~	국토부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임대주택법 개정	'12.1~	국토부

국고채 만기도래 현황 및 관리 방안

* 본 자료는 2011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 국채과에서 발표한 「국고채 만기도래 현황 및 관리 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추경 편성 등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08년 52.1조원 → '09년 85.0조원)

• 증가된 물량은 시장 소화가 용이한 단기물(3년물, 5년물) 중심으로 발행하였고 그 결과 '12~'14년 국고채 만기도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 '09년 총발행액 중 71.8%를 3년물, 5년물로 발행

* '09년에 발행된 3년물은 '12년도에, 5년물은 '14년도에 만기가 도래

연도별 국고채 만기도래 구조(조원)

연 도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6	'27	'28	'29	'30
상환액	24.2	43.4	45.5	55.8	40.3	30.5	14.8	28.6	20.5	12.4	6.7	5.2	11.0	11.5	11.4

※ '11년도 상환액은 실적기준, '12년도 이후는 '11. 11월말 현재 상장잔액

■ '12년부터 만기상환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11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국고채 수요 여건 감안시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현재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해 지속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적자국채가 축소되는 등 국고채 순증발행 소요가 감소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재정건전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최근 적자국채 발행량(조원) : ('09년) 34.9 → ('10년) 23.3 → ('11년) 16.5 → ('12년 예산안) 13.9

■ 이러한 견실한 재정운용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경쟁입찰시 높은 응찰률을 기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

* 최근 국고채 평균 응찰률 : ('08년) 131.8% → ('09년) 156.7% → ('10년) 304.7% → ('11. 1~10월) 375.2%

■ 다만 향후 재정운용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조기상환 제도(buyback)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국고채 만기 분산을 위한 방안을 추진중

• 공자기금 잉여자금을 활용하여 국고채 조기상환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11년부터는 잔존만기 1년 이상인 '14년 만기 국고채도 조기상환 대상에 포함

* '10년까지는 잔존만기 1년 미만 국고채만 조기상환을 실시

* '11년 중 만기물별 조기상환 실적('11. 11월 까지) : ('11년 만기) 3.6 ('12년 만기) 3.0, ('13년 만기) 1.8, ('14년 만기) 9.6, ('15년 만기) 2.5

• 또한 만기물별 발행 비중을 균형있게 유지함으로써 특정연도에 만기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관리 목표비율 등 법 위임사항 규정 –

* 본 자료는 2011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수) 입법예고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우선, 비과세 · 감면에 대한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비과세 · 감면비율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도록 감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비과세 · 감면율('05 → '10) : 지방세 12.8% → 23.2% vs. 국세 14.4% → 14.6%

• 2015년까지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비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고,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직전연도 또는 전년도 비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도를 설정하였다.

* 지방세 비과세 · 감면 목표관리비율(행정안전부 장관의 노력비율)

• (~2015년) 15퍼센트 이하의 비율
• (2016년) 2015년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 (2017년) 2015년과 2016년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율의 합을 2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 (2018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운영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절차 등을 정하였다.

• 그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금년 8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

• 그 후속조치로서, 금번 개정안에 위원회 위원을 상세히 규정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회의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였다.

■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비율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지방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R&D 투자 및 성과 분석 결과

– 정부 R&D, 도입기 · 중장기 과제 중심으로 집중 지원 –

* 본 자료는 2011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에서 발표한 「정부 R&D 투자 및 성과 분석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08년~'10년까지 수행된 정부 R&D 과제의 투자와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① 정부 R&D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은 증가 추세

* 기초연구 투자 비중: ('08)24.0% → ('09)25.3% → ('10)28.8%

② 도입기 기술개발 투자는 증가, 성숙기 · 쇠퇴기 투자는 감소 추세

* 도입기: ('08) 35.1% → ('09) 39.1% → ('10) 42.0%

* 성숙기 · 쇠퇴기: ('08) 17.2% → ('09) 14.9% → ('10) 10.4%

③ 3년 이하 단기 과제에 대한 투자 비중이 50% 이상

* 3년 이하 단기 과제 투자 비중: ('08) 52.8% → ('09) 54.8% → ('10) 54.7%

■ 정부 R&D 특허('08~'10년 국내등록)의 질적 특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특허청이 구축한 특허평가 모형(SMART: Systematic Measuring and Rating patent of Technology)에 따라 정부 R&D 결과로 도출된 특허의 기술성(40점 기준), 권리성(30점 기준)을 평가

① 개발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서, 응용연구보다는 기초연구에서 기술성이 우수한 특허가 산출

* 연구개발단계별 특허 기술성(40점 기준): 기초(33.3점), 응용(32.5점), 개발(30.2점)

② 도입기 단계 연구에서 산출된 특허가 성장기 · 성숙기 단계 대비 기술성이 우수

* 기술수명주기별 특허 기술성(40점): 도입기(32.7점), 성장기(31.6점), 성숙기(29.1점)

③ 3년 이상 중장기 다년도 과제에서 우수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음

* 연구기간 유형별 특허 기술성(40점): 3년 이상(32.3점), 1년~3년(31.2점),1년 이하(30.2점)

④ 대학과 출연(연)이 수행한 과제에서 우수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음

* 수행주체별 특허의 기술성(40점): 출연연(33.2점), 대학(32.8점), 대기업(28.9점), 중소기업(26.9점)

■ 정부 R&D를 통해 중장기 미래 먹거리의 확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적 투자가 필요

- 우수 특허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
- 새로운 시장 창출의 잠재성을 지닌 도입기 분야의 원천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연구자가 안정된 여건하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다년도 과제의 지원 비율을 보다 확대
- 대학, 출연(연)의 우수특허 창출 노력을 지속하되, 개발된 기술의 권리성(기술보호 강화 정도)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수행주체별 특허의 권리성(30점): 출연연(19.9점), 대학(19.2점), 대기업(20.8점)

■ 향후 국과위와 협력하여 정부 R&D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자료 1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특성('08~'10년)

■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은 '10년에 28.8%까지 증가

■ (연구수행주체) 출연연구소와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비 비중이 정부 R&D의 약 70%를 차지

■ (기술수명주기) 도입기 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성장기 단계보다 낮은 수준

■ (과제연구기간) 3년 이하 단기 과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특성('08~'10년)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19,398	24.0	22,652	25.3	28,631	28.8	70,731	26.2
	응용연구	19,895	24.6	19,487	21.7	21,992	22.1	61,420	22.8
	개발연구	41,436	51.3	47,555	53.0	48,706	49.0	137,801	51.0
연구수행주체	국공립(연)	6,235	6.3	6,683	5.8	7,090	5.7	20,020	5.9
	출연(연)	45,533	45.7	49,718	43.3	55,113	44.1	150,454	44.3
	대학	26,589	26.7	30,120	26.3	33,956	27.2	90,717	26.7
	대기업	9,447	9.5	13,183	11.5	12,330	9.9	34,982	10.3
	중소기업	11,778	11.8	15,002	13.1	16,353	13.1	43,158	12.7
기술수명주기	도입기	26,008	35.1	33,276	39.1	40,742	42.0	100,100	39.0
	성장기	35,506	47.9	39,163	46.0	46,140	47.6	120,903	47.1
	성숙기	12,545	16.9	12,655	14.9	10,085	10.4	35,316	13.8
	쇠퇴기	114	0.2	24	0.0	11	0.0	148	0.1
과제연구기간	1년 이하	28,252	26.6	35,244	28.4	30,306	22.1	93,858	25.6
	1년~3년	27,781	26.2	32,733	26.4	44,660	32.6	105,227	28.7
	3년~5년	24,199	22.8	26,710	21.5	31,729	23.2	82,683	22.5
	5년 이상	25,920	24.4	29,341	23.7	30,132	22.0	85,441	23.3

자료 2 연구과제 특성에 따른 특허의 질

■ 개발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서, 응용연구보다는 기초연구 과제에서 발생한 특허가 기술적으로 더 우수한 특성을 보임

■ 도입기 단계의 과제에서 기술성이 우수한 특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 3년 이상 중장기 과제에서 발생한 특허의 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우수

■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특허는 기술적 측면에서 기업체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보이지만, 권리성은 상대적으로 미흡

■ 대학과 출연연구소 중심의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되, 권리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연구개발단계, 수명주기, 과제기간별 특허 질적 특성 비교

구 분		특허 수	권리성 (30점)	기술성 (40점)	합계 (70점)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3,674	19.7	33.3	53.0
	응용연구	7,756	19.4	32.5	51.9
	개발연구	10,812	19.8	30.2	50.0
기술수명주기	도입기	7,362	19.8	32.7	52.5
	성장기	9,397	19.6	31.6	51.2
	성숙기	4,042	19.6	29.1	48.7
과제연구기간	1년이하	5,125	19.5	30.2	49.7
	1년~3년	6,257	19.6	31.2	50.8
	3년~5년	5,166	20.1	32.3	52.4
	5년이상	6,370	19.3	32.3	51.6

연구수행주체에 따른 특허 질적 특성 비교

구분		특허 수	권리성 (30점)	기술성 (40점)	합계 (70점)
연구수행주체	국공립연구소	474	18.4	32.3	50.7
	출연연구소	7,290	19.9	33.2	53.1
	대학	8,824	19.2	32.8	52.0
	대기업	1,622	20.8	28.9	49.7
	중소기업	4,130	19.8	26.9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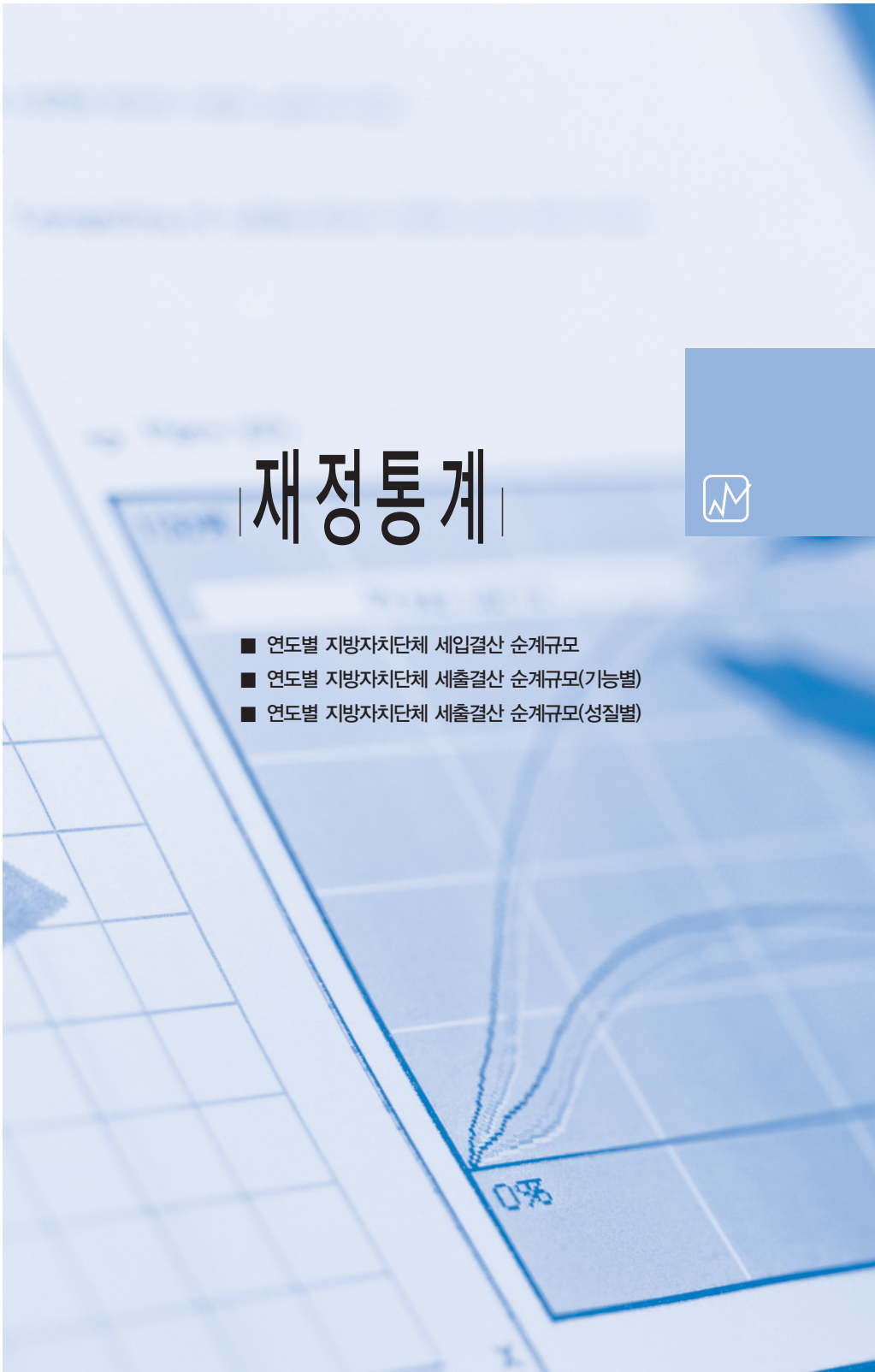

재정통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기능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성질별)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단위: 백만원)

연 도	재원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0	합계	22,914,045	15,491,028	3,665,176	3,757,841
	지방세수입	6,378,583	6,378,583	-	-
	세외수입	9,323,964	3,979,614	2,195,179	3,149,172
	지방교부세	2,764,654	2,764,654	-	-
	지방양여금	-	-	-	-
	조정교부금	53,806	53,806	-	-
	보조금	2,136,803	1,988,026	14,478	134,299
	지방채	2,256,235	326,345	1,455,519	474,371
	지정재원	-	-	-	-
1991	합계	29,742,208	19,903,784	5,584,111	4,254,313
	지방세수입	8,035,075	8,035,075	-	-
	세외수입	15,291,635	6,071,682	5,258,353	3,961,599
	지방교부세	3,452,403	3,452,403	-	-
	지방양여금	557,031	557,031	-	-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2,406,063	1,787,592	325,758	292,713
	지방채	-	-	-	-
	지정재원	-	-	-	-
1992	합계	34,691,954	22,078,671	5,719,240	6,894,043
	지방세수입	9,462,206	9,462,206	-	-
	세외수입	15,528,603	6,658,109	3,990,242	4,880,252
	지방교부세	3,925,064	3,925,064	-	-
	지방양여금	1,230,602	53,414	-	1,177,188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1,750,414	1,335,933	19,700	394,781
	지방채	2,795,065	643,945	1,709,298	441,822
	지정재원	-	-	-	-
1993	합계	37,794,508	23,700,272	6,917,077	7,177,159
	지방세수입	11,025,781	11,025,781	-	-
	세외수입	15,564,527	5,993,498	4,451,400	5,119,629
	지방교부세	4,412,413	4,412,413	-	-
	지방양여금	1,421,075	60,250	-	1,360,825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2,169,097	1,743,491	123,640	301,966
	지방채	3,201,615	464,839	2,342,037	394,739
	지정재원	-	-	-	-
1994	합계	44,417,354	30,279,950	6,815,681	7,321,723
	지방세수입	13,228,637	13,227,759	-	878
	세외수입	17,930,494	7,737,981	5,011,907	5,180,606
	지방교부세	4,821,432	4,821,432	-	-
	지방양여금	1,696,086	1,696,086	-	-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3,131,765	2,337,104	169,928	624,733
	지방채	3,608,940	459,588	1,633,846	1,515,506
	지정재원	-	-	-	-
1995	합계	52,378,910	36,667,355	8,487,429	7,224,126
	지방세수입	15,316,913	15,316,913	-	-
	세외수입	20,746,487	9,032,482	6,325,846	5,388,159
	지방교부세	5,674,580	5,671,326	3,254	-
	지방양여금	1,870,124	1,870,124	-	-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4,109,221	3,218,960	219,923	670,338
	지방채	-	-	-	-
	지정재원	4,661,585	1,557,550	1,938,406	1,165,629

연 도	재원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6	합계	63,085,526	44,995,294	9,018,407	9,071,825
	지방세수입	17,396,462	17,394,727	-	1,735
	세외수입	27,611,045	13,888,685	6,980,426	6,741,934
	법정교부세	6,372,664	6,372,664	-	-
	증액교부금	151,157	151,157	-	-
	지방양여금	2,574,420	2,574,420	-	-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4,930,017	3,868,386	154,398	907,233
	지방채	4,049,761	745,255	1,883,583	1,420,923
	지정재원	-	-	-	-
1997	합계	69,571,628	50,764,997	9,484,577	9,322,054
	지방세수입	18,497,728	18,497,728	-	-
	세외수입	31,163,235	16,691,729	7,585,694	6,885,812
	법정교부세	6,785,682	6,785,682	-	-
	증액교부금	228,909	228,909	-	-
	지방양여금	2,877,166	2,876,361	-	805
	조정교부금	15,300	15,300	-	-
	보조금	5,546,567	4,333,185	184,108	1,028,274
	지방채	4,458,041	1,336,103	1,714,775	1,407,163
	지정재원	-	-	-	-
1998	합계	69,120,708	50,989,344	8,522,595	9,608,769
	지방세수입	1,714,890	17,148,290	-	-
	세외수입	29,367,420	15,443,117	7,033,421	6,890,882
	법정교부세	7,039,526	7,036,326	-	3,200
	증액교부금	294,976	294,976	-	-
	지방양여금	2,885,525	2,879,549	-	5,976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7,766,452	6,175,440	193,146	1,397,866
	지방채	4,618,519	2,011,646	1,296,028	1,310,845
	지정재원	-	-	-	-
1999	합계	73,125,735	53,772,612	8,745,024	10,608,099
	지방세수입	18,568,564	18,568,517	-	47
	세외수입	29,751,086	15,759,319	7,017,570	6,974,197
	지방교부세	6,535,394	6,535,394	-	-
	증액교부금	383,321	383,321	-	-
	지방양여금	2,906,139	2,906,139	-	-
	조정교부금	-	-	-	-
	보조금	9,687,543	7,891,281	175,619	1,620,634
	지방채	5,293,697	1,728,641	1,551,835	2,013,221
	지정재원	-	-	-	-
2000	합계	77,176,148	57,653,225	8,866,793	10,656,130
	지방세	20,361,600	20,361,411	-	189
	세외수입	31,531,452	16,653,692	7,703,630	7,174,130
	지방교부세	8,244,954	8,244,954	-	-
	증액교부금	204,442	204,442	-	-
	지방양여금	3,713,447	3,713,447	-	-
	조정교부금	-	-	-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9,892,702	7,652,942	167,772	2,071,988
	지방채	3,227,551	822,337	995,391	1,409,823
	지정재원	-	-	-	-
2001	합계	93,995,619	71,460,746	10,092,778	12,442,095
	지방세	26,639,924	26,639,725	-	199
	세외수입	35,983,274	18,337,574	8,931,223	8,714,477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규모 〈계속〉

(단위: 백만원)

연 도	재원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교부세	12,209,985	12,209,985	-	-
	증액교부금	140,063	140,063	-	-
	지방양여금	4,628,105	4,628,105	-	-
	조정교부금	-	-	-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11,177,968	8,690,642	49,004	2,438,322
	지방채	3,216,300	814,652	1,112,551	1,289,097
	지정재원	-	-	-	-
2002	합계	110,507,834	84,508,229	11,405,364	14,594,241
	지방세	31,583,550	31,583,550	-	-
	세외수입	42,284,635	22,118,158	9,995,368	10,171,110
	지방교부세	12,060,352	12,050,563	2,593	7,197
	증액교부금	418,729	418,729	-	-
	지방양여금	4,190,050	4,021,827	32,411	135,812
	조정교부금	-	-	-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16,218,848	13,742,185	28,903	2,447,760
	지방채	3,751,669	573,216	1,346,091	1,832,362
2003	합계	122,725,967	96,503,974	12,011,187	14,210,806
	지방세	33,061,987	33,061,987	-	-
	세외수입	53,123,913	31,926,358	10,501,346	10,696,210
	지방교부세	13,397,334	13,370,311	1,230	25,793
	증액교부금	1,640,422	1,593,122	37,300	10,000
	지방양여금	4,412,010	4,280,867	46,010	85,133
	조정교부금	-	-	-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14,254,518	11,715,739	26,501	2,512,278
	지방채	2,835,782	555,589	1,398,801	881,392
2004	합계	125,843,536	97,230,960	13,306,615	15,305,961
	지방세	34,159,382	34,159,382	-	-
	세외수입	56,387,552	33,507,014	11,460,580	11,419,959
	지방교부세	14,234,544	14,228,845	749	4,951
	증액교부금	240,744	200,705	40,040	-
	지방양여금	3,848,942	3,775,315	24,395	49,232
	조정교부금	-	-	-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13,496,361	10,774,053	56,418	2,665,890
	지방채	3,476,010	585,647	1,724,434	1,165,930
2005	합계	128,414,560	99,714,240	13,876,667	14,823,653
	지방세	35,976,900	35,976,900	-	-
	세외수입	51,863,067	29,104,657	12,086,770	10,671,640
	지방교부세	20,025,251	20,018,269	32	6,950
	지방양여금	-	-	-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16,945,663	13,797,816	83,884	3,063,96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603,678	816,598	1,705,981	1,081,099
2006	합계	139,824,206	109,090,416	13,950,486	16,783,305
	지방세	41,281,810	41,281,810	-	-
	세외수입	51,771,143	28,254,994	11,859,627	11,656,522
	지방교부세	21,744,140	21,734,681	2,027	7,433
	지방양여금	-	-	-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21,119,964	17,072,452	101,429	3,946,08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907,150	746,480	1,987,403	1,173,268
2007	합계	151,756,297	118,242,810	14,613,653	18,899,835
	지방세	43,531,553	43,531,553	-	-
	세외수입	56,825,427	31,973,373	12,359,431	12,492,622
	지방교부세	25,239,375	25,229,449	5,519	4,406
	지방양여금	-	-	-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22,352,188	16,726,496	163,741	5,461,952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807,755	781,939	2,084,962	940,855
2008	합계	166,804,986	133,040,046	14,770,853	18,994,086
	지방세	45,835,149	45,835,149	-	-
	세외수입	59,338,707	34,689,166	12,566,480	12,083,061
	지방교부세	31,094,330	31,081,336	-	12,993
	지방양여금	-	-	-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25,808,477	20,124,608	98,313	5,585,557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728,323	1,309,787	2,106,060	1,312,475
2009	합계	179,656,845	144,920,598	15,823,717	18,912,529
	지방세	45,056,548	45,056,548	-	-
	세외수입	63,684,501	38,854,230	13,022,202	11,808,068
	지방교부세	28,451,177	28,429,869	-	21,309
	지방양여금	-	-	-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	-	-
	보조금	32,379,833	26,531,099	250,870	5,597,86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84,785	6,048,852	2,550,644	1,485,288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행정안전부, 재정고 홈페이지, "지방결산현황", 『지방재정연감』, 결산편; 순계자료, "지방자치단체 세입총계 및 순계규모", 2002~2009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기능별)

(단위: 백만원)

연 도	장관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0	합계	16,166,210	10,327,211	2,966,761	2,872,237
	의회비	16,815	16,815	-	-
	일반행정비	2,654,470	2,613,561	24,558	16,351
	사회복지비	1,916,364	1,704,831	4,654	206,879
	산업경제비	1,520,704	1,262,864	3,566	254,274
	지역개발비	8,683,534	3,708,576	2,586,267	2,388,691
	문화 및 체육비	459,911	453,923	-	5,989
	민방위비	301,214	301,195	-	19
	지원 및 기타경비	613,197	265,446	347,716	34
1991	합계	21,850,177	13,852,388	4,084,460	3,913,328
	의회비	162,043	162,043	-	-
	일반행정비	3,278,524	3,225,330	52,979	215
	사회복지비	2,317,508	2,051,603	5,328	260,577
	산업경제비	1,920,381	1,598,715	6,003	315,663
	지역개발비	12,272,678	5,470,106	3,469,826	3,332,746
	문화 및 체육비	631,299	628,916	-	2,383
	민방위비	387,493	387,472	-	22
	지원 및 기타경비	880,250	328,203	550,324	1,722
1992	합계	26,659,809	15,926,614	4,819,597	5,913,598
	의회비	144,119	144,119	-	-
	일반행정비	4,080,783	3,998,343	76,052	6,388
	사회복지비	2,919,398	2,598,181	6,546	314,671
	산업경제비	2,549,077	2,078,282	210	470,585
	지역개발비	15,423,691	5,582,815	4,731,504	5,109,372
	문화 및 체육비	715,096	705,862	4,242	4,992
	민방위비	479,042	479,042	-	-
	지원 및 기타경비	348,603	339,874	1,043	7,686
1993	합계	28,874,545	16,969,564	5,689,914	6,215,067
	의회비	161,294	161,294	-	-
	일반행정비	4,365,731	4,223,410	129,817	12,504
	사회복지비	3,431,856	2,972,196	6,564	453,096
	산업경제비	3,354,377	2,675,946	-	678,431
	지역개발비	15,614,693	5,002,256	5,552,190	5,060,247
	문화 및 체육비	1,131,361	1,124,289	-	7,072
	민방위비	494,147	494,147	-	-
	지원 및 기타경비	321,086	316,026	1,343	3,717
1994	합계	32,536,378	21,902,088	4,537,846	6,096,444
	의회비	197,228	197,228	-	-
	일반행정비	6,294,426	6,171,974	115,768	6,684
	사회복지비	3,758,212	3,313,984	-	444,228
	산업경제비	3,742,387	3,042,637	-	699,750
	지역개발비	15,988,863	6,687,656	4,422,078	4,879,129
	문화 및 체육비	1,511,437	1,446,280	-	65,157
	민방위비	464,054	464,054	-	-
	지원 및 기타경비	579,771	578,275	-	1,496

연 도	장관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5	합계	36,664,283	24,815,945	5,676,909	6,171,429
	의회비	207,389	207,389	-	-
	일반행정비	7,011,282	7,000,264	2,227	8,791
	사회복지비	4,614,892	3,942,466	-	672,426
	산업경제비	4,838,073	4,180,413	-	657,660
	지역개발비	17,676,186	7,221,635	5,671,282	4,783,269
	문화 및 체육비	1,207,691	1,158,164	3,400	46,127
	민방위비	632,908	632,908	-	-
	지원 및 기타경비	475,862	472,706	-	3,156
1996	합계	44,444,694	31,249,980	6,009,194	7,185,520
	일반행정비	8,329,023	8,327,820	973	230
	사회개발비	16,235,794	9,848,526	3,840,480	2,546,788
	경제개발비	18,478,806	11,684,988	2,157,318	4,636,500
	민방위비	844,149	844,148	-	1
	지원 및 기타경비	556,922	544,498	10,423	2,001
1997	합계	50,958,970	37,407,047	6,301,399	7,250,524
	일반행정비	8,984,652	8,984,652	-	-
	사회개발비	20,029,348	12,649,815	4,106,810	3,272,723
	경제개발비	20,277,149	14,104,759	2,194,589	3,977,801
	민방위비	1,129,479	1,129,479	-	-
	지원 및 기타경비	538,342	538,342	-	-
1998	합계	51,605,421	38,076,886	5,869,623	7,658,912
	일반행정비	5,916,079	8,910,381	-	5,698
	사회개발비	21,092,023	13,098,675	1,567,566	3,425,782
	경제개발비	18,851,465	13,926,389	1,302,057	3,623,019
	민방위비	1,035,489	1,035,489	-	-
	지원 및 기타경비	1,710,365	1,105,952	-	604,413
1999	합계	53,979,397	39,758,463	5,800,837	8,420,297
	일반행정비	8,889,803	8,889,803	-	-
	사회개발비	23,221,006	13,572,909	5,435,994	4,212,103
	경제개발비	19,845,504	15,272,667	364,843	4,207,994
	민방위비	1,025,362	1,025,362	-	-
	지원 및 기타경비	997,722	997,722	-	-
2000	합계	56,107,869	41,956,910	5,443,009	8,707,950
	일반행정비	9,479,482	9,479,482	-	-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2001	합계	67,504,855	51,542,081	6,118,400	9,844,374
	일반행정비	11,309,329	11,309,329	-	-
	사회개발비	32,302,907	20,571,210	6,118,400	5,613,297
	경제개발비	21,307,154	17,076,077	-	4,231,077
	민방위비	1,279,360	1,279,360	-	-
	지원 및 기타경비	1,306,105	1,306,105	-	-

2.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지출액(연도별) 〈계속〉

(단위: 백만원)

연 도	장관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2	합계	72,883,799	54,791,904	6,868,178	11,223,717
	일반행정비	12,329,218	12,329,218	-	-
	사회개발비	35,387,806	22,539,046	6,868,178	5,980,583
	경제개발비	22,622,352	17,379,218	-	5,243,135
	민방위비	1,451,062	1,451,062	-	-
	지원 및 기타경비	1,093,360	1,093,360	-	-
2003	합계	82,186,004	65,026,972	6,102,905	11,056,127
	일반행정비	13,437,977	13,437,977	-	-
	사회개발비	37,609,019	25,305,841	6,102,905	6,200,273
	경제개발비	28,070,703	23,214,849	-	4,855,854
	민방위비	1,709,653	1,709,653	-	-
	지원 및 기타경비	1,358,652	1,358,652	-	-
2004	합계	91,159,327	71,794,574	6,811,347	12,553,406
	일반행정비	15,279,385	15,279,385	-	-
	사회개발비	42,247,138	28,111,319	6,811,347	7,324,472
	경제개발비	30,287,063	25,058,130	-	5,228,934
	민방위비	1,851,774	1,851,774	-	-
	지원 및 기타경비	1,493,967	1,493,967	-	-
2005	합계	95,583,507	74,635,603	8,105,242	12,842,662
	일반행정비	16,570,738	16,570,738	-	-
	사회개발비	46,864,052	31,361,377	8,105,242	7,397,433
	경제개발비	28,728,543	23,283,314	-	5,445,229
	민방위비	2,001,361	2,001,361	-	-
	지원 및 기타경비	1,418,812	1,418,812	-	-
2006	합계	103,303,895	79,738,529	8,568,505	14,996,861
	일반행정비	17,862,783	17,862,783	-	-
	사회개발비	51,226,714	34,073,649	8,568,505	8,584,560
	경제개발비	30,923,070	24,510,769	-	6,412,300
	민방위비	2,149,455	2,149,455	-	-
	지원 및 기타경비	1,141,873	1,141,873	-	-
2007	합계	113,000,743	86,881,392	9,683,410	16,435,942
	일반행정비	19,046,308	19,046,308	-	-
	사회개발비	56,919,083	37,307,468	9,683,410	9,928,206
	경제개발비	32,935,803	26,428,067	-	6,507,736
	민방위비	2,286,834	2,286,834	-	-
	지원 및 기타경비	1,812,716	1,812,716	-	-
2008[1]	합계	124,997,794	98,395,563	9,321,814	17,280,416
	1. 일반공공행정	11,713,721	8,969,552	2,454,475	289,695
	2. 공공질서 및 안전	2,252,323	2,210,012	0	42,310
	3. 교육	7,942,067	7,586,154	-	355,912
	4. 문화 및 관광	6,893,510	6,656,187	94,032	143,291
	5. 환경보호	12,917,106	5,719,713	5,374,494	1,822,899
	6. 사회복지	22,392,924	16,832,348	1,399	5,559,177
	7. 보건	1,998,300	1,745,529	-	252,771
	8. 농림해양수산	9,196,804	8,993,257	2,242	201,305
	9. 산업 · 중소기업	2,858,560	2,512,815	160	345,585
	10. 수송 및 교통	18,246,142	13,066,200	870	5,179,072
	11. 국토및지역개발	11,483,082	8,170,328	470,024	2,842,729
	12. 과학기술	257,774	185,746	72,029	-
	13. 예비비	-	-	-	-
	14. 기타	16,845,480	15,747,722	852,088	245,670
2009	합계	149,658,849	118,463,752	11,632,213	19,562,884
	1. 일반공공행정	10,741,547	9,116,515	1,410,607	214,425
	2. 공공질서및안전	2,653,177	2,604,433	-	48,744
	3. 교육	8,237,007	7,857,471	-	379,536
	4. 문화및관광	8,526,361	8,124,292	34,272	367,797
	5. 환경보호	15,586,647	7,002,687	6,309,278	2,274,682
	6. 사회복지	27,939,459	22,296,256	2,883	5,640,320
	7. 보건	2,473,975	2,177,596	-	296,379
	8. 농림해양수산	11,244,116	10,993,436	2,115	248,565
	9. 산업 · 중소기업	4,344,300	3,889,006	-	455,294
	10. 수송및교통	22,253,991	15,841,889	-	6,412,103
	11. 국토및지역개발	16,525,339	11,332,360	2,298,170	2,894,808
	12. 과학기술	559,123	202,001	357,122	-
	13. 예비비	-	-	-	-
	14. 기타	18,573,807	17,025,810	1,217,766	330,231

주: 1) 2008년 부터 구분항목이 개편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행정안전부, 재정고 홈페이지, "지방결산현황", 『지방재정연감』, 결산편: 순계자료, "지방자치단체 세출총계 및 순계규모", 2002~2009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성질별)

(단위: 백만원)

연 도	성질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0	합계	7,650,225	1,811,226	2,966,761	2,872,237
	인건비	579,396	408,698	129,140	41,557
	물건비	1,006,743	210,182	400,179	396,382
	이전경비	418,759	156,244	26,886	235,629
	자본지출	4,604,336	796,617	1,834,552	1,973,167
	융자 및 출자	437,175	186,618	166,959	83,597
	보전재원	271,748	16,584	165,424	89,740
	내부거래	284,385	12,435	226,313	45,637
	기타	47,683	23,847	17,307	6,529
1991	합계	21,850,177	13,852,388	4,084,460	3,913,328
	인건비	2,754,319	2,541,564	172,947	39,807
	물건비	2,413,158	1,478,301	451,707	483,150
	이전경비	1,371,605	1,285,692	16,679	69,235
	자본지출	13,190,510	7,568,565	2,917,505	2,704,440
	융자 및 출자	626,297	261,566	106,458	258,273
	보전재원	881,796	262,554	398,824	220,418
	내부거래	329,265	206,614	2,111	120,540
	기타	283,226	247,531	18,229	17,466
1992	합계	26,659,809	15,926,614	4,819,597	5,913,598
	인건비	3,280,681	3,009,694	223,953	47,034
	물건비	3,191,713	1,977,710	641,510	572,493
	이전경비	1,919,009	1,603,471	250,680	64,858
	자본지출	15,424,433	8,314,787	2,854,826	4,254,820
	융자 및 출자	721,514	277,334	151,653	292,527
	보전재원	1,138,081	275,641	669,170	193,270
	내부거래	429,653	195,583	11,008	223,062
	기타	554,725	272,394	16,797	265,534
1993	합계	28,874,545	16,969,564	5,689,914	6,215,067
	인건비	3,791,439	3,461,216	273,903	56,320
	물건비	3,406,202	2,046,150	725,862	634,190
	이전경비	2,310,125	2,148,240	30,132	131,753
	자본지출	16,118,051	8,066,789	3,564,100	4,487,162
	융자 및 출자	676,499	251,146	204,355	220,998
	보전재원	993,190	182,499	598,528	212,163
	내부거래	1,239,841	540,617	265,628	433,596
	기타	339,198	272,907	27,406	38,885
1994	합계	32,536,378	21,902,088	4,537,846	6,096,444
	인건비	4,291,627	3,927,546	291,501	72,580
	물건비	3,638,562	2,618,339	529,329	490,894
	이전경비	3,343,094	2,556,263	282,069	504,762
	자본지출	17,542,871	11,314,061	2,350,516	3,878,294
	융자 및 출자	712,046	246,028	221,132	244,886
	보전재원	1,495,376	438,042	827,075	230,259
	내부거래	1,435,562	767,639	9,188	658,735
	예비비 및 기타	77,240	34,170	27,036	16,034

연 도	성질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995	합계	36,664,283	24,815,945	5,676,909	6,171,429
	인건비	4,759,859	4,401,367	275,322	83,170
	물건비	4,507,873	3,342,675	612,032	553,166
	이전경비	4,158,593	3,057,599	349,465	751,529
	자본지출	20,418,226	13,154,513	3,291,817	3,971,896
	융자 및 출자	599,375	255,941	143,119	200,315
	보전재원	1,506,002	308,819	982,962	214,221
	내부거래	658,309	264,727	9,762	383,820
	예비비 및 기타	56,046	30,304	12,430	13,312
1996	합계	44,444,694	31,249,980	6,009,194	7,185,520
	인건비	5,314,514	4,916,462	298,262	99,790
	물건비	5,371,387	4,064,112	677,568	629,707
	이전경비	5,292,321	3,840,283	467,482	984,556
	자본지출	24,064,220	16,388,732	3,242,033	4,433,455
	융자 및 출자	970,179	443,437	276,466	250,276
	보전재원	1,856,303	324,232	1,014,321	517,750
	내부거래	1,329,091	1,189,865	2,540	136,686
	예비비 및 기타	246,679	82,857	30,522	133,300
1997	합계	50,958,970	37,407,047	6,301,399	7,250,524
	인건비	5,916,763	5,481,360	321,890	113,513
	물건비	6,037,429	4,470,004	760,692	806,733
	이전경비	6,319,215	4,903,416	453,170	962,629
	자본지출	28,101,971	20,260,657	3,390,528	4,450,786
	융자 및 출자	1,054,624	544,311	264,964	245,349
	보전재원	1,641,741	241,117	1,000,701	399,923
	내부거래	1,598,648	1,431,959	9,694	156,995
	예비비 및 기타	288,579	74,223	99,760	114,596
1998	합계	51,604,709	38,076,886	5,868,911	7,658,912
	인건비	5,919,643	5,481,513	313,461	124,669
	물건비	6,777,138	5,026,807	823,286	927,045
	이전경비	6,982,516	5,369,523	707,152	905,841
	자본지출	26,711,897	19,400,468	1,840,964	4,470,465
	융자 및 출자	1,139,256	522,738	263,374	353,144
	보전재원	2,225,123	682,138	851,524	691,461
	내부거래	1,622,708	1,488,131	20,973	113,604
	예비비 및 기타	226,428	105,568	48,177	72,683
1999	합계	53,979,397	39,758,463	5,800,837	8,420,097
	인건비	5,920,533	5,497,578	297,803	125,152
	물건비	6,478,857	5,283,971	885,923	308,963
	이전경비	9,764,185	6,809,229	983,422	1,971,534
	자본지출	26,557,188	19,328,370	2,472,502	4,756,316
	융자 및 출자	939,516	621,267	55,739	262,510
	보전재원	2,507,859	664,472	1,055,404	787,983
	내부거래	1,585,534	1,420,553	3,847	161,134
	예비비 및 기타	225,725	133,023	46,197	46,505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규모(성질별) 〈계속〉

(단위: 백만원)

연 도	성질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0	합계	56,107,869	41,956,910	5,443,009	8,707,950
	인건비	6,197,751	5,754,486	306,497	136,768
	물건비	6,637,621	5,314,078	998,049	325,494
	이전경비	10,894,551	7,668,326	714,799	2,511,426
	자본지출	27,366,105	20,321,753	2,120,910	4,923,442
	융자 및 출자	1,209,452	823,582	142,147	243,723
	보전재원	1,818,471	344,482	1,137,834	336,155
	내부거래	1,796,378	1,607,364	3,709	185,305
	예비비 및 기타	187,540	122,839	19,064	45,637
2001	합계	67,504,855	51,542,081	6,118,400	9,844,374
	인건비	6,734,953	6,250,430	340,642	143,881
	물건비	7,111,583	5,590,155	1,078,755	442,673
	이전경비	13,606,702	9,324,489	814,726	3,467,487
	자본지출	30,438,869	23,348,089	2,320,151	4,770,629
	융자 및 출자	1,259,483	860,318	108,310	290,855
	보전재원	2,579,724	720,414	1,406,816	452,494
	내부거래	5,477,500	5,259,667	8,001	209,832
	예비비 및 기타	296,041	188,519	40,999	66,523
2002	합계	72,883,799	54,791,904	6,868,178	11,223,717
	인건비	7,422,542	6,902,480	361,382	158,679
	물건비	7,561,126	5,968,942	1,148,489	443,695
	이전경비	14,172,665	10,762,491	646,879	2,763,295
	자본지출	31,648,785	23,430,072	2,809,543	5,409,170
	융자 및 출자	880,581	226,181	183,004	471,396
	보전재원	3,078,193	491,960	1,625,192	961,041
	내부거래	7,756,530	6,773,598	61,110	921,822
	예비비 및 기타	363,377	236,179	32,579	94,619
2003	합계	82,186,004	65,026,972	6,102,905	11,056,127
	인건비	8,052,398	7,479,973	400,837	171,588
	물건비	8,262,266	6,589,273	1,250,428	422,565
	이전경비	15,556,976	11,776,044	799,895	2,981,037
	자본지출	38,478,411	30,576,461	2,371,132	5,530,819
	융자 및 출자	1,163,001	419,610	31,024	712,367
	보전재원	1,884,833	308,284	1,092,921	483,627
	내부거래	8,443,773	7,685,084	110,882	647,807
	예비비 및 기타	344,346	192,242	45,786	106,318
2004	합계	91,159,327	71,794,574	6,811,347	12,553,406
	인건비	9,374,444	8,716,899	446,321	211,224
	물건비	8,472,897	6,710,356	1,352,787	409,753
	이전경비	18,007,489	14,198,389	620,074	3,189,026
	자본지출	43,139,613	33,390,381	2,895,425	6,853,808
	융자 및 출자	1,185,416	446,737	254,898	483,781
	보전재원	2,251,306	439,464	1,193,149	618,693
	내부거래	8,256,797	7,613,074	21,415	622,308
	예비비 및 기타	471,365	279,274	27,278	164,813

연 도	성질별	순계규모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5	합계	95,583,507	74,635,603	8,105,242	12,842,662
	인건비	12,627,404	11,760,153	595,213	272,037
	물건비	6,670,476	4,932,932	1,372,864	364,680
	이전경비	22,149,629	17,711,928	734,840	3,702,861
	자본지출	41,791,596	31,433,132	3,713,282	6,645,182
	융자 및 출자	1,208,441	439,398	302,807	466,237
	보전재원	2,274,114	446,960	1,343,081	484,072
	내부거래	8,293,092	7,620,644	1,307	671,141
	예비비 및 기타	568,755	290,456	41,848	236,451
2006	합계	103,303,895	79,738,529	8,568,505	14,996,861
	인건비	13,405,109	12,496,587	624,985	283,537
	물건비	7,180,342	5,428,290	1,395,221	356,831
	이전경비	27,062,142	21,317,453	1,103,623	4,641,066
	자본지출	43,062,347	32,100,941	3,608,145	7,353,260
	융자 및 출자	1,335,463	277,735	290,871	766,857
	보전재원	2,637,987	419,549	1,486,850	731,588
	내부거래	8,147,419	7,461,365	586	685,468
	예비비 및 기타	473,085	236,608	58,223	178,253
2007	합계	113,000,743	86,881,392	9,683,410	16,435,942
	인건비	13,926,714	12,999,107	643,971	283,636
	물건비	7,717,934	5,876,327	1,482,826	358,781
	이전경비	31,326,241	24,693,852	788,792	5,843,597
	자본지출	45,421,585	33,389,628	4,497,457	7,534,501
	융자 및 출자	1,915,784	354,158	697,588	864,038
	보전재원	2,274,012	445,769	1,439,553	388,690
	내부거래	9,954,177	8,837,209	61,125	1,055,844
	예비비 및 기타	464,296	285,342	72,099	106,855
2008	합계	124,997,794	98,395,563	9,321,814	17,280,416
	인건비	15,533,215	13,560,945	1,694,039	278,230
	물건비	8,166,619	6,364,620	1,426,695	375,305
	이전경비	37,397,435	30,459,913	914,304	6,023,218
	자본지출	49,462,461	37,209,106	3,518,986	8,734,370
	융자 및 출자	1,238,245	274,005	377,713	586,527
	보전재원	2,981,893	878,975	1,316,777	786,141
	내부거래	9,524,506	9,209,524	19,289	295,693
	예비비 및 기타	693,420	438,475	54,013	200,932
2009	합계	149,658,849	118,463,752	11,632,213	19,562,884
	인건비	17,500,006	15,400,807	1,809,559	289,640
	물건비	9,163,045	7,212,508	1,529,776	420,760
	이전경비	41,970,153	35,124,832	659,941	6,185,380
	자본지출	66,597,992	49,658,884	5,901,657	11,037,451
	융자 및 출자	1,786,617	495,455	377,086	914,076
	보전재원	2,120,882	787,037	1,188,522	145,323
	내부거래	9,428,976	9,057,641	21,598	349,737
	예비비 및 기타	1,091,178	726,588	144,073	220,517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행정안전부, 재정고 홈페이지, "지방결산현황", 『지방재정연감』, 결산편; 순계자료, "지방자치단체 결산 경제성질별 순계분석", 2002~2009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부자증세 이전에 카드소득공제부터 없애자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핏세로 촉발된 정치권의 논의가 이제 부자 증세로 방향을 튼 듯하다. 현재 35%의 최고한도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구간을 신설하는 논의가 이제는 꽤나 구체적이다. 부자 감세를 중단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바로 몇 달 전인데, 우리 정치권의 논의 속도는 참으로 빠르기도 하다는 느낌이다. 이런 속도라면, 미국에선 백만장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시작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때리기' 로까지 변질될 것 같다는 걱정도 든다.

사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이 모두 세금문제에서 비롯되었을 정도로 세금문제는 정치와 밀접하므로, 정치권이 세금 논쟁을 선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접근으로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사회가 바라는 정치의 모습일까 의문스럽다.

부자 증세가 과연 높은 소득에 대해 일방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 만약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감면을 찾아내 이를 없애준다면, 굳이 부자 증세라는 사회 분열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자들로부터 더 세금을 거두지 않을까? 필자는 그 방법이 있다고 본다.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금년 말로 폐지하거나 연장하더라도 대폭 줄이는 방안이다.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시한은 금년 말까지였다. 그러나 서민들의 소득세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민이 과연 어떤 계층인가를 보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대부분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증세 대상 부자계층에게 돌아간다. 소득 1억원 이상 계층에서 감면액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소득 4억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작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제공된 총 1조 4,000억원 세금혜택의 3분의2가 상위 20% 소득계층에게 돌아갔다. 소득이 많을수록 카드사용액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누증세율 구조 때문이다. 즉, 카드사용액이 같더라도 고소득자는 세금 감면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반면 2억원 이상 소득구간에 40% 세율을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는 약 8,0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는 카드소득공제를 없애지 않으면서 부자증세를 한다면, 앞에서 세금 물리고는 뒤돌아서서 물린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남이 보는 앞에서는 부자들을 모질게 야단치고는 뒤에서는 어르는 것이 정치권 부자 증세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히 실익 없이 사회갈등만 키우는 일이다.

증세의 대상인 부자들에게도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부자들이 서민 근로자계층보다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 사실은 우리 고소득층에게도 부담일 수 있다. 부자라는 사실로 인해 일방적으로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서민층의 구멍가게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카드사용자들이 소득공제가 되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의 일부를 카드가맹점의 직불카드 취급기기 도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돌려주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물론 카드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유리알 지갑의 봉급생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준공제한도를 올려주는 등 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얼마든지 고안해낼 수 있다고 본다. 부자 증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안겨주는 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것부터 심각히 논의되어야 한다.

〈서울신문 2011-12-9일자〉

근로자 · 자영업자 41% 소득세 한 푼도 안 내

◆ **소득세 납부자 너무 적어**

한국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0명 중 4명 정도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세청과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자 1516만명 가운데 과세자는 924만명으로 60.9%에 그쳤다. 592만명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사업소득자 523만명 중 과세미달자는 247만명이었다. 둘을 합치면 작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2039만명의 41.1%인 839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세금 안내는 근로자 현황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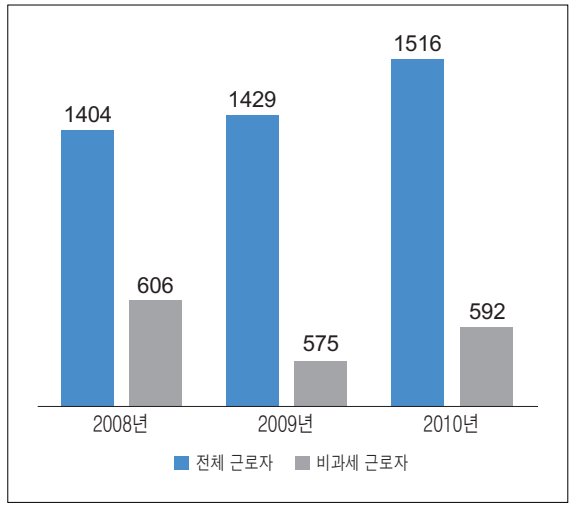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이 수치는 2009년 812만명보다 27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한국에서는'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는 게 정설이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 명시된 비과세와 감면 규정을 다 적용받으면 4인 가족(부부와 자녀 2명) 기준으로 연 소득이 177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면세점을 10% 정도만 낮춰도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세금 1조원보다 훨씬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과세 기반을 넓히려면 먼저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들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작년 민간소비지출액 615조원 중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478조원을 제외한 137조원 중 상당액이 세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에 달했다. 실제 번 소득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

과 표	2008년 까지	2009년	2010년 (귀속분)부터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6%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25%
8,800만원 초과	35%	35%	35%[1]

주: 1) 8,800마원 초과시 소득세율 35%는 2010년 33%로 낮춰질 예정이었으나 연기됐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철회하기로 당 · 정이 결정

자료: 기획재정부

카드 소득공제나 비과세 · 감면 혜택을 한꺼번에 많이 줄이면 소득을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월급쟁이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유리알처럼 세원이 노출된 급여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소득 탈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무작정 소득세 부과대상을 늘리려는 것은 근로장려금 등으로 저소득자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정책과도 상충될 수 있다.

◆ 지하경제 줄여야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면 탈세의 근원지인 지하경제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만 330조원에 달하는 어머어마한 규모다.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지하경제에 숨어 세금을 내지 않는 탈루자들을 철저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통한 세율 인상 등은 이 같은 세원 확대 다음에 논의되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과세 · 감면 축소에 비해 세수 효과가 훨씬 큰 자영업자 소득 파악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재산의 국외 도피와 불법 상속 등을 막는 보다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11-12-6일자〉

자본이득세 도입될까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소득세율 추가 신설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이득 과세 방안이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버핏세'의 원래 목적에 맞게 금융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매기자는 아이디어다. 대표적인 금융소득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언급 자체가 금기시돼왔던 터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010년 이전 가입한 30개국 중 80%인 24개국이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경우 거래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명분은 금융산업 발전과 주식시장 육성이었다. 주식시장이 성장하자 지난 2006년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방안 마련을 검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개인	대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법인		모든 주식	법인소득으로 과세	

우리나라 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

	과세방법	장기보유 우대 여부	양도차의 금액 우대 여부
미국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일본	분리과세	×	×
영국	분리과세	○	×
프랑스	세대별 종합과세	×	○
독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주식 부자'들로 넓히는 안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국내 주식시장 비중의 30%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새 제도가 도입되면 주식을 무더기로 매각,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시점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조세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일정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일본의 사례를 추천했다. 일본은 0.55%였던 거래세를 1989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춘 뒤 1999년 완전 폐지했다. 이어 원천분리과세와 신고분리과세 등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뒤 2003년부터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했다. 14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거래세를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신문 2011-12-6일자〉

부자증세와 버핏세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워런 버핏이 스스로 버핏세 구상을 제기한 이후 우리 정치권에도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최고한도세율인 3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구간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포함된다고 한다. 정부가 부자감세를 중단한다는 의미에서 이미 법에 반영된 소득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사실 소득세 구간 신설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과거 논의는 소득세 납부자가 다른 납세자에 비해 갖는 불리함을 시정하자는 것이 더 큰 취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실질소득은 변함없는데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로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특히 근로소득자 소득은 투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현재 이뤄지고 있는 논의는 이런 억울함을 달래주기는커녕 너는 고소득자니까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갑자기 바뀌고 있는 느낌이다. 부자 감세 중단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부자 증세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염려마저 든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논의됐던 부유세 문제까지 다시 들먹이는 분위기다.

과연 버핏세가 부자 증세를 뜻하는가? 사실 미국에서

도 아직 버핏세 정체는 분명치 않다. 오마바 대통령이 지난 9월 밝힌 세제개혁 5원칙 중 하나로 버핏 룰(Buffett rule)이 제시돼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타난 버핏 룰에 대한 해설을 보면, 최고 소득계층이 내는 평균 세율이 그보다 낮은 소득계층이 내는 평균 세율보다 낮다는 점에 착안할 뿐, 고소득자에 대해 일률적인 증세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버핏 룰이 전체 미국인 중 0.3%인 소위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미 최고 한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 내 버핏세 논의는 부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수용하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같은 버핏세가 거론되지만 보다 강압적이고 심지어는 징벌적인 느낌마저 준다. 어떻게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더욱이 우리 재정 상태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한 미국처럼 심각하지도 않은데 말이다.

사실 워런 버핏이 처음 거론했던 버핏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우리는 미국과 달리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없어 자본 이득에 대한 충분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역시 미국과 달리 금융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버핏이 한국에서 같은 종류의 소득을 올렸다면 당연히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한도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다.

그런데도 버핏 룰을 적용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예컨대 고소득자가 받는 각종 소득 감면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면, 같은 세율과 과세 체제 안에서도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수를 특정한 목적에 사용한다면 기부금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실제로 3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세감면을 포기하면 세수 효과는 연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자발성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자발적이어야 의미가 있다. 최근 버핏세 대변자로 나선 미국 백만장자도 버핏세 구상을 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계몽된 이기심으로 해석하지 않았던가. 정치권에서 부자 논쟁이 더 거세지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도 계몽된 이기심들이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매일경제 2011-11-25일자〉

재정포럼

2011년 12월호 통권 제186호

■ **발 행 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 행 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 집 위 원** /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권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11년 12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12호(통권 제18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 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 · 전화 · FAX · 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 · 이름 ·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